



몽골 투자 가이드 2015



invest IN
MONGOLIA



주한몽골 대사관



invest IN
MONGOLI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몽골 투자 가이드 2015



invest IN
MONGOLIA

본 자료는 몽골 대사관 주관으로 몽골 투자청이 발간한
(Investment Guide to Mongolia 2015)를 번역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전세계 국가들과 강력하고 굳건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 책자를 통해 여러분께 몽골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가이드북이 비즈니스 기회의 대상으로서 몽골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 경제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성장과 혜택의 무한한 기회를 약속하고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광물 자원을 제공합니다.

몽골 경제는 수익창출이 유망하여 상당한 투자를 유치한 광업 부문의 발전 덕분에 지난 몇 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광업이 수익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경제 및 투자 다각화 정책을 통해 비 광업 부문도 상당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 광업 부문을 육성하기 위해서 몽골이라는 국가에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몽골의 비즈니스 환경을 보다 스마트하고 혁신적이며 정교하게 조성하여 서로 윈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이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투자는 시장이 개방되고 정부 정책의 안전성이 뒷받침되며 로드맵이 분명하고 모두가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두를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투자 유치에 있어서 몽골 정부 노력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아닌 선의로서, 몽골은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혁하는 대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경제자유를 위해 정부의 참여를 줄이고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규제를 완화를 통한 투자촉진을 위해 제도적 개혁을 하였습니다.

몽골투자청은 보다 더 신속하게 몽골에 투자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단일 연락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세계 기업들이 몽골을 투자대상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몽골에 대한 전세계의 투자를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여 함께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몽골투자청

목 차

1 몽골 입국 절차

사증 종류 & 절차	8
사증 등록 & 연장	12
체류 자격	13

2 법인 설립

해외 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체 설립 절차	16
외국 법인의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20

3 기업 과세

법인 소득세	24
부가가치세	25
관세	26
개인 소득세	26
조세 협약	27
세금 우대 조치	29
세금 신고	30
세금 안정화	30
광업, 중공업, 인프라개발 분야	31
기타 분야	31

4 비즈니스 환경평가

법률 체계	36
국제 조약 및 협정	38
은행업, 금융, 보험	40

목 차

5 근로자 고용

노동법.....	50
고용 조건	50
사회보장제도	51
외국인의 고용	52

6 해외 투자

투자법 (2013)	58
양허법.....	58
몽골 투자청 - 법률 집행과 투자자 지원	60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목록	62
해외 투자 통계	67

7 무역 정책

관세 우대 조치	74
서류 및 절차	75

8 주요 연락처.....76

9 부록

투자법 번역문	86
회사법 번역문	104
조세법 번역문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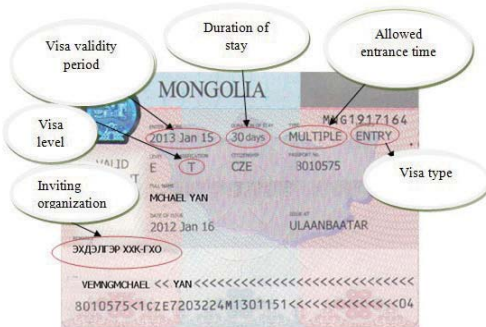
몽골 입국 절차

몽골은 체류 기간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사증 종류 & 절차



몽골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D”, “A”, “T”, “O”, “B”, “S”, “J”, “HG”, “SH”, “TS”, “H” 의 11가지 타입이 있다.

비즈니스 목적 입국 비자는 “T”, “B”, “HG” 타입으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다.

“T” 비자 적용 대상

- 외국인 투자자
- 외국인투자 현지법인, 지점, 연락 사무소의 고위 간부

“B” 비자 적용 대상

- 사업 목적으로 몽골을 방문하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HG” 비자 적용 대상

- 여권 종류에 상관없이 고용 계약에 따라 몽골에서 근무할 목적의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 ”
 몽골 이민청(Mongolia Immigration Agency)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mn에서 사증 종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발급기관

1. 외무부
2. 몽골 이민청
3. 주한 몽골 대사관와 바자과

제출서류

» 30일 관광비자

1. 신청인의 몽골 체류 예상 기간 종료 이후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2. 여행자용 비자 신청서 (여권용 크기 사진 1매 포함)
3. 여행 일정, 호텔 예약, 보험 등은 권장 사항

» 30일 상용비자

1. 신청인의 몽골 체류 예상 기간 종료 이후 적어도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2. 비 여행자용 비자 신청서 (여권용 크기 사진 1매 포함)
3. 몽골 외무부 승인을 받은 초청 기관의 초청장

도착 이후 30일 이상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원하는 외국인의 경우, 몽골 이민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과 여객의 경우, 다음 목적지 국가의 항공 티켓과 비자가 필요하다.

몽골의 비자 면제 국가 목록

표 No. 1

No.	국가
1	홍콩 /14일간/
2	싱가포르 /14일간/
3	필리핀 /21일간/
4	말레이시아 /30일간/
5	이스라엘 /30일간/
6	쿠바 /30일간/
7	라오스 /30일간/
8	태국 /30일간/
9	일본 /30일간/
10	터키 /30일간/ 터키 측은 아직 승인하지 않음
11	미국 /90일간/
12	마카오 /90일간/
13	카자흐스탄 /90일간/
14	우크라이나 /90일간/ - 공식 초청 필요
15	조지아 /90일간/
16	벨라루스 /90일간/ - 벨라루스 측은 아직 승인하지 않음
17	키르기스스탄 /90일간/
18	독일 /30일간/
19	캐나다 /30일간/
20	세르비아 /30일간/
21	중국 /30일간 - 관용 E 여권 소유자만 해당. 일반 E 여권 소유자는 비자 필요/
22	북한 /30일간-몽골을 최근 2년동안 4회이상 방문하거나 통산 10회이상 방문자만 해당/
23	러시아 /30일간/

“외교관과 관용 여권이 비자 면제를 받는 국가의 목록은 몽골 외교부 웹사이트 www.mfa.gov.mn에 나와 있다.”

※ 2015년 12월 31일까지 무비자 입국(30일) 가능한 국가 목록(사업 및 여가 목적에만 해당)

Ⅱ No. 2

No.	국가		
1	오스트리아	22	룩셈부르크
2	안도라	23	몰타
3	아르헨티나	24	모나코
4	바하마	25	네덜란드
5	벨기에	26	노르웨이
6	불가리아	27	파나마
7	브라질	28	폴란드
8	그리스	29	포르투갈
9	영국	30	루마니아
10	그레나다	31	슬로바키아
11	덴마크	32	슬로베니아
12	연합 왕국	33	헝가리
13	아이슬란드	34	우루과이
14	스페인	35	핀란드
15	이탈리아	36	프랑스
16	아일랜드	37	크로아티아
17	키프로스	38	체코
18	코스타리카	39	칠레
19	라트비아	40	스웨덴
20	리투아니아	41	에스토니아
21	리히텐슈타인	42	스위스

등록

☎ 30일 이상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도착 이후 7일 이내에 몽골 이민청에 등록해야 한다.

☎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공무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몽골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필수 서류

1. 초청 기관이나 개인의 등록 신청서. 초청 기관이나 개인이 없는 경우, 외국인은 직접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여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서류 및 추가 사본
3. 여권용 크기 사진 1 매 (3x4 사이즈)
4. 등록 신청서 양식 작성 (2000 MNT)

연장

임시(상용) 비자 연장 - “B” 필수 서류

1. 신청인 회사의 연장 신청서 (회사의 경영 정보와 연장 사유 포함) 원본 서류와 국가등록증(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사본.
2. 특별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경우, 허가 증명서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다.
3. 등록 양식
4. 3x4 사이즈 사진
5.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출입국 관리소 직인의 사본이 필요하다.

관광비자 연장 - “J” 필수 서류

1. 연장 신청서
2. 등록 양식 작성
3. 3x4 사이즈 사진
4. 여권 사본과 비자 사본. 비자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도착 이후 입국 직인의 사본이 필요하다.

체류 자격

☞ 90일 이상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방문자는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효한 외국 여권과 그에 상응하는 법률 문서를 소지한 외국인인 몽골의 해당 관청에서 필수 비자를 취득한 후에 몽골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다. 체류 허가 취득 요청서는 몽골 입국 이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인의 체류 허가 취득에 필요한 서류

1. 회사의 요청서
2. 투자자의 명함, 회사의 국가등록증과 그 사본
3. 회사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부문에서 운영되는 경우, 라이선스 사본
4.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지방 세무서의 명세서
5. 지방 세무서의 보증서
6. 투자 확인서
7. 투자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서
8. 여권용 사이즈 사진 2 매 (3x4 사이즈)
9. 여권과 그 사본
10. 신고서

“ 몽골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체류 허가의 개요는 몽골 이민 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mn에 나와 있다. ”

법인 설립

몽골 정부는 사업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 2015)’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창업 용이성 측면에서 189개 경제권에서 42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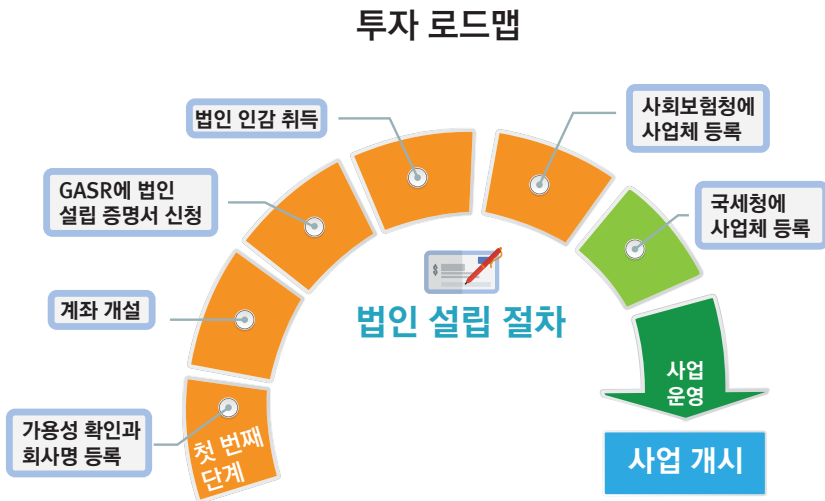


Start

해외 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체 설립 절차

몽골에서 외국인 투자를 통한 신규 사업체(business entity with foreign investment, BEFI) 설립은 몽골 국가등록청(General Authority for State Registration, GASR)에서 담당한다.

몽골의 신규 기업 설립 절차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상호확인 및 등록/GASR/

1. 설립자의 원래 ID (설립자가 외국인인 경우 원래 여권)
2. 위임장을 통한 법인 등록 (위임장 원본, ID 또는 여권) 가능
3. 수수료 500 MNT는 Golomt Bank - 1401001101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계좌 개설 /선호하는 시중 은행 중 선택/

신청 양식 (UB-10) 은행 계좌 개설 양식을 작성할 때 상호명 확인서를 확실히 지참해야 한다. 은행은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 몽골 국가등록청에 법인 설립 증명서 신청

해외 투자를 통해 사업체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신청 양식 (UB 03-II) (2부 작성) / www.burtgel.mn에서 다운로드
2. 상호명 확인서 / 법인등록청에서 입수 가능
3. 개설한 은행 계좌 통지
4. 외국인투자회사 설립 정관 (원본 결의문) / 정식 번역본 포함
5. 외국 국유 기업(Foreign state owned entity, FSOE)은 해당 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외국 국유 기업(FSOE)이 전략적 부문에서 운영되는 몽골 기업의 전체 주식 33%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원본/
6. 회사의 정관과 계약서
 - 회사의 투자자가 1인인 경우, 정관만 필요하다.
 - 회사의 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관 및 주주간합작계약서(공증 받은 사본) 이 모두 필요하다. 견본은 www.burtgel.mn에서 입수할 수 있다.

7. 개인 투자자는 여권 사본 지참과 투자자 등록 양식 작성을 요구 받는다.
8. 법인은 법인 설립 증명서와 회사 소개서 지참을 요구 받는다.
9. 투자 확인서 / 국가법인등록청에 관한 법률 제 172.6조항에 따라, 1차 기준점은 투자자 별로 100,000 USD에 달한다.
10. 공식 회사 주소 / 2부 /
11. 최초 대차대조표 / 2부 /
12. 국가 인지대 / 750.000 MNT를 Golomt Bank-1401002649, KhasBank- 5001122211 계좌로 송금 /
13. 위임장 /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임장 불요 /

☞ 법인 인감 취득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감 제작 회사에서 2시간 이내에 확보 가능하다.

“

몽골 국가 관청 웹사이트 www.burtgel.gov.mn에 나와 있는 회사 등록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몽골 국가등록청(GASR) 및 법인 설립 증명서는 인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타 정보

☞ 등록 서류 준비, 회사명 취득, 은행 계좌 개설, 서류 번역, 신규 외국인투자법인(BEFI) 등록 과정에서 예상되는 관청의 지체 등에 소요 되는 기간은 대략 2주 정도로 예상한다.

☞ 몽골 법률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BEFI)은 사회보험청에 법인을 등록하고 사회보장세 및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 외국인 투자 법인(BEFI)의 향후 사업활동에 특별면허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등록청(GASR)에 등록한 뒤 다음과 같은 해당 부처에 특별 면허를 신청, 취득하여 법인 등록 정보를 갱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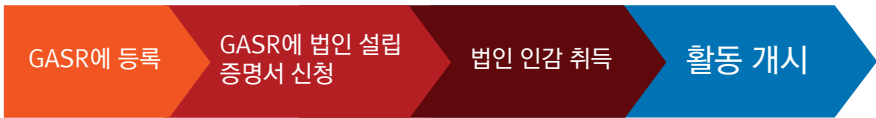
- 보건체육부 (Ministry of Health and Sport)
- 환경녹색성장관광부 (Ministry of Environment, Green Development and Tourism)
- 건설도시계획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 교육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도로교통부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ation)
- 정보통신기술우편청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Post Authority)
- 광물자원청 (Mineral Resource Authority)
- 민간항공청 (Civil Aviation Authority) 등

☞ 외국 정부 소유 법인이 아래와 같은 주요 사업 부문에서 몽골 법인의 전체 주식 33% 이상을 보유한 경우, 상기 외국 정부 소유 법인은 투자 관련 해당 관청에 허가를 신청, 취득해야 한다.

- » 광업
- » 은행 및 금융
- » 언론 및 통신

외국 법인의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몽골에서 외국 법인의 신규 연락 사무소 설립은 몽골 국가등록청 (General Authority for State Registration, GASR)에서 담당한다.



☞ 몽골에서 외국 법인의 연락 사무소 설립에 필요한 서류 목록

- 신청서 (UB 03-III) /다운로드: www.burtgel.mn /
- 외국 법인 소개 및 사규 사본
- 외국 법인의 법인 설립 증명서 사본
- 회사 직위에 따른 최고결정권자의 결의문 / 정식 번역물 포함
- 연락 사무소 정관 /2부와 공식 번역물(공증필요) 1부/
- 연락 사무소의 공식 주소
- 국가 인지대 /1.100.000 MNT를 Golomt- Bank-1401002649, KhasBank-5001122211계좌에 송금/
- 위임장 /회사에서 관리하는 경우, 위임장은 불필요/

기타 정보

☞ 외국인 투자자는 모기업의 법적 이해관계 보호와 모기업을 대신해 거래 수행 등 외국 모기업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몽골에 연락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 연락 사무소는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연락 사무소가 몽골 영토 내에서 이윤 창출 목표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 GASR에서 연락 사무소 증명서 취득 이후, 연락 사무소는 울란바토르시 세무서에서 은행 계좌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규 연락 사무소의 등록 정보와 관련 자료는 변경될 수 있다. GASR 웹사이트 www.burtgel.gov.mn 참조

국가등록청 연락처

주소: Police Street,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14171

전화: +976 -7011-3580, +976-1890

팩스: +976-11-320083

이메일: contact@registrationmongolia.com

웹사이트: <https://burtgel.gov.mn> | www.burtgel.mn

기업 과세

몽골은 세금 부담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세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법인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의 세 가지 범주

☞ 아래에 포함되는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 사업 활동
- 주식의 자본 이득
- 외화 환율 이득

☞ 아래에 포함되는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 임대료
- 로열티
- 배당금
- 이자

☞ 자산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 (부동산과 동산 포함, 주식과 증권은 제외)

☞ 몽골 법인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10% 또는 25%로 부과된다. 연간 수입이 최대 30억 MNT를 넘지 않으면 10%, 30억 MNT를 초과하면 25%를 부과한다.

☞ 특정 유형의 소득은 다양한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II No. 4

소득원	세율 적용
배당금	10%
로열티	10%
이자	10%
도박, 내기 게임, 복권	40%
부동산 매각 (총액)	2%
소유권 매각 (총액)	30%

“ 몽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로 법인 소득세는 10% 또는 25%이며, 개인 소득세와 VAT는 모두 10%이다.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는 몽골의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과 몽골로 들어 오는 수입품에 10% 세율로 부과된다.

납세자는 과세 대상 거래액이 1천만 MNT를 초과하는 경우 몽골 부가가치세 납부 목적으로 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액이 8백만 MNT에 도달하거나 몽골에 USD 2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경우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몽골에서 아래와 같은 대상에 부과된다.

- 몽골에서 수행한 생산 활동이나 서비스
- 몽골에서 판매한 상품
- 판매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몽골로 수입한 상품
- 몽골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몽골에서 수출한 상품

“ VAT의 10% 세율은 (i) 몽골에서 과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공급, (ii) 몽골의 수출품, (iii) 몽골의 수입품에 부과된다. 수출 상품과 서비스는 0% 세율로 과세가 되고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

관세

대부분의 수입 상품은 5% 종가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다른 상품은 계절관세가 부과된다. 특정 수출 상품은 종량관세가 부과된다.

해외 무역에 관여하는 개인(물리적 또는 법적)은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 이후 관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몽골 세관(Customs Office) 웹사이트 www.ecustoms.mn 또는 직통전화 1800-1281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개인 소득세

몽골의 영구 거주 납세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몽골의 영구 거주 납세자 정의: 몽골에 거주지가 있는 자 또는 과세 연도에 183일 이상 몽골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

몽골의 비거주 납세자는 과세 연도에 몽골의 영토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몽골의 비거주 납세자 정의: 몽골에 거주지가 없거나 과세 연도에 183일 이하의 기간 동안 몽골에 거주한 개인

“

과세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웹사이트 www.mta.mn 또는 직통전화 1800-1288 3으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

표 № 5

소득원	세율 적용
근로 소득	
사업 및 전문가 근로 소득	10%
자산, 즉 배당금, 로열티, 이자, 증권/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자본 이득	
부동산 매각 (총액)	2%
과학, 문학 작품, 발명, 제품 설계 및 유용한 설계 (총액)	
설계 및 유용한 설계 (총액)	5%
스포츠 대회, 예술 공연, 유사 소득 (총액)	
내기 게임, 도박, 복권 (총액)	40%

조세 협약

쌍무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몽골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몽골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method)’를 활용한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세금 납부 금액은 동일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해 몽골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상기 세액공제 금액은 몽골에서 동일한 소득 금액에 대한 미지급세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래 표는 소득이 몽골의 고정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다른 체약국가의 거주자에게 송금된 몽골 출처 배당금, 이자, 로열티에 부과하는 원천과세 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몽골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method)’를 활용한다. 쿠웨이트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해지되었으며 2015년 4월 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표 6/

	국가	체결 날짜	시행 날짜	배당 (%)	이자 (%)	로열티 (%)
1	오스트리아	2003.07.03	2004.01.01	5-10	10	5-10
2	벨기에	1995.09.26	1999.01.01	10	10	5
3	불가리아	2000.02.28	2001.01.01	10	10	10
4	캐나다	2002.05.27	2003.01.01	10-15	10	5-10
5	중국	1991.08.26	1993.01.01	5	10	10
6	체코	1997.02.27	1999.01.01	10	10	10
7	프랑스	1996.03.18	1999.01.01	5-15	10	5
8	독일	1994.08.22	1997.01.01	5-10	10	10
9	헝가리	1994.09.13	1997.01.01	5	10	5
10	인도	1994.02.22	1994.01.01	15	15	15
11	인도네시아	1996.07.02	1998.01.01	10	10	10
12	카자흐스탄	1998.03.16	2000.01.01	10	10	10
13	대한민국	1992.04.17	1992.01.01	5	5	10
14	키르기스스탄	1999.06.20	2001.01.01	10	10	10
15	쿠웨이트	1998.03.18	1999.01.01	5	5	5
16	말레이시아	1995.07.27	1997.01.01	10	10	10
17	북한	2002.10.03	2005.01.01	10	10	10
18	폴란드	1997.04.18	1998.01.01	10	10	5
19	러시아	1995.04.05	1998.01.01	10	10	-
20	싱가포르	2001.08.16	2005.01.01	10	10	5
21	스위스	1999.09.20	2000.01.01	5-15	10	5
22	터키	1995.09.12	1997.01.01	5-15	10	10
23	우크라이나	2002.07.01	2003.01.01	10	10	10
24	북아일랜드	1996.04.23	1997.01.01	5-15	10	5
25	베트남	1996.05.09	1997.01.01	10	10	10

세금 우대 조치

☞ 몽골 투자 법에 따르면, 투자자를 위한 투자 촉진 방법 중 하나가 세금 우대 조치이다.

투자자들을 위한 아래와 같은 세금 우대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 세금 면제
- 세금 우대 조치 제공
- 가속상각법을 통해 공제 가능한 감가상각 비용 계산
- 미래 수익으로 이월해서 공제 가능한 손실계산
- 과세대상 수익에서 종업원교육비 공제

☞ 수입 기계류 및 장비는 아래와 같은 분야에 한해 건설 공사 기간 동안 관세와 VAT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건축자재, 석유, 농작물 처리 및 수출상품 생산 시설 건설
-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공장 건설
- 발전소와 철도 건설

“세금 우대 조치는 조세법에 따라 시행된다.”

세금 신고

납세자, 납세관리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세금보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013년 이후, 국세청은 전자 제출 온라인 시스템을 시행해왔다.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자서명을 취득한 후에 전자 세금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금 안정화

몽골에서 투자 사업을 진행하려는 법인은 몽골 투자법(Law on Investment of Mongolia, 2013)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이후 안정화 증명서(Stabilization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있다.

안정화 증명서는 특정 기간 동안 세율 안정화를 목표로 몽골투자청(Invest Mongolia Agency)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의미한다.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세율은 투자 규모와 대상 지역별로 5년부터 최대 18년까지 안정화 증명서에 따라 안정화된다.

1. 기업 소득세
2. VAT
3. 관세
4. 로열티

안정화 증명서 발급 기준

- 투자지역 및 투자금 규모
- 환경친화성
- 신기술 & 노하우
-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아래 표 7은 광업, 중공업, 기반시설 개발 부문의 안정화 증명서 범위를 보여주고 있다.

표 8은 그 외 부문에 대해 명시한다.

원자력 에너지 부문은 원자력 에너지 법에 따라 규제를 받으며 투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광업, 중공업, 인프라개발 분야

표 No. 7

투자 금액 (단위: 10억 MNT)					안정화 기간	금액 투자 시한 (단위:년)
울란바토르	중앙 지역	중서부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		
10-30	5-15	4-12	3-10	2-8	5	2
30-100	15-50	12-40	10-30	8-25	8	3
100-200	50-100	40-80	30-60	25-50	10	4
200이상	100이상	80이상	60이상	50이상	15	5

기타 분야

표 No. 8

투자 금액 (단위: 10억 MNT)	안정화 기간 (단위: 연)					금액 투자 시한 (단위: 년)
	울란바토르	중앙 지역	중서부 지역	동부 지역	서부 지역	
30-100	5	6	6	7	8	2
100-300	8	9	9	10	11	3
300-500	10	11	11	12	13	4
500이상	15	16	16	17	18	5

몽골 투자청은 투자청 판단에 따라 투자자의 신청 이후 투자가 시행되어야 하는 기간 이내에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안정화 증명서 유효 기간은 1.5 배까지 연장할 수 있다.

투자청 판단 기준

☞ 몽골의 장기적인 사회·경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입 또는 수출용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계획한 투자 금액은 5 천억 MNT를 초과해야 하며, 사업 개발은 3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투자 사업이 수출용 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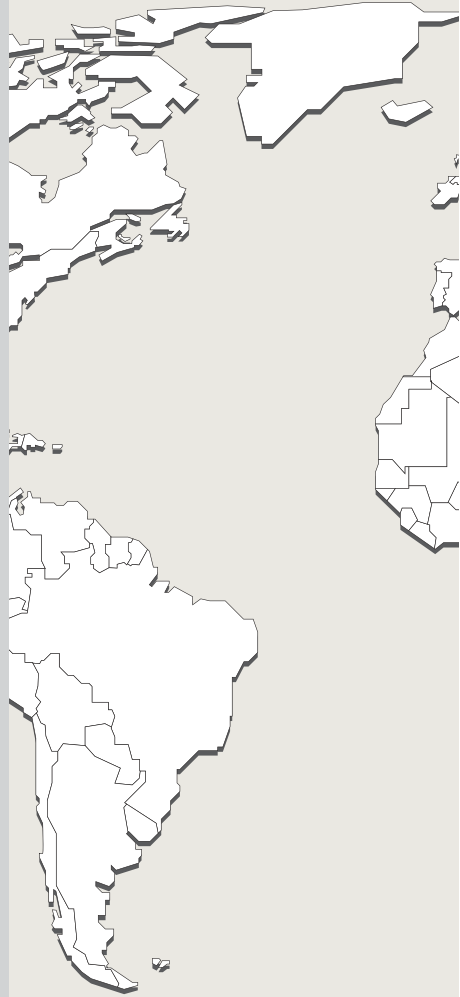
“ 납세 신고서는 www.e-tax.mta.mn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 안정화 증명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몽골 투자청 웹사이트 www.investmongolia.com 또는 info@investmongolia.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

비즈니스 환경평가

몽골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세계 은행의 “2015 비즈니스 환경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72위를 차지했으며, 포브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Best Countries for Business)” 에서 63위를 차지했다.



OVERALL
SCORE



59.2

BUSINESS
FREEDOM



68.2

TRADE
FREEDOM



74.8

FISCAL
FREEDOM



83.9

GOVERNMENT
SPENDING



35.6

MONETARY
FREEDOM



69.2



INVESTMENT
FREEDOM



50

FINANCIAL
FREEDOM



60

PROPERTY
RIGHTS



30

FREEDOM FROM
CORRUPTION



38

LABOR
FREEDOM



82.7

법률 체계

몽골의 법률 체계는 로마-독일(대륙) 법률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최상위법은 헌법(1992)이다. 많은 경우, 법률 내용 중 모호한 부분이 있어 다양하게 해석 될 여지가 있다.

몽골에서 경제 및 사업 활동은 회사법(1999년 7월 2일) (2007년 9월 13일 상당 부분 개정됨), 민법(2002년 1월 10일), 투자법(2013년 10월 4일) 및 기타 법률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중재법(2003년)은 분쟁의 중재를 규정한다. 몽골에서 계약서 작성 시,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들은 특정 유형의 국제 무역 분쟁, 계약상 또는 비계약상 민사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국제적인 중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몽골은 외국중재판정(Foreign Arbitral Awards)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의 가맹국이며 이 협약은 몽골 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중재는 몽골과 뉴욕협약의 당사자들이 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몽골은 선의와 더 나은 존립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고, 기존의 법률을 수정하여 법적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투명계좌법(Glass Account Law)” / 투명성법(Transparency Law) (2015/01/01)

(공공 기관이나 공적 자금 투입 사업과 관련된 민간 사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이 법률의 목적은 국가, 지방, 국영기업의 예산 수립과 운영을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일반인들이 감시할 수 있게 만드는데 있다.

법률 원칙

정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관되고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기밀로 승인 받았더라도 투명해야 한다. 사업체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웹사이트의 기술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투명계좌에 필요한 별도 부문
- 다운로드와 인쇄 가능한 정보
- 연락처 세부사항과 담당자 표시
- 정기적으로 정보 업데이트 - 아카이브로 (archive) 정보 저장, 일반인 아카이브 접속 및 아카이브 정보 다운로드 및 인쇄 가능

개정된 석유법 (2014/07/01)

개정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일관되고 투명한 법률 체계를 만드는 국제 기준을 적용하고 투자자의 권리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석유 및 가스의 최초 5년 동안, 비전통적인 석유 및 가스 탐사의 수입 장비, 원자재, 화학물질, 폭발 시행은 관세와 VAT를 면제받는다. 석유, 가스, 석탄, 세일오일 생산 장비는 2018년까지 관세와 VAT를 면제받는다.

개정된 광물법 (2014/07/01)

개정 목적은 첫째, 일반적이고 단순한 해지 과정 시행을 통해 투자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둘째, “선착순” 기준을 적용하여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국제 조약 및 협정

몽골은 환경보호부터 자유 무역, 해외 투자 보호, 이중과세방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국제 조약의 가맹국이다. 몽골은 1997년 이후로 WTO 회원국이 되었다. 몽골 법률은 국내 법률과 상충할 경우, 국제 조약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몽골은 국가와 다른 국가 사이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워싱턴 협약(1965년, 1996년에 가입)의 가맹국이며 이 협약은 국제 투자 분쟁의 해결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몽골은 1999년 이후 투자보증기구에 관한 서울 협약의 가맹국이며, 이 협약은 MIGA(국제투자보증기구)를 통해 위험 보험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격을 보증한다.

몽골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무역 정책과 투자 환경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몽골은 국제적인 검토를 통해 분석을 받을 수 있도록 WTO와 국제연합에 투자 전략과 정책을 소개해왔다. WTO의 무역정책검토(Trade Policy Review)와 UNCTAD의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는 몽골의 법률 및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무역정책검토 2014 (Trade Policy Review 2014):

www.wto.org/english/tratop_e/tpr_e/s297_e.pdf

세계투자보고서 2014 (World Investment Report 2014):

www.unctad.org/en/PublicationsLibrary/wir2014_en.pdf

몽골은 다수 국가와 양자 간 협약을 체결했다. 투자 증진 및 상호 보호 협약(Encouraging and Mutual Protection of Investment Agreements)은 43개국과 체결했고, 이중과세방지협정 (Exemption on Double Taxation Agreements)은 25개국과 체결했다.

양자간 투자협약 체결 국가 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표 No. 9

1	오스트리아	23	쿠웨이트
2	벨로루시	24	키르기스스탄
3	룩셈부르크	25	라오스
4	불가리아	26	리투아니아
5	중국	27	말레이시아
6	크로아티아	28	네덜란드
7	쿠바	29	필리핀
8	체코	30	폴란드
9	덴마크	31	카타르
10	이집트	32	루마니아
11	핀란드	33	러시아
12	프랑스	34	싱가포르
13	독일	35	스웨덴
14	헝가리	36	스위스
15	인도	37	타지키스탄
16	인도네시아	38	터키
17	이스라엘	39	우크라이나
18	이탈리아	40	아랍 에미리트
19	일본	41	영국
20	카자흐스탄	42	미국
21	북한	43	베트남
22	대한민국		

은행업, 금융, 보험

은행 업무 시스템

1991년 이래로 몽골은 두 단계의 은행 업무 시스템을 갖췄다. 상위 단계 은행인 몽골 중앙은행(Bank of Mongolia)과 하위 단계 은행인 다른 은행들로 구성된다.

몽골은행은 중앙은행법(1996)에 따라 통화 안정이라는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불준비금 조절로 통화 공급을 조정함으로써 통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다. BOM(몽골은행)은 물가와 환율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적절한 통화 공급을 유지하고 있다.

은행업은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문 중에 하나가 됐으며 일본, 미국, 러시아, 기타 국가들의 투자자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대부분의 메이저 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일부 지원받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불과 두 개의 외국 은행(ING 와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만이 몽골에 연락 사무소를 두고 있다.

2011년 동안 채택한 규정을 토대로, 시중 은행의 최소 자본 요건은 80억MNT (대략 USD 6백만 달러)에서 160억 MNT(대략 USD 1천 2백만 달러)까지 올랐다.

이 요건은 2013년 5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외국 은행은 몽골 연락 사무소 설립 이후 적어도 1년이 지나야 현지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외국 은행의 몽골 자회사 최소 주식 자본은 USD 5천만 달러로 정해졌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은행 부문의 합병이 예상된다.

최대 규모의 시중 은행들은 국제적인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향후 몇 년 동안 IPO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회사채 발행은 IPO 진행 이전에 국제 시장에서 평판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수익성은 대부분의 선진국 은행들에 비해 높다. 은행 부문의 위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투자는 그다지 정교하지 못하며, 자산의 상당 부분은 중앙은행이나 몽골 정부에서 보증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현금이나 증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이 있다.

“ 몽골은행과 모든 14개 시중 은행의 웹사이트는 주요 연락처 장에 나와 있다. ”

자본 시장

몽골의 자본 시장은 1992년 처음으로 탄생했다. 현재까지 몽골의 자본 시장에는 320개 기업과 91개 전문가 참가자들이 있다. 몽골 정부는 2010년 이후 국제적인 수준에 맞추겠다는 목표로 자본 시장에 변화를 주는 정책을 수립했다. 몽골 의회는 2013년 “투자자금법 (Law on Investment funds)”, 몽골 “주식시장법 (Law on Securities Market)”을 채택했으며, 이 두 법은 2014년 1월 1일 발효되었다

새롭게 통과된 주식시장법의 네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증권 등록 절차 개선
 - 상장과 최초 공모 발행의 세부 규정
 - 이중 상장 허용
2. 해외 투자 유치
 - 수탁은행과 투자 펀드 도입
 - 지분 과도축적 분산
 - 투자 공통체의 권리와 이해관계 보호

3. 시장 호환성 개선
 - DR, 파생상품, 자산유동화 증권 허용
 - OTC 거래 허용
 - 이중 상장 허용
4. 시장 투명성 증진
 - 보다 철저한 공개 요구
 - 우수 관리 홍보
 - 자체 규제 산업 단체 소개

투자자금법

중소기업과 회사들은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전문 투자 관리 서비스를 받아 경제 성장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받을 기회를 얻는다.

본 법률의 목적은 투자 기금 설립, 기금 운영 사업, 투자자의 이권 보호, 정식 국가 기관의 기금 운영 규제 및 감독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본 법률은 투자 기금[설립]에 필요한 특별 허가증 교부, 기금 자산 사업 관리, 기금 자산의 감독과 등록, 투자 기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시장 규제 법적 실체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와 관계자에게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

투자법 전문은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웹사이트
www.frc.gov.mn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험 부문

몽골에서 보험 사업 활동은 몽골 보험법의 따른 규제를 받으며, 이 법은 2004년에 승인을 받고 2005년 발효되었으며 보험중개법 (Insurance Intermediaries Law)과 운전자보험법(Driver's Insurance Law)등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몽골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FRC)는 규정 채택과 외국계 보험회사를 비롯해 FRC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보험회사들과의 보험 계약서 발행(단, FRC 승인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을 통해 보험회사들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

현재보험 부문은 17개 보험회사(일반 보험회사 16개사, 생명보험회사 1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몽골 보험 시장은 초기 발전 단계에 있으며, 보험투심도(GDP에서 보험료 수익의 점유율)는 0.5%에 불과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전체 자산은 3배 이상이 된 반면에, 수입보험료는 두 배가 됐다. 현재보험 부문은 17개 보험회사(일반 보험회사 16곳, 생명보험회사 1곳)로 구성되어 있다. 상위 5개 보험회사가 수입보험료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자산보험과 배상책임 보험을 다룬다.

몽골 보험회사들의 규모와 재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 보험증권은 대개 국제적인 재보험회사들에게 재보험을 드는 실정이다. 광업 부문의 성장은 몽골 보험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장비, 기반시설, 광산 자체는 사업이 진행될 때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야 한다.

한편, 향후 몇 년 동안 계획된 급속한 성장에는 자본 관리뿐만 아니라 보험 및 금융 위험 관리, 보험회사들의 기타 내부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몽골에서 운영 중인 보험회사는 17개, 보험설계사 회사 24곳, 보험 손해사정 회사 17곳이 있으며, 전문 보험 계리인 15명, 보험 설계사 3,400명이 있다.

“

몽골 금융감독위원회(FRC)는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 저축 및 신용 조합,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독을 책임진다.
<http://www.frc.mn/>

”

토지 & 부동산

울란바토르의 사무용 부지는 인근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하지만, A급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신규 건물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 임대료는 교외 소재의 방 2개짜리 아파트 수준의 월 임대료인 USD500 달러 부터 도심에 소재한 방 5~6 개의 내부시설이 완비된(현지 또는 외국인 가구용) 아파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부동산을 임대하는 개인은 법적 자격은 물론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도 적절한 신분 증명과 몽골어, 영어로 된 간단한 임대 계약서를 확보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최소한 부동산 임대 규정이 언급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주와 거래 관계 및 이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몇 가지 합의를 하면 소유주는 공공요금(국제전화요금은 제외)을 부담하고 기본적인 수리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소유주는 주거 시설의 경우 3개월 이하로 임대하기를 꺼려한다.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수는 많은 편이다.

외국인은 몽골에서 토지는 소유할 수 없으나 건물은 소유가 가능하다.

비즈니스 정보 & 경비

표 No 10

시간	그린위치 표준시차 + 8시간
근무 시간	정부 기관 - 08.00-17.00, (점심 휴식 1시간 포함 12.00-13.00) 일부 민간 기관 - 09.00-18.00, (점심 휴식 1시간 포함 13.00-14.00)
공휴일	신년 - 1월 1일 몽골 신년 (TsagaanSar)- 1월이나2월의 3일 동안 세계여성의 날 - 3월 8일 어머니와 어린이날 - 6월 1일 국경일 (Naadam) - 7월 11-13일 칭기즈칸 탄생일 - 11월 국가자유독립기념일 12월 29일
전류	220 볼트 / 50 HZ
도량형	미터법
통신	국가 코드 - 976, 울란바타르 지역 코드 - 11
주요관문	칭기즈칸 국제공항(울란바토르), 수흐바타르(몽골-러시아 국경선 철도역), ZamynUud(몽골-중국 국경선 철도역)
철도 연결	이르쿠츠크, 모스크바(러시아) / 시베리아 횡단 철도 / 후허하오터, 베이징(중국) / 시베리아 횡단 철도 /
해상 접근로	텐진/중국(1.344km), 나훗카 / 러시아(4.037 km)

사무실 임대 평균 비용 (2014년 12월 기준)

표 No 11

사무실 공간 임대	1 m2	울란바타르 중심부	40000-80000 MNT
		울린바타르	30000-35000 MNT
공장 임대	1 m2		10000-12000 MNT
창고 임대	1 m2		10000-12000 M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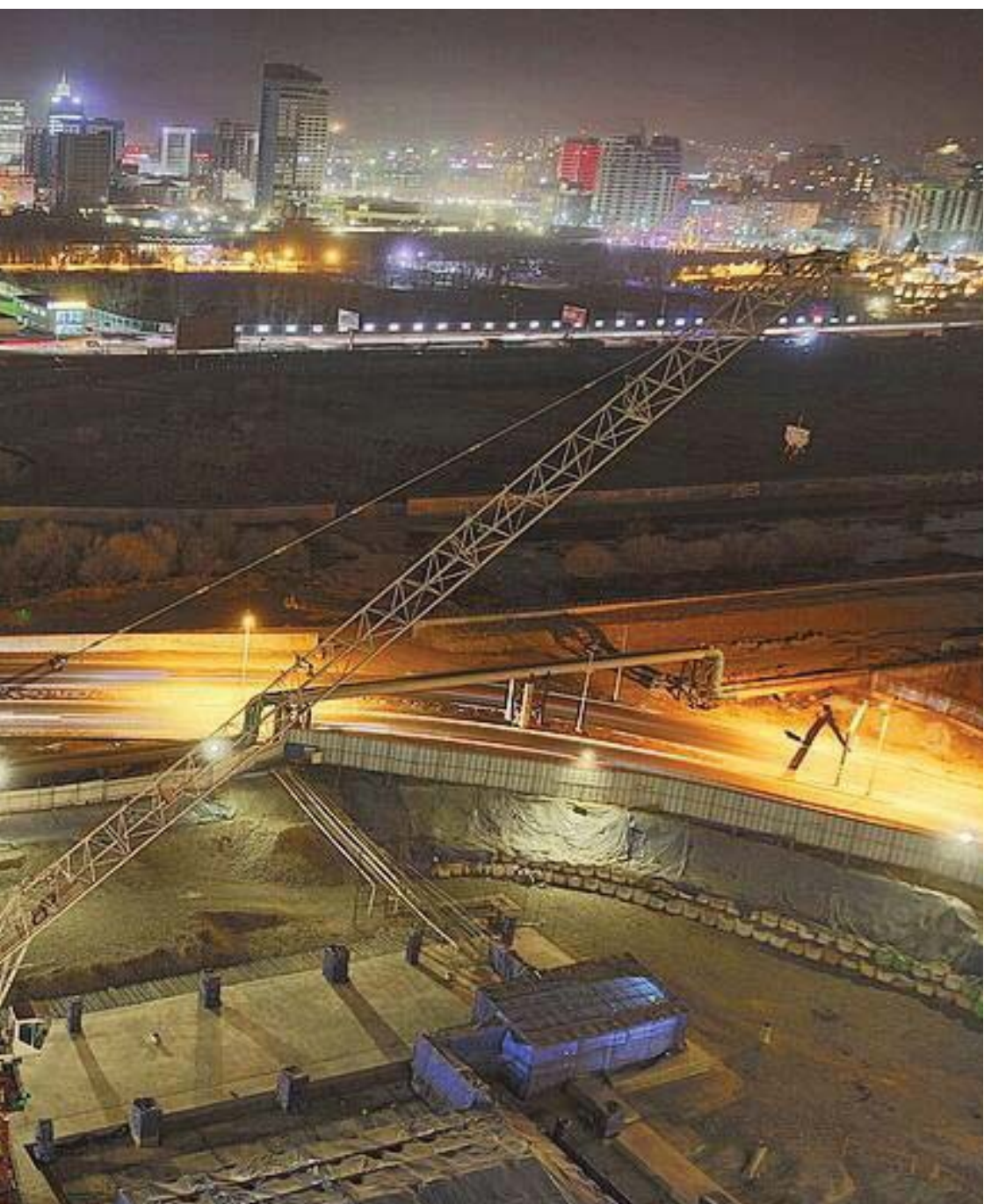
표 No. 12

남부 유형		단위	단위 가격 (MNT)		
			VAT 포함	VAT 제외	
전기	사업체	kWh	124.20	136.62	
	CHP 1 요금	kWh	124.20	136.62	
	CHP 2 요금	kWh	72.80	80.08	
	가정용 1 요금	kWh	100.00	110.00	
	가정용 2 요금	kWh	72.80	80.08	
	가정용 (150 까지)	kWh	94.10	103.51	
	가정용 (150 이상)	kWh	113.90	125.29	
	가정용 전기 월별 기본 요금			1,000.00	1,100.00
난방	아파트	M2	400.00	440.00	
	아파트	기가 칼로리	9,085.00	9,993.00	
	지하실, 화장실	M2	400.00	440.00	
	사업체	M3	398.00	437.80	
	치수로 계산	기가 칼로리	25,999.00	28,598.90	
	가정용 열 사용 서비스				
	아파트 (40 m ² 까지)	M2	3,000.00	3,300.00	
	아파트 (40 m ² -80 m ²)	M2	5,000.00	5,500.00	
	아파트 (80 m ² 이상)	M2	10,000.00	11,000.00	
	온수	가정용 (개인당)	여름	2,218.00	2,439.80
겨울			1,478.00	1,625.00	
사업체		기가 칼로리	5,231.00	5,754.10	

근로자 고용

대사관이나 특별 조약에 따라 설립된 기관의 직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직원들은 몽골의 정착시행법(Law of Mongolia on Conducting Settlement, 2009년 7월 9일)에 따라 몽골 투그릭화로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한다.





노동법

☞ 몽골에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투자회사의 몽골 국민 고용과 사회보장

관련 법률 구성

- 노동법
- 외국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 사회보험법
- 노동력 해외 파견과 해외 노동력 및 전문가 초빙에 관한 법
- 고용지원법
- 투자법
- 기타 법률 (사회보험 등)

“ 몽골의 노사관계는 대개 몽골 노동법 (1999년 5월14일)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

고용 조건

몽골 노동법에 따라, 고용 계약 또는 고용 협약(직위 또는 수행하는 업무의 유형에 따라 결정)이 고용 조건을 정의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고용 계약서 양식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 계약/협약에 아래와 같은 조건을 정의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다.

- 종업원의 직위/직책
- 종업원의 직무 내용 설명서
- 종업원의 급여
- 노동 조건 수준

그 외에도, 고용 계약/협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장한다.

- 고용 장소와 활동의 설명
- 임명 일자과 통보 기간
- 일간 또는 주간 근무 시간
- 견습 기간
- 휴가 자격 부여
- 계약상 징계

근무 시간

1일 표준 근무 시간은 8시간 또는 주 5일 근무에 전체 40시간이며, 채취 산업이나 농업 같은 계절별 교대 근무의 경우 특별 규정이 있다. 종업원들은 1년에 근무일 기준 최소 1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급여 및 임금

급여는 고용주가 독자적으로 정하지만, 몽골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최저 임금은 월 MNT 192,000(2014년1월 1일 기준)이다. 영어 구사 가능 외국 대학 졸업 숙련 근로자의 임금은 상당히 높다.

사회보장제도

모든 유형의 고용주(예: 사업체, 정부, 종교 또는 비정부 기관, 외국 투자 기업)가 고용한 몽골 국민이나 외국인인 의무적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고용주와 종업원 양측은 아래와 같은 세율로 세금 공제가 가능한 사회보험 세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 유형	고용주 세금	종업원 세금
연금 보험	7%	7%
복지 보험	0.50%	0.50%
의료 보험	2%	2%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보험	1-3%	해당 없음
실업 보험	0.5%	0.5%

종업원 세율은 전체 10%이지만, 매월 MNT 192.0000이 상한선이 다. 고용주 부담금은 상한선이 없지만, 산업에 따라 10 - 13% 이다. 고용주는 고용 협약 체결 후에 종업원 사회보험 장부를 확보하고 매월 납부한다.

외국인의 고용

몽골인이 아닌 종업원들은 몽골 국가등록청에서 발급한 투자자 카드(Investor's Card)와 그에 따른 "T" 비자, 장기 체류 허가증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T" 비자 소지자는 직장 수수료 납부를 면제받는다.

대사관 또는 몽골의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설립한 다국적 기관의 종업원을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 종업원은 정착시행법(2009년 7월 9일)에 따라 MNT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급여를 해외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취업 허가증

취업 허가증 취득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일반적으로 입국 이전 4 주와 입국 이후 2주의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 도착 이전에 단수 취업 비자를 몽골 대사관에 신청해야 한다.

입국 이후 외국인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이민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MNT 1,000,000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취업 허가증 임시 승인은 입국 이전에 신청하고 취득해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후에 실제 취업 허가증은 노동부에서 취득해야 한다.

취업 허가증을 취득한 후, 단수 취업 비자는 장기 복수 입국 비자로 연장해야 하며 이민청에서 장기 체류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개인(법인 아님) 주주 또는 최고경영자는 몽골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취업 허가증이 필요하지 않다.

“ 자세한 정보는 이민청 웹사이트 www.immigration.gov.mn를 방문하거나 Contact 1900-1882/ 7013-3457으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

할당 인원수

몽골 정부는 몽골에서 운영 중인 현지 소유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 양쪽 모두의 외국인 근로자 할당 인원수를 정하고 있다. 전체 투자 금액과 회사의 전체 직원 수는 할당 인원수에 영향을 미친다. 부문에 따라서, 할당 인원수는 회사 전 직원의 5%에서 80%까지 다양하다.

가령, 광업 또는 탐사 사업 부문의 기업은 할당 인원수가 10%인 반면에 석유 또는 천연 가스 채굴 기업은 최대 80%까지 외국인 노동력을 보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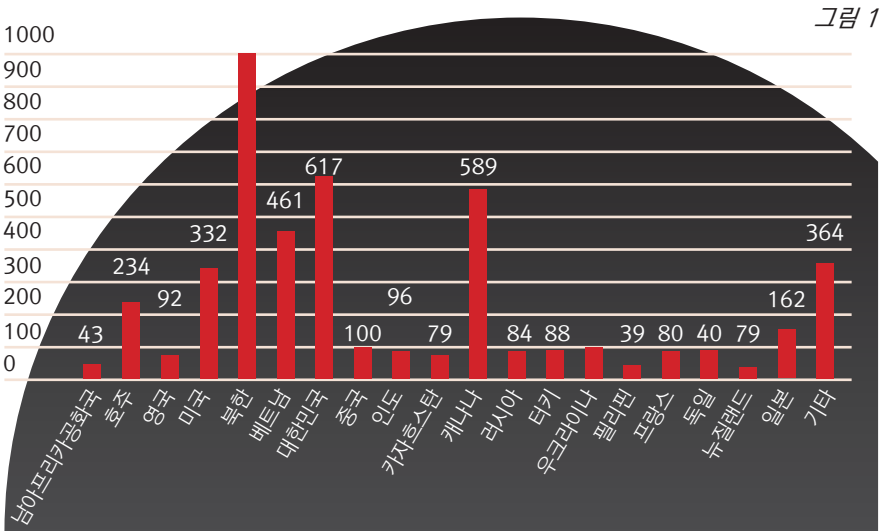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적인 사업 활동은 “해외 무역”이며, 할당 인원수는 5%이다. 이것은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1명당 몽골 근로자 20명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몽골 노동부의 취업 허가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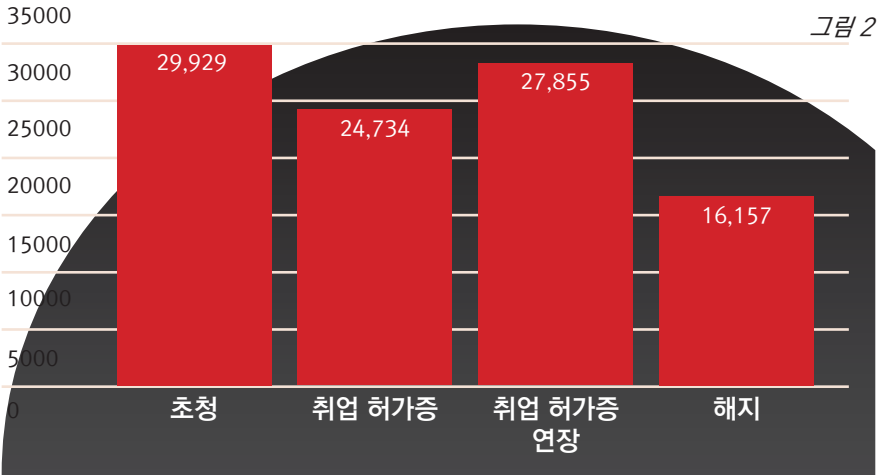
1. 추천받는자의 몽골에서의 “취업 허가증” 요청서
2. 취업 허가증의 월별 384,000 MNT 금액의 직장 수수료 / 송금: Treasury bank-900037010/
3. 사업자 등록증, 외국인직접투자 증명서, 특별 허가증 사본;
4. 유효 여권 사본 (종업원의 비자 포함)
5. 서비스료 납부 은행 영수증 / 1인당 15,000 MNT 송금: Treasury bank -900037003/
6. 몽골 취업 허가증 수수료 / 2,000 MNT 송금: Treasury bank-900037003/
7. 최근 사진 / 3x4 /
8. 건강 진단서

외국인 근로자 노동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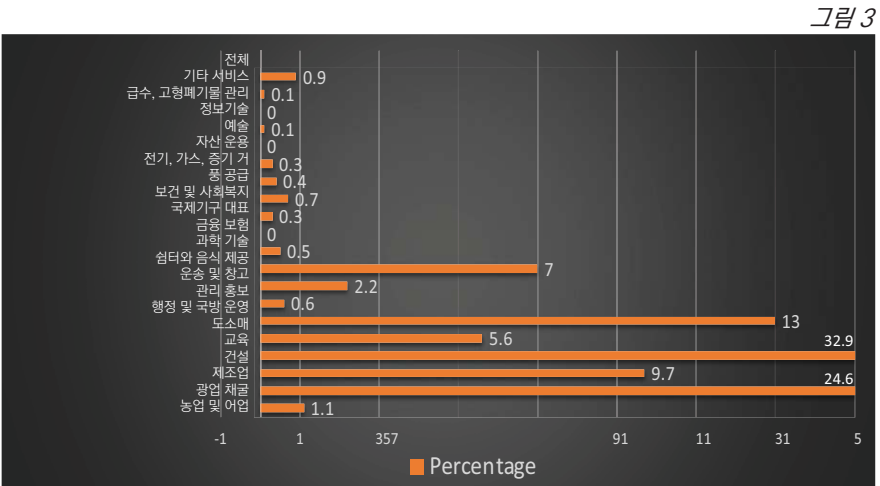
(몽골에서 일하는 외국인)
(국가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고용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 (산업 부문별)



“ 외국인 고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 www.ces.gov.mn를 방문하거나 70137003으로 연락하면 얻을 수 있다. ”

해외 투자

최근 몇 년 동안 천연자원, 건설, 농업 같은 산업을 기반으로 한 몽골 경제와 기업의 급속한 성장은 전세계 투자자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투자법 (2013)

몽골 국회(State Great Hural)는 새 투자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은 2013년 1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이 법률로 인해 몽골의 투자 환경은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투자법은 과거에 있었던 민간 해외 투자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외국 정부 투자에 대한 정부 승인 요건을 줄였다. 또한 간단하고 개방적인 투자 절차를 도입하고 절차를 지원하는 새로운 전담 기관을 신설하며 일련의 투자 우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보다 개방적인 투자 지형

투자법에 따라, 내국인이나 내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이나 정부 승인 없이 어느 산업에나 투자할 수 있다. 유일한 예외는 광물, 원격 통신, 언론, 은행업/금융 부문에서 운영 중인 법인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한 외국 국영 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에 적용된다. 이러한 SOE는 새로 설립된 몽골 투자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SOE는 외국 주권 국가가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실체로 정의한다. 또한 투자법은 과거에 존재했던 광물, 원격 통신, 은행업/금융 부문의 민간 해외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없앴으며, 외국 SOE와 관련된 국회의 승인 절차를 철폐하고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 사이의 차별을 없앴다.

양허법

본 법률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국가 및 지역의 자체 자산에 대한 면허를 교부하는 데 필요한 입찰 기구, 면허 계약서의 체결, 개정, 해지 및 분쟁 해결 관련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다.

민관합작(PPP) 전략

- 정책 개발, 보급, 감시, 시행
- 개별 사업 후원, 기획, 준비, 시행, 감시
- 자금 지원을 받은 조건부 채무의 금융 감독

몽골의 외국 기업 비즈니스 환경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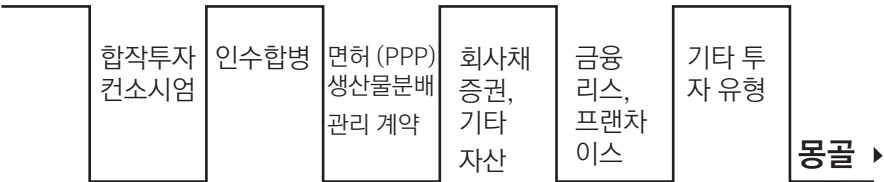
투자법은 외국 기업이 몽골에서 사업 활동 진행을 위해 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business entity with foreign investment, BEFI)으로서 또는 연락 사무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BEFI는 몽골에서 설립되고 최소 기업체 기여금이 투자자당 USD 100,000달러이며 외국인 투자자가 적어도 기여금의 25%를 보유한 기업체를 의미한다.

연락 사무소는 외국 모기업의 연락 사무소로서만 운영하기 위해 몽골에서 설립된 실체로 정의하며, 상기 연락 사무소는 몽골에서 사업 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벌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투자 유형

·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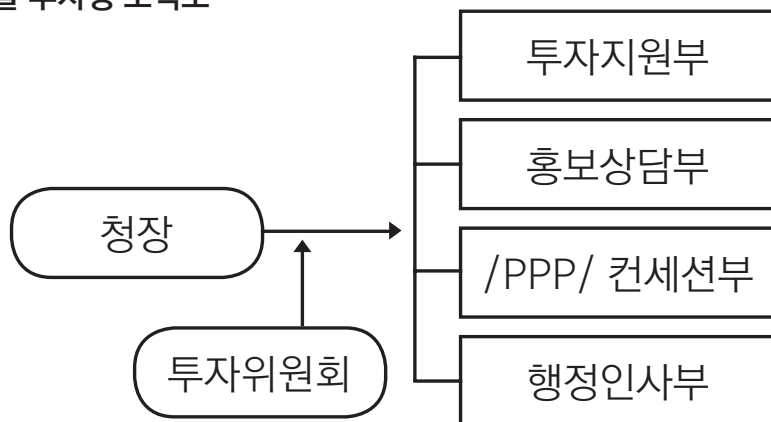
“ 몽골 투자법(2013)은 몽골 투자청 웹사이트 www.investmongol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몽골 투자청 - 법률 집행과 투자자 지원

투자법에 따라 투자법을 집행하고, 자격 있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세금 안정화 증명서(안정화 증명서)를 발급하며, 외국 SOE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몽골 투자청이 신설됐다.

그 밖에도, 몽골 투자청은 투자 계획 수립 과정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투자자 양쪽 모두를 지원하고, 이들의 이해관계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위임 받았다.

몽골 투자청 조직도



몽골 투자청의 주요 기능

- 국제적으로 몽골 홍보
- 몽골에 기업을 설립하고 싶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컨설팅과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 FDI 지원 및 신규 해외 투자 등록
- 국제적으로 몽골의 투자 환경과 기회 홍보
- 투자 계획 수립 과정에서 투자자 지원

- 자격 있는 투자자에게 안정화 증명서 발급
- 안정화 증명서 소지자의 등록 유지
-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지원
- 관련 국가 행정 당국과 더불어 입찰 서류 준비, 입찰 발표, 정리 및 평가
- 특허권 소유자, 다른 실체와 함께 응자 확보를 위해 특허권 소유자와의 계약으로서 면허 및 기타 관련 협약 체결
- 특히 법률에 따라 인정 받은 경우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기준 채택
- 면허 교부와 집행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른 관련 당국에 방법론적인 전문가 지원 제공

“ 기타 세금 또는 비세금 투자 우대 조치와 혜택은 몽골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

몽골 정부와의 투자 협약

투자법에 따라 투자 금액이 MNT 5,000억을 초과하는 사업체는 몽골 정부와 투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투자 협약은 투자법으로 정한 기간 보다 더 긴 안정화 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협약에는 투자법에 명시된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세금 안정화 조항, 기타 금융 우대 조치와 혜택이 포함될 수 있다.

공공-민간 파트너십 사업 목록

표 No 14

No.	Project Name	Type of PPP	
One.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sector projects			
1	Center for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 western part of Ulaanbaatar city	Design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2	Center for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in eastern part of Ulaanbaatar city	Design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3	Renovation of soum center infrastructure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4	Dormitory for 500 students of the Defense University of Mongolia	Design Build Leas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5	Establishment of the Mining and metal processing complex	Renovate Build Operate Transfer, Build Transfer	Signed
6	Human Development center	Build Operate Transfer	Signed
7	Ulaanbaatar city Conference and convention center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7*	Rashaant petroleum oil tank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Two. Road projects			
8	Tosontsengel-Uliastai 114km paved road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9	Bayankhongor-Altai 256.1km paved road and bridge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10	Altai-Darvi 263 km paved road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11	Tosontsengel crossroad-Numrug-Songino 167 km paved road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12	Songino soum-Khyargas lake east rim 135.5 km paved road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13	Dashinchilen-Orkhon bridge and Murun-Tarialan 232km paved road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14	Dalanzadgad-Tsogttsetsii /Tavantolgoi/ 94.8km paved road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15	Khujirt-Tuvkhun temple-Ulaantsutgalan 90.1 км paved road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16	Dashinchilen-Ugiinnuur- Khushuu Tsaid-am 30 км paved road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17	Renovation of "Onon" bridge in Binder soum of Khentii aimag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18	Mandal soum-Zuun Kharaa 15.8 км paved road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19	Choir-Bur Undur 50 км paved road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20	Tavantolgoi-Khanbogd-Khangi paved road	Build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21	Nariinsukhait-Shiveekhuren road	Build Operate Transfer	Signed
22	Bayanzurkh toll station-Nalaikh-Choir interconnection road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23	Highway connecting Ulaanbaatar City with the new Airport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24	Altanbulag-Ulaanbaatar-Zamyn Uud Highway	Build Operate Transfer	Signed
Three. Pipeline transport projects			
25	Baganuur-Ulaanbaatar coal transportation pipeline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26	Tavantolgoi-Gashuunsukhait coal transportation pipeline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Four. Airport projects			
27	Nalaikh Civilian and Special purpose airport	Renovate/Equip Lease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28	Renovation and Retrofitting of Dalanzadgad airport into International airport	Design Build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Five. Power generation projects			
29	700 MW Baganuur Power plant	Build Operate Transfer	Under negotiation

30	270 MW Shivee-Ovoo power plant	Build Own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31	Nariinsukhait-Shiveekhuren 110kW electric power transmission line and substation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32	Oyutolgoi-Tsagaan suvarga 220kW electric power transmission line and substation	Build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33	600 MW Chandgana power plant and construction of Baganuur-Undurkhaan electric power transmission line	Build Own Operate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34	Unudrkhaan-Choibalsan 220kW electric power transmission line and substation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35	600 MW Tevshiin Gobi power plant in Saintsagaan soum of Dundgovi aimag	Build Own Operate	Under negotiation
36	Extension and renovation of Choir substation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37	450 MW CHP number 5	Build Operate Transfer	Signed
38	100 MW Dornod Thermal power plant	Build Operate Transfer	Under negotiation
39	Tuul-Songino hydro charged power plant complex	Build Own Operate	Signed
40	100 MW Telmen thermal power plant	Build Operate Transfer	Signed
Six. Environmental projects			
41	Hazardous waste disposal processing plant	Design Build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42	Tuul river cascade reservoirs	Design Build Transfer, Design Build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43	Renovation of Central waste treatment facility of Ulaanbaatar city	Design Renovate Operate Transfer, Build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44	Waste to electricity plant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Seven. Education projects			
45	72 elementary school, kindergarten complex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46	Construction and renovation of 7 secondary schools, 3 kindergartens	Design Demolition Build Transfer	Under negotiation
Eight. Health projects			
47	Kidney hemodialysis services	Buy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47.1	The Center for Elder Care and Advanced Illness	Design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47.2	Improve morgue service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47.3	Medical oxygen production plant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Nine. Sport, tourism sector projects			
48	International Film studio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49	International Horse racing center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50	Chinggis Khaan Memorial complex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51	Winter sport complex	Design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52	Mongolia ethnic heritage museums	Design Build Own Operate	Available for investment
Ten. Railroad projects			
53	Erdenet city – Ovoot mine railroad project	Build Operate Transfer	Available for investment

투자자를 위한 추가 우대 조치와 혜택

투자법에 따라 투자자는 몽골 정부로부터 다양한 기타 세금 및 세금 외 혜택을 받는다.

세금 외 혜택에는 세금 면제, 특별 세금 우대, 가속 상각, 과세 대상 수입에서 공제 가능한 상각, 손실 이월, 과세 대상 수입에서 종업원 교육비 공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세금 외 혜택에는 장기 토지 임차권, 외국인 투자자들과 그 가족들의 거주 허가증, 투자가 자유경제구역이나 산업단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록 절차의 신속한 처리, 혁신 사업과 관련이 있는 투자 사업의 경우, 재무 보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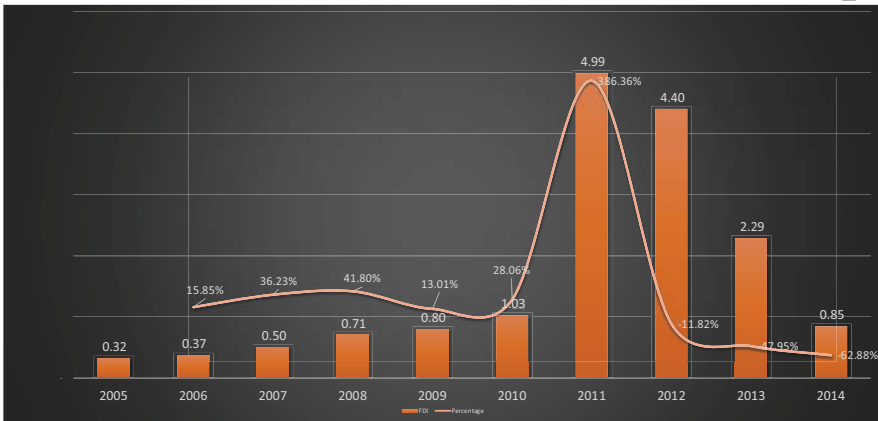
그 밖에도 건설 용도로 수입한 장비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 통계

112개국 1,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몽골 투자청에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직접 투자 금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USD170억 달러에 달한다.

몽골의 FDI 유입 (단위: 백만 달러)

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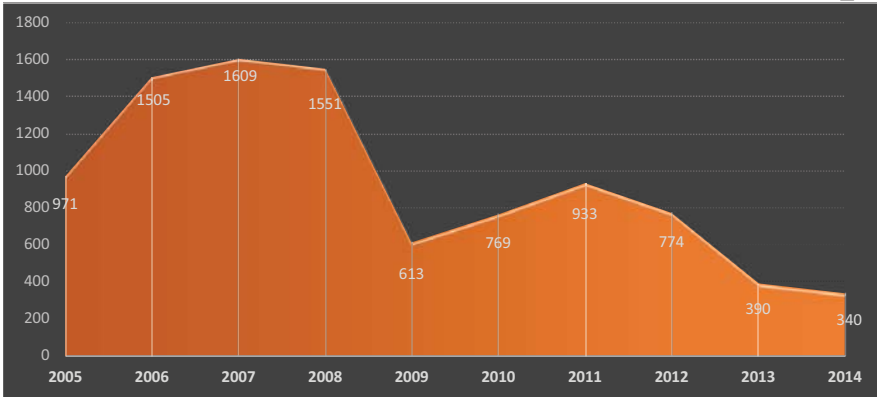


출처: 몽골 투자청 데이터베이스

“ 최신 해외 투자 통계는 몽골 투자청 웹사이트 www.investmongolia.com에서 볼 수 있다.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기업의 수)

그림 5



출처: 몽골 투자청 데이터베이스

외국인 직접 투자 (부문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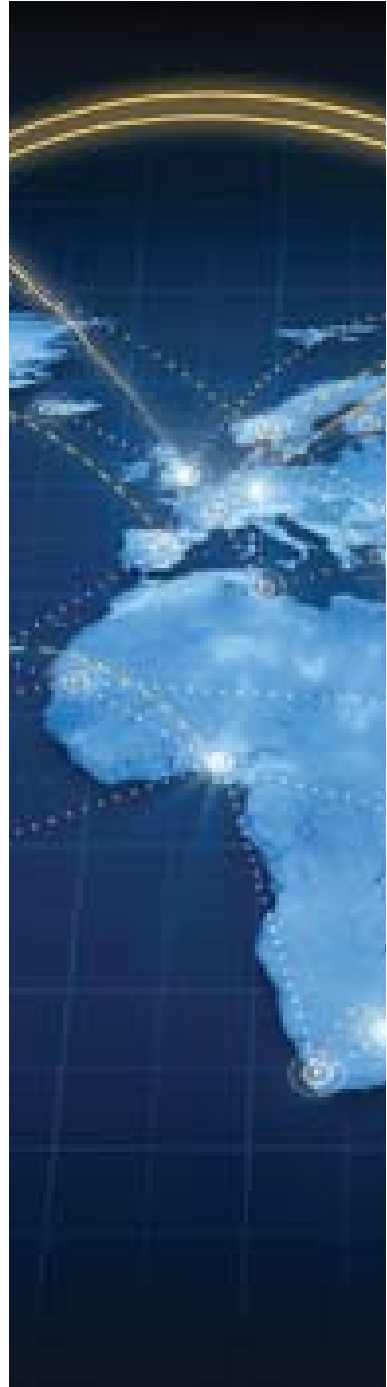
그림 6



출처: 몽골 투자청 데이터베이스

무역

몽골은 WTO 회원국으로서 WTO 비가입 회원국을 비롯해 모든 무역 파트너에게서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 최혜국/(MFN)/ 대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무역 정책

몽골은 쿼터나 복잡한 라이선스 요건이 없는 자유 무역 체제를 갖고 있다.

- 1997년 WTO 회원 가입으로 무역 체제가 상당히 자유화됐다.
- 수입 및 수출 활동은 관세법(2008)의 규제를 받는다.

수입 금지, 제한, 라이선싱

몽골 관세법에 따라, 몽골로 들어오는 상품의 수입은 제한을 받지 않으나 단, 극소수 제품에 적용되는 수입 라이선스가 있다.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GASR에 등록하는 것은 관세 신고 용도로 반드시 필요하다.

수입 라이선스는 아래의 제품을 포함한 특정 제품의 수입에 반드시 필요하다.

- 화학제품
- 혈액과 장기
- 폭발물과 총 등

제한된 품목의 수입 라이선스는 아래와 같이 해당 행정부에서 발급한다.

- 환경녹색성장관광부 (Ministry of Environment, Green Development and Tourism)
- 교육문화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 식량농업부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 보건체육부 (Ministry of Health and Sport)

관세

관세는 몽골의 상품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해 부과, 징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관세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종가세
- 종량세
- 상기 관세의 결합
- 처음 두 가지 관세 중에서 더 높은 관세가 수반되는 관세

몽골에서 대부분의 수입품에는 5%의 종가관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일부 수입품에는 계절관세가 부과된다.

특정 수출품에는 종량관세가 부과된다.

해외 무역에 관여하는 (물리적 또는 법적) 개인은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 이후에 관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과 수수료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자세한 정보는 <http://ecustoms.mn/> 참조.

관세 우대 조치

☞ 관세법(2008)에 따라, 아래의 품목은 몽골에서 관세를 면제받는다.

- 장애인이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는 기구, 인공장기, 부수적인 예비 부품
- 인도주의적 지원과 유사한 기부 용도의 상품
- 정부와의 계약 또는 석유 부문의 생산물 분배에 따라 석유 탐사, 채취, 사용에 필요한 장비, 시설, 자재, 원료, 기구, 석유, 디젤 연료
- 외국 국가에서 제작된 몽골 국가 통화
- 외국 외교 사절단, 영사관, 국제연합, 특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상품
- 관광객의 소지품
- 의료 용도로 사용할 혈액, 혈액 제제, 신체, 장기
- 가스 연료, 지정 컨테이너, 장비, 특정 기계류, 시설, 장치
- 민간 항공 항공기와 부수적인 예비 부품
- 외국 외교 사절단의 수장, 외교, 기술, 서비스 분야 직원과 그 가족이 현지 국으로 이주해 오는데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사용해야 하는 개인 물품

서류 및 절차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국가의 주요 세관에서 제공된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한 곳에서 모든 필수 세관 서류와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수출 및 수입 관세 신고 단계

1. 신고할 제품의 세관 서류 준비와 제출
2. 세관의 세관 서류 심사
3. 상품과 운송수단 검사
4. 관세, 기타 세금 부과 및 납부
5. 허가증 전달과 상품의 세관 국경선 통과

몽골관세청 연락처

몽골 관세청 (Customs General Administration of Mongolia)
 주소: Sukhbaatar District, Ikh toiruu 81/1 Ulaanbaatar-14193
 전화: (976-11) 350057, 팩스: (976-11) 350048
 웹사이트: <http://www.ecustoms.mn/>
 E-mail: info@ecustoms.mn

자세한 정보는 <http://ecustoms.mn/> 참조.

주요 정부기관

Ministries	Phone number	Website
광업부 (Ministry of Mining)	976-51-263506	www.mm.gov.mn
환경녹색성장관광부 (Ministry of Environment, Green Development and Tourism)	976-51-261966	www.mne.mn
교육관광부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ourism)	976-51-261966	www.mne.mn
외무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976-62-262222	www.mfa.gov.mn
국방부 (Ministry of Defense)	976-51-261718	www.mod.gov.mn
재무부 (Ministry of Finance)	976-51-267468	www.mof.gov.mn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976-51-267533	www.moj.gov.mn
에너지부 (Ministry of Energy)	976-62-263051	www.energy.gov.mn
산업부 (Ministry of Industry)	976-51-262271	
건설도시계획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976-11-327716	www.mcup.gov.mn
교육문화과학부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and Science)	976-18001209	www.meds.gov.mn
노동부 (Ministry of Labor)	976-51-261418	www.mol.gov.mn
인적개발사회복지부 (Ministry of Human Development and Social Protection)	976-51-264791	www.khun.gov.mn
도로교통부 (Ministry of Road and Transportation)	976-62263170	www.mrt.gov.mn
식량농업부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976-11-310986	www.mofa.gov.mn
보건체육부 (Ministry of Health and sport)	976-51-263913	www.moh.mn

구청

Baganuur district	www.bnd.ub.gov.mn
Bagakhangai district	www.bagakhangai.ub.gov.mn
Bayangol district	www.bgd.mn
Bayanzurkh district	www.bzd.ub.gov.mn
Nalaikh district	www.nad.ub.gov.mn
Songino Khairkhan district	www.shd.mn
Sukhbaatar district	www.sbd.ub.gov.mn
Khan-Uul district	www.khanuul.mn
Chingeltei district	www.chingeltei.gov.mn

은행

Central Bank of Mongolia	www.mongolbank.mn
Khan Bank	www.khanbank.com
Trade and Development Bank	www.tdbm.mn
Golomt Bank	www.golomtbank.com
The State Bank	www.statebank.mn
Xac Bank	www.xacbank.mn
Capitron Bank	www.capitronbank.mn
UB City Bank	www.ubcbank.mn
Development Bank	www.dbm.mn
Erel Bank	www.erelbank.mn
National Investment bank	www.nibank.mn
Capital Bank	www.capitalbank.mn
Transport Development Bank	www.transbank.mn
Chingis Khan Bank	www.ckbank.mn
Credit Bank	www.creditbank.mn

상공회의소

Mahatma Gandhi street, Khan-Uul district- 15,
Ulaanbaatar-17011, Mongolia, MNCCI building

Tel: +976-11-327176, Fax: +976-11-324620

Email: chamber@mongolchamber.mn,
info@mongolchamber.mn

Website: www.mongolchamber.mn

BUSINESS COUNCIL OF MONGOLIA

Express tower, 12-th floor Peace Avenue, Ulaanbaatar,
15160, Mongolia

Email: info@bcmongolia.org

Phone:/Fax: +976-11-317027

www.bcmongolia.org

NATIONAL HOTLINES

+976-1109

+976-1617

+976-1950

+976-1199

대사관

	Address	Tel/Fax
Embassy of the Republic of San Marino	Diplomat 95 apartment 1-5, 4 khoroo,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Tel: 70113998 Fax: 70113997
Embassy of Republic of India	Zaluuchuud avenue 10,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Tel: 329522 329524 Fax: 329532
Embassy o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Peace avenue 47, Ulaanbaatar	Tel: 458917 454632 Fax: 458923 458493
Embassy of Canada	Central tower, 6th floor, No. 603-607, Sukhbaatar square, Ulaanbaatar	Tel: 332500 Fax: 332515
Embassy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Zaluuchuud avenue 10, Sukh baatar district, Ulaanbaatar	Tel: 320955 Fax: 311943
Embassy of Japan	Olympic street 8,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Tel: 320777 Fax: 313332
Embassy of Laos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kh toiruu 59,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Tel: 326440 322834 Fax: 321048
Embassy of French Republic	Peace avenue 3,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Tel: 324519 329633 Fax: 319176
Embassy of Republic of Korea	Olympic street 10, Ulaanbaatar	Tel: 321548 310153 Fax: 311157
Embassy of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Peace street 30, Ulaanbaatar 13	Tel: 458133 Fax: 458036

Embassy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13	Tel: 329095 Fax: 320776
Embassy of Czech Republic	Olympic street 14, Ulaanbaatar	Tel: 321886, 311053 Fax: 323791
Embassy o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plomat 95, 4 khoroo,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Tel: 326153, 325663 Fax: 330529
Embassy of Republic of Kazakhstan	No.72, Zaisan street, Khan-Uul district, Ulaanbaatar	Tel: 345408, Fax: 345408
Embassy of Federal Republic of Germany	United Nations street, Ulaan-baatar	Tel: 323325, 323915 Fax: 323905
Embassy of State of Kuwait	Khan-Uul District, 11 khoroo, Zaisan, Villa Vesta Town House 1, Ulaanbaatar	Tel: 7444442, 7744445 Fax: 7444440
Embassy of Russian Federation	Peace street-6-A, Ulaanbaatar	Tel: 327191, 312851 Fax: 327018
Embassy of Republic of Turkey	Peace street 5, Ulaanbaatar-13	Tel: 311200, 329545 Fax: 313992
Embassy of Cuba	United Nations street18, Ulaan-baatar	Tel: 323778, 327677 Fax: 327709
Embassy of Republic Bulgaria	Sukhbaatar district, 1 khoroo, Embassy street 17, Diplomat apartments A 402	Tel: 70140403

항공사

Ⅱ No. 3

www.miat.com	Mongolian Airlines /MIAT/
	UB-Beijing-UB
	UB-Hong Kong-UB
	UB-Seoul-UB
	UB-Tokyo-UB
	UB-Berlin-UB
	UB-Moscow-UB
	UB-Moscow-Berlin-UB
	UB-Singapore-UB
www.hunnuair.com	Hunnu Air LLC
	UB - Manchuria - UB
	UB - Hailar - UB
www.aeromongolia.com	Choibalsan - Hailar - Choibalsan
	Aero Mongolia LLC
www.airchina.com	UB-Hohhot-UB
	UB-Irkutsk-UB
www.koreanair.com	Air China
	UB-Beijing-UB
www.turkishairlines.com	Korean Air
	UB-Seoul-UB
www.turkishairlines.com	Turkish Airlines
	UB-Istanbul-UB

호텔

Hotels	Tel & Fax	Address
Tuushin Hotel	+976- 70009915 +976- 11- 323162 Fax:+976-11325903	www.bestwesternmongolia.mn info@bestwesternmongolia.mn
Blue Sky Hotel	+976-70100505 +976-70100404	www.hotelbluesky.mn
Terelj Hotel	+976-99992233 +976-70110067	www.tereljhotel.com info@tereljhotel.com
Ulaanbaatar Hotel	+976-11-320620 +976-70116688 Fax:+976-11324485	www.ubhotel.mn reservations@ubhotel.mn
Chingis Khan Hotel	+976-70000099 Fax: +976-11312788	www.chinggis-hotel.com marketing@chinggis-hotel.com
Corporate Hotels	+976-11334411 +976-88113601 Fax:+976-11334422	www.corporatehotels.mn mail@corporatehotel.mn
Bayangol Hotel	+976-11-312255 Fax:+976-11-326880	www.bayangolhotel.mn info@bayangolhotel.mn
Kempinski Hotel Khan Palace	+976-11-463463 Fax:+976-11-463464	www.kempinski.com reservations.ulaanbaatar@kempinski.com
Ramada Ulaanbaatar Hotel	+976-70141111	www.ramada.com/hotels/mongolia/ ulaanbaatar
Sunjing Grand Hotel	+976-11-457711 +976- 70161114 Fax:+976-11-462255	www.sunjingrandhotel.com

몽골법 번역문

투자법
회사법
조세법





2013년 10월 3일

울란바토르시



몽골 투자법

제1장 일반 배경

제1조 법률의 목적

- 1.1. 이 법의 목적은 몽골 영토 내의 투자자들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에 대한 공통된 법적 보장을 확보하며, 조세 환경을 안정시키고, 투자자와 투자 관련 정부 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며, 투자에 포함된 기타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 투자 법률

- 2.1. 투자에 관한 법률은 몽골 헌법¹, 일반 세법², 이 법률 및 이러한 법률에 따라 채택된 그 밖의 일반법령으로 구성된다.
- 2.2. 몽골이 한 당사자인 국제 협정의 규정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국제조약 우선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3.1. 이 법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1.1. “투자”는 공동 자본금에 귀속되고, 몽골 영토 내에서 이익 지향 활동을 추구하는 기업법인의 재무보고서에 반영된 유형 및 무형 자산을 의미한다.
 - 3.1.2. “투자자”는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를 의미한다.

¹몽골 헌법은 1992년 "정부 고시" 제1호로 공포되었다.

²일반 세법은 2008년 "정부 고시" 제22호로 공포되었다.

- 3.1.3. “외국인 투자자”는 몽골에 투자하는 외국의 법인 또는 개인(외국 시민 또는 몽골에 거주하지 않는 무국적자 또는 영구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몽골 시민)을 의미한다.
- 3.1.4. “내국인 투자자”는 몽골에 투자하며, 몽골에 등록된 법인 또는 개인(몽골 시민 및 몽골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시민 또는 무국적자)을 의미한다.
- 3.1.5. “외국인 투자 기업법인”은 몽골 내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되고, 총 자본이 US\$100,000 (또는 그에 해당하는 몽골 투그릭 또는 MNT화) 또는 그 이상이며, 총 자본의 25% 이상을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법인을 의미한다.
- 3.1.6. “외국인 기업법인의 대표 사무소”는 여하한 법인체로서의 지위를 갖지 않으며, 외국인 법인체가 위임에 의해 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몽골 내에 설정한 사람/실체를 의미한다.
- 3.1.7. “조세 환경”은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세금의 종류, 퍼센티지 및 금액과 그의 부과 및 납부를 결정하는 일련의 규제들을 의미한다.
- 3.1.8. “세율 및 세액의 안정화”는 이 법 13.4조에 따라 이 법에서 명시한 세율과 세액 및 납부를, 안정화 증명의 유효 기간 동안 인상 없이 유지 또는 감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3.1.9. “세율 및 세액 안정화 증명”은 이 법에서 명시한 세율과 세액 및 납부를 안정화하려는 목적으로 허가 기관이 이 법 16.1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 법인체에게 발행하는 증명을 의미한다(이하에서 “안정화 증명”이라고 한다).
- 3.1.10. “안정화 증명 보유자”는 이 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안정화 증명을 받은 몽골에 등록된 법인체를 의미한다.
- 3.1.11. “외국 정부 소유 법인체”는 외국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체를 의미한다.
- 3.1.12. “계열 당사자”는 몽골 회사법³ 99.1조에 명시된 당사자를 의미한다.

제4조 법률의 범위

- 4.1. 이 법은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의 몽골 영토 내의 투자에 적용한다.
- 4.2. 투자자는 몽골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부문, 생산 및 용역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 4.3. 외국 정부 소유 법인체는 이 법 21.1조에 따라 허가를 획득한 후 투자할 수 있다.
- 4.4. 외국인 및 내국인 투자자는 회사 법, 법인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률⁴ 및 기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 등기소에 등록된 후 몽골 내에서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4.5. 이 법은 정부 및 지방 기금의 재화, 작업 및 용역 조달에 관한 법률⁵에 명시된 것과 같은 정부 기관 및 국가 소유 기업의 국가 및 지방 예산에 대한 투자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6. 이 법은 국제 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 상업적 조건이 없는 민간 사업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또는 교부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7. 이 법 20조는 핵에너지 부문의 투자 계약을 결정/적용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그러한 관계는 몽골 핵에너지법⁶에 따라 규제한다.

제5조 투자 형태

- 5.1. 몽골 내 투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할 수 있다.
 - 5.1.1. 투자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자와 공동으로 새로운 기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5.1.2. 투자자는 주식, 채권/사채 및 기타 종류의 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5.1.3. 투자자는 회사 전체를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 5.1.4. 투자자는 사용권, 제품 공유, 마케팅과 경영 및 기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1.5. 투자자는 금융 리스 또는 프랜차이즈 형태에 투자할 수 있다.
 - 5.1.6. 특정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그 밖의 모든 형태.

³ 몽골 회사법은 2011년 “정부 고시” 제42호로 공포되었다.

⁴ 법인체의 국가 등록에 관한 법률은 2003년 “정부 고시” 제22호로 공포되었다.

⁵ 정부 및 지방 기금의 재화, 작업 및 용역 조달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정부 고시” 제48호로 공포되었다.

⁶ 핵에너지법은 2009년 “정부 고시” 제29호로 공포되었다.

제2장 투자의 공통 법적 보장

제6조 투자의 공통 법적 보장

- 6.1. 투자자는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및 비 조세 지원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6.2. 국가는 투자자에게 안정화 증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또는 이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자자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세금 안정성에 대한 보장을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 6.3. 몽골 내에서 투자자의 자산/투자를 불법적으로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 6.4. 투자자의 재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리고 이 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동원된 재산을 완전히 보상하는 조건으로만 동원될 수 있다.
- 6.5. 몽골이 한 당사자인 국제조약으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동원된 자산의 보상은, 이 법 6.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자산이 동원되거나 투자자 또는 공중에게 통지된 때의 자산의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며 가격으로 지불한다.
- 6.6. 몽골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것과 같이 투자자가 소유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 6.7. 투자자는 몽골 영토 내에서 자신들의 납세 의무를 정히 이행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들의 다음과 같은 자산 및 수입을 몽골 외부로 방해받지 않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6.7.1. 사업 활동의 수익 및 배당
 - 6.7.2.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
 - 6.7.3. 해외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지불
 - 6.7.4. 법인의 청산 후 투자자 지분의 잔여 재산
 - 6.7.5. 합법적으로 획득 또는 소유하는 기타 재산
- 6.8. 투자자가 이 법 6.7조에 명시된 자산을 화폐 자산으로 몽골 외부로 이전할 때, 투자자는 이를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환전되는 통화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6.9. 몽골이 한 당사자인 국제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는 몽골 국가 당국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또는 국내 중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10. 이 법의 개정은 국회의원 2/3을 이상의 표결로 의결한다.

제7조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

7.1.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공통 권리를 갖는다.

- 7.1.1. 독자적으로 투자 대상, 형태, 금액, 구역 및 지역을 선택하고 관련 투자 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권리
 - 7.1.2. 투자를 하나 이상의 부문, 프로젝트, 제조 및 운영에 할 수 있는 권리
 - 7.1.3. 투자 프로젝트 집행이 기본틀 내에서 해외로부터 재화, 작업 및 용역을 수입하고 생산된 제품, 작업 및 용역을 수출할 수 있는 권리
 - 7.1.4. 몽골에 등록된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 기관을 통해 외환을 매입 또는 매각함으로써 필요한 외환을 조달할 수 있는 권리
 - 7.1.5.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고 자신의 합법적 수익 및 소득을 외국에 이전 또는 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 7.1.6. 투자한 법인의 경영 또는 경영에 참여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7.1.7. 자금 조달, 대출, 지원, 토지 및 천연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요청하고 그러한 요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
 - 7.1.8. 국가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 7.1.9. 법률에 명시된 기타 권리
- 7.2. 투자자는 몽골 법률에 따라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기본 의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 의무를 갖는다.
- 7.2.1.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 수행한 작업 및 공급한 용역이 국가 및 국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
 - 7.2.2.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 기업법인과 관련된 독립된 장부 및 기록을 유지할 의무
 - 7.2.3. 과세 당국 및 기타 정부 당국의 요청 시 이들이 자신들의 기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된 시한 내에 필요한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할 의무
 - 7.2.4. 소비자의 이익을 존중하고 인간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 친화적 활동을 영위할 의무
 - 7.2.5. 관련 법률에 따라 자신들의 직원의 사회 및 건강 보험료를

- 납부할 의무
- 7.2.6. 자신의 피고용자의 지식, 경험, 자격 및 기술을 개선하고, 경영 방법의 개선에 집중하고 우수 경영 원칙을 도입할 의무
- 7.2.7. 몽골 국민의 국가 유산, 관습 및 전통을 존중할 의무
- 7.2.8. 안정화 증명을 보유한 법인체로서 이 법 16.2조에 명시된 바에 따른 투자를 행할 의무
- 7.2.9.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타 의무

제3장 투자 관련 국가 기구의 온전한 권한

제8조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 행정 기구의 온전한 권한

- 8.1.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 행정 기구는 다음과 같은 완전한 권한을 행사한다.
 - 8.1.1. 투자 법률의 집행을 보장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
 - 8.1.2. 투자 정책 및 투자 장려가 필요한 부문 및 지역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고 정부 결정을 위해 전달할 수 있는 권한
 - 8.1.3. 이 법 21.1조에 명시된 안정화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
 - 8.1.4. 매 반기 또는 매년 중앙 은행 및 고용, 과세, 통관, 사회 보험 및 외국 시민을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투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투자 통계를 발간할 수 있는 권한
 - a) 투자 원천 및 금액
 - b) 납세
 - c) 직업/작업장 숫자
 - d) 외국 시민의 거주 허가
 - e) 외국인 투자 실체의 숫자
 - f) 직접 투자에 의해 수입된 재화 및 용역
 - 8.1.5. 법률이 규정한 기타 권리

제9조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기관)

- 9.1. 투자 유인, 투자 환경 조성의 촉진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을 갖는,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기관)를 둔다.
- 9.2.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 9.2.1.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종합적 활동의 수행
 - 9.2.2.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에 대한 지원 및 서비스 제공
 - 9.2.3. 투자의 법적 환경 및 투자자가 선호할 수 있는 국내 시장 조건 조성
 - 9.2.4. 투자자들의 투자 계획 지원 제공
 - 9.2.5. 투자에 대한 기타 국가 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제공
 - 9.2.6. 이 법 16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투자자에게 안정화 증명 발급
 - 9.2.7. 안정화 증명 보유자의 투자 행위가 사업 계획, 타당성 조사 및 이 법 16.2조에 명시된 투자 기간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
 - 9.2.8. 이 법 9.2.7조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정화 증명 보유자는 국가 중앙 행정 기구로부터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법인체로부터 법적 법인체의 재무보고서를 각각 받는다.
 - 9.2.9. 안정화 증명 보유자의 국가 등록 유지
 - 9.2.10.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지원 제공
- 9.3. 이 법 9.2.6조에 명시된 문제에 관한 결정을 도출하기 위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의 결정 하에 프리랜서/위원회를 설치한다.
- 9.4.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은 이 법 9.3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복합 기능 및 활동 규정을 결정한다.
- 9.5.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대표자를 이 법 9.3조에 명시된 위원회에 임명한다.

제4장 투자 촉진

제10조 투자 촉진의 종류

10.1. 투자자에 대한 투자 촉진은 세금 및 비세금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제11조 투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11.1.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1.1.1. 면세

11.1.2. 세금 인센티브 제공

11.1.3. 과세 수입으로부터 공제되는 감가상각비를 가속상각법으로 계산

11.1.4. 과세 수입으로부터 공제되는 손실을 미래의 수입으로 이전하여 계산

11.1.5. 과세 수입으로부터 직원 훈련비 공제

11.2. 수입 기계류 및 기술 장비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공사 기간 중 부가가치세율을 영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

11.2.1. 건설 자재, 원유 및 농산물 가공 그리고 수출 제품 공장 건설

11.2.2. 나노, 바이오 및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공장 건설

11.2.3. 발전소 및 철도 건설

11.3. 이 법 11.1 및 11.2조에 명시된 투자자를 위한 촉진 내용은 과세에 관한 입법으로 규정한다.

제12조 투자를 위한 비세금 인센티브

12.1. 투자자에게 다음과 같은 형태의 비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2.1.1. 계약에 기초하여 60년까지의 토지 임차 및 사용권을 제공하고 계약의 주된 조건에 따라 계약 기간을 1회에 한해 40년 연장

12.1.2. 자유 구역, 생산 및 기술 공단의 활동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등록 및 검사 제도 완화

12.1.3. 인프라, 과학 및 교육 부문의 프로젝트 창출을 지원하고,

- 외국인 작업 인력 및 전문가를 증원하며, 고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허가를 쉬운 방식으로 제공
- 12.1.4. 혁신 프로젝트 수행에 지원을 제공하고 수출 지향 혁신 제품 생산에 금융 보증
 - 12.1.5. 몽골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와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몽골의 관련 법률에 따라 복수 비자 및 거주 허가 제공
 - 12.1.6. 관련 법률에 명시된 기타 촉진 내용
- 12.2. 비세금 촉진 인센티브는 토지법⁷, 자유구역법⁸, 산업 및 기술 공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⁹, 혁신법¹⁰, 몽골 산업 인력의 수출 및 외국 산업 인력 및 전문가 수입에 관한 법률¹¹ 및 기타 시행 중인 관련 법률로 규제한다.

제5장 투자 환경의 안정화

제13조 세율 안정화

- 13.1.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법인 실체에 대한 세율을 이 법률 13.5조에 명시된 당사자에게 안정화 증명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안정화한다.
- 13.2. 안정화 증명은 발급 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안정화 증명의 전체 유효 기간 동안 세율을 안정화한다.
- 13.3. 세율 안정화 사안은 이 법의 4.7조에서 달리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오직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투자 계약에 명시된 것과 같이 규제한다.
- 13.4. 안정화 증명의 유효 기간 내에 세법이 14.1조에 명시된 세율, 관세 및 수수료를 감액하여 개정되는 경우에, 안정화 증명 보유자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요율을 증액하여 개정되는 경우에 안정화 증명 보유자는 개정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13.5. 안정화 증명은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투자자에게 발급한다.
 - 13.5.1. 법인이체가 단독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경우, 안정화 증명을 관련 법인에게 발급한다.
 - 13.5.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관련 법인이체가 투자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경우, 안정화 증명을 대표 회사에 발급한다.
- 13.6. 담배 및 알코올음료의 생산, 수입 및 거래 행위에 대하여는 세율을 안정시키지 않는다.

제14조 안정화 대상 세금의 종류

- 14.1. 다음과 같은 세금, 수수료 및 관세의 요율을 안정화 증명 유효 기간 중 안정화 증명에 따라 안정화한다.
 - 14.1.1. 법인세
 - 14.1.2. 관세
 - 14.1.3. 부가가치세
 - 14.1.4. 광물자원 로열티

제15조 안정화 증명

- 15.1. 안정화 증명 양식은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승인한다.
- 15.2. 다음 정보를 안정화 증명 양식에 포함시킨다.
 - 15.2.1. 안정화 증명 보유자 – 법인체의 이름 및 주소
 - 15.2.2. 국가 등록 번호 및 안정화 증명 보유자 – 법인체의 등록 번호
 - 15.2.3. 이 법 13.5.2에서 명시한 법인체의 이름, 국가 등록 번호 및 법인체의 등록 번호
 - 15.2.4. 집행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이름
 - 15.2.5. 안정화 증명의 발행 일자 및 유효 기간
 - 15.2.6. 이 법 14.1조에 명시된 세율 및 수수료 요율
- 15.3. 안정화 증명을 매각, 담보 제공 및 선물로 제공함으로써 양도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 15.4. 정화 증명을 보유한 법인체가 합병, 통합 및 재건의 형태로 구조를 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규로 설립된 법인 또는 승계한 실체에 안정화 증명을 이전한다.
 - 15.4.1. 법인체가 투자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경우
 - 15.4.2. 투자 프로젝트가 이 법 16.1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⁷몽골 토지법은 2002년 “정부 고시” 제27호로 공포되었다.

⁸자유구역법은 2002년 “정부 고시” 제27호로 공포되었다.

⁹산업 및 기술 공단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2010년 “정부 고시” 제02호로 공포되었다.

¹⁰역신법은 2012년 “정부 고시” 제24호로 공포되었다.

¹¹몽골 산업 인력의 수출 및 외국 산업 인력 및 전문가 수입에 관한 법률은 2010년 “정부 고시” 제17호로 공포되었다.

제16조 안정화 증명 발급 기준 및 유효 기간

- 16.1. 몽골 내에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안정화 증명을 발급한다.
 - 16.1.1. 이 법 16.2 및 16.3조에 명시된 금액에 이르는 사업 계획과 타당성 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총 투자 금액
 - 16.1.2.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 완료
 - 16.1.3. 안정적인 작업장 창출
 - 16.1.4. 하이테크 및 기술 도입
- 16.2. 안정화 증명은 아래의 유효 기간으로 다음과 같은 부문에 발급한다.
 - 16.2.1. 채굴, 중공업 및 인프라 부문
 - 16.2.2. 16.2.1조에 명시된 부문을 제외한 기타 부문
- 16.3. 다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이 법 16.2조에 따른 안정화 증명의 유효 기간을 1.5배 연장하여 발급한다.
 - 16.3.1. 몽골의 장기적 사회 경제 부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의미 있는 수입 대체품 및 수출 지향 제품을 생산하고, 타당성 분석 보고서 승인 일자 현재의 중앙은행이 공식 환율에 따라 5,000억 MNT를 초과하여 투자하며 장소 및 부문을 불문하고 삼 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필요하다.
 - 16.3.2. 이 법 16.1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 -법인체가 부가가치세 포함 가공 산업을 다루며 자신의 기본 제품을 수출한다.
- 16.4. 투자 완료 기간은 안정화 증명 발급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6.5. 안정화 증명 보유자 - 법인체는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국가 행정 기구에 이 법 16.2조에 명시된 투자 완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 연간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 금액 (단위 10억 MNT)	안정화 증명의 유효 기간					투자 완료 기간 (단위: 년)
	올란바 토르	중앙 지역 (Gobisumber, Dornogobi, Dundgobi, Darkhan-Uul, Umnugobi, Selenge 및 Tuv 지방)	Khangai 지역 (Arkhangai, Bayankhon- gor, Bulgan, Orkhon, Uvurkhangai 및 Khuvsgul 지방)	동부 지역 (Dornod, Sukh- baatar 및 Khentii 지 방)	서부 지역 (Bayan- Ulgii, Go- bi-Altai, Zavkhan, Uvs 및 Khovd 지 방)	
30-100	5	6	6	7	8	2
100-300	8	9	9	10	11	3
300-500	10	11	11	12	13	4
500 이상	15	16	16	17	18	5

투자 금액 (단위 10억 MNT)					안정화 증명의 유효 기간 (단위: 년)	투자 완료 기간 (단위: 년)
올란바토르	중앙 지역 (Gobi- sumber, Dornogobi, Dundgobi, Dark- han-Uul, Umnugobi, Selenge	Khangai 지역 (Arkhangai, Bayankhon- gor, Bulgan, Orkhon, Uvurkhangai 및 Khuvsgul 지방)	동부 지역 (Dornod, Sukhbaatar 및 Khentii 지방)	서부 지역 (Bayan- Ulgii, Gobi-Altai, Zavkhan, Uvs 및 Khovd 지방)		
10-30	5-15	4-12	3-10	2-8	5	2
30-100	15-50	12-40	10-30	8-25	8	3
100-200	50-100	40-80	30-60	25-50	10	4
200 이상	100 이상	80 이상	60 이상	50 이상	15	5

제17조 안정화 증명의 신청

- 17.1. 이 법 16.1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자 - 법인체는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에 자신의 안정화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 17.2. 안정화 증명을 발급받기 위한 요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다.
 - 17.2.1. 이 법 16.1조에 명시된 기준의 충족을 확인하는 신청자의 진술서
 - 17.2.2. 법인체의 소개, 국가 등록 증명, 면허 및 법률에 명시된 경우 해당 기관이 발급한 기타 권리 증명 사본
 - 17.2.3. 새로운 하이테크 및 기술 도입에 관한 정보
 - 17.2.4. 관련 법률에 명시된 일반적 환경 영향 평가
 - 17.2.5. 투자 금액이 100억 MNT까지인 경우 사업 계획서, 또는 투자 금액이 100억 MNT 이상인 경우 타당성 분석 보고서

제18조 안정화 증명의 발급

- 18.1.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는 안정화 증명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30(삼십)일 이내에 이 법 9.3조에 명시된 위원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안정화 증명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 18.2.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가 안정화 증명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안정화 증명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몽골 내에 등록된 프로젝트 집행 법인에게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 18.3. 투자 프로젝트가 이 법 16.1조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완전한 경우,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는, 이 법 18.1조에 명시된 기간 내에 관련 근거와 함께 안정화 증명의 발급 거부를 서면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8.4.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는 이 법 15.2조에 명시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각각의 경우, 안정화 증명을 보유한 법인체의 요청에 따라 안정화 증명을 수정한다.

제19조 안정화 증명의 무효화

- 19.1.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안정화 증명을 무효화한다.
 - 19.1.1. 안정화 증명의 유효 기간 만료
 - 19.1.2. 안정화 증명 보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청산하는 경우
 - 19.1.3. 안정화 증명 보유자가 몽골 영토 외부로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이전하는 경우
 - 19.1.4. 안정화 증명 보유자가 불법적인 서류 제출에 의해 안정화 증명을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19.1.5. 승계자가 이 법 15.4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 19.1.6. 이 법 15.3조를 위반한 경우
 - 19.1.7. 외국 정부 투자 실체가 이 법 2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9.1.8. 안정화 증명 보유자가 이 법 16.2조에 따른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 19.1.9. 안정화 증명 보유자가 투자 계약을 체결 완료한 경우
- 19.2.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는 이 법 19.2조에 명시된 자신의 안정화 증명 무효화 결정을 오(5) 근무일 이내에 안정화 증명을 보유한 법인 및 과세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기구에 통지한다.

제20조 투자 계약

- 20.1. 몽골 정부는 5,000억 MNT를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사업 활동 환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 20.2.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조직이 투자자들과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 20.3. 투자 계약은 이 법 16.2 및 16.3조에 명시된 기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다.
- 20.4. 관련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이 법에 명시된 투자자에게 법적 보장을 제공하고, 조세 환경을 안정시키며, 협력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조건을 투자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 20.5. 5,000억 MNT를 이상의 금액을 투자한 안정화 증명을 보유한

법인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 계약을 관련 투자자와 체결할 수 있다.

20.6. 몽골 정부는 투자 계약 체결을 위한 규정을 승인한다.

제6장 외국 정부 소유 법인의 투자

제21조 외국 정부 소유 법인의 투자

21.1. 외국 정부 소유 법인이 다음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몽골의 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의 33% 이상을 보유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1.1. 광산업

21.1.2. 은행 및 금융

21.1.3. 매체 및 통신

제22조 허가 신청 및 결정

22.1. 이 법 21.1조에 규정된 법인은 직접 또는 대표 사무소 및 몽골 내에서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를 통해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구에 허가를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22.1.1. 신청자 국가의 관할 당국이 발행한 신청자의 설립 증명의 공증을 받은 사본

22.1.2. 신청자와 관련된 등록 당국의 참조 정보, 공동 지분 보유자, 최근 2년간의 이 법 21.1조에 명시된 신청자의 경영진

22.1.3. 외국 정부 소유 실체와 몽골의 실체 사이의 사전 거래, 그 유형 및 조건, 거래 당사자들, 이전할 지분, 주식 보유 비율, 계약 가격, 법인의 면허, 경영진 변경을 합의한 경우 마찬가지로 통지한다.

22.1.4. 외국 정부 소유 법인 및 몽골 기업법인의 재무보고서 및 재무보고서의 설명

22.1.5. 투자 계획 및 신청자가 몽골 내에서 집행할 사업 프로젝트.

22.2. 이 법 22.1조에 명시된 서류는 몽골어로 작성한다.

22.3. 투자 업무를 담당한 국가 중앙 행정 기구는 제출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이 법 22.1조에 명시된 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22.4. 투자 업무를 담당한 국가 중앙 행정 기구는 이 법 22.1조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다음 조건의 발생 여부를 검토한다.
- 22.4.1. 투자자의 여하한 행위 또는 투자 유형이 몽골 국가안보법¹²과 충돌하는지 여부
 - 22.4.2. 신청자가 몽골의 입법 및 확보된 사업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
 - 22.4.3. 투자가 관련 부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그 부문에서의 지배를 창출하는지 여부
 - 22.4.4. 투자가 몽골의 예산 수입, 기타 정책 및 활동에 심각하고 적대적인 영향을 주는지 여부
- 22.5. 투자 업무를 담당한 국가 중앙 행정 기구는 이 법 22.1조에 명시된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5일 이내에 결정한다.
- 22.6. 투자 업무를 담당한 국가 중앙 행정 기구는 이 법 22.5조에 명시된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내린 후 오(5) 근무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¹²몽골 국가안보법은 2010년 “정부 고시” 제36호로 공포되었다.

제7장 기타

제23조 위반자에 부과되는 책무

23.1. 투자법 위반의 경우에 판사 또는 조사 기관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행정벌을 부과할 수 있다.

23.1.1. 불법 서류를 근거로 안정화 증명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된 유죄가 인정된 담당 공무원에게는 최저 임금 수준의 25-5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그리고 법인에게서는 최저 임금 수준의 100-2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미납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불법 수입을 몰수한다.

23.1.2. 안정화 증명의 발급을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안정화 증명을 발급하거나 안정화 증명을 위법하게 무효로 한 경우, 유죄가 인정된 공무원에게 최저 월 임금 수준의 10-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23.1.3. 투자자가 이 법 7.2.1-7.2.5 및 7.2.8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 관할 당국은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제24조 법률의 발효

24.1. 이 법은 2013년 11월 1일 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잔다후 영흐볼드

몽골 국회의장

“ 본 번역본을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영문 번역본을 www.mongolembassy.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2011년 10월 6일

울란바토르시



회사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1. 이 법은 회사의 설립, 등록, 변경과 회사의 경영진, 조직, 감사제도, 주주의 권리 및 의무 부여, 폐업 등에 관련된 상호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 2.1. 이 법 및 다른 몽골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몽골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회사는 자산형태, 자산 및 생산 규모, 내부 구조에 상관없이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 2.2. 은행, 금융, 보험, 증권에 관련된 회사의 설립 및 특별 영업에 관련된 문제는 다른 관련 법령에서, 공통된 문제는 이 법으로 규정한다.
- 2.3. 국영기업이 민영화되어 설립된 회사의 영업은 이 법에서, 이의 최초 설립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 및 지방 재산법으로 각각 규정한다.
- 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이 투자된 회사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규정은 국가 및 지방 재산법으로 규정, 이사회 독립 위원 선출, 경영진 선택,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 비서실장 및 이들 관련 관계는 이 법으로 규정한다.
- 2.5. 국영기업을 회사 형태로 변경하여 재구성하여 설립한 국영회사의 영업은 이 법으로 규정한다.
- 2.6. 이 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국영기업의 경우 국가를 대표하여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의 투자된 회사의 경우 그 소유자는 지방의회가 될 것이며, 이들을 대표하여 주주는

정부 및 지방의회에서 권한을 인계 받은 자가 될 수 있다.

- 2.7 회사 이외의 형태로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법인의 설립 및 그 영업에 관련된 관계는 다른 관계 법령으로 규정한다.

제2장 회사의 법적지위

제3조 회사의 형태

- 3.1. 주주가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주식으로 나누어 독립된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고 기본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는 법인을 회사라 한다.
- 3.2. 주식은 회사에 대한 소유 지분률을 나타내며, 회사의 자산에 대하여 각각의 소유 지분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3.3. 주주의 권리는 이 법 및 회사 정관으로 정해진다. 주주는 이익배당, 주주총회 참석 및 투표권, 회사 청산 후에 잔여 자산의 매각에 따른 소득을 배당 받을 권리를 가진다.
- 3.4. 회사는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의 형태가 있다.
- 3.5. 유한책임회사란 주주의 투자금액이 주식으로 나누어지며, 이 주식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회사정관에 의해 제한되어 있는 회사를 말한다.
- 3.6. 주식회사는 개방 및 폐쇄 형태를 가진다.
- 3.7. “개방형 주식회사”란 주주의 투자금액이 주식으로 나누어지며 그 주식이 증권거래기관에 등록되며, 공공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회사를 말한다.
- 3.8. “폐쇄형 주식회사”란 주주의 투자금액이 주식으로 나누어지며 그 주식이 증권거래기관에 등록되며, 증권거래기관 이외의 시장에서 폐쇄형태로 거래되는 회사를 말한다.
- 3.9. 자본 투자 재단의 특허를 가진 법인은 특별 목적의 회사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형태의 회사의 영업 특징과 관련 관계는 자본투자재단법으로 규정되고, 법률로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10월 3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제4조 주식회사

- 4.1. 법률로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다른 주주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4.2.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증권거래기관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을 통해 양도할 경우 주주 등록 관리 기관에 등록시킬 의무가 있다.
- 4.3. 회사정관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으면 개방형 주식회사는 개방적 또는 폐쇄적으로 주문을 받아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4.4. 개방형 주식회사의 폐쇄적 주문으로 추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는 자는 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리 가진다.
- 4.5.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호 합의에 따라 주식 처분 권리를 상호 제한하는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5조 유한책임회사

- 5.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주주수는 50명 미만으로 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5.2. 유한책임회사는 주식, 주식 매입 증서 및 주식으로 전환되는 기타 유가증권을 오직 폐쇄적 주문에 의해 발행해야 하며, 이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은 개방적 및 폐쇄적 주문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5.3.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다른 주주가 매각하려는 주식, 주식 매입 증서 및 주식으로 전환되는 기타 유가증권을 제3자에게 제시한 가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비율에 따라 이 법령과 회사정관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 5.4. 주식 매각 의사를 밝힌 주주는 그의사를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는 다른 주주에게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사를 통지해야 한다.
- 5.5.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통지서에는 매각할 주식 종류, 개수, 매각 가격,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개수, 매입 기간, 규정을 정해야 한다.
- 5.6. 매입 우선권을 가진 주주는 매입의사를 회사에 정해진 기간 내

- 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5.7. 이 조 제 6항 규정된 통지서에 주식 매입자의 부(모)의 성명, 및 본인 성명, 거주 주소, 매입 주식 개수 등을 지적하여 결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5.8.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조 제 3항에 따라 주주는 기타 주주의 주식에 대한 우선권 전체나 일부를 행사하거나 우선권 전체나 일부를 기타 주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
 - 5.9.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조 제 3항에서의 우선권을 주주가 정한 기간 내에 모두 행사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 양도할 것이며 회사는 본 우선권을 행사할 여부 의사를 이 조 4항 통지서상 기간 만료 후 영업일 5일 이내 밝혀야 한다.
 - 5.10. 이 조 제3항, 제5항에서 정하는 자가 우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 매각의사를 밝힌 주주는 통지서에 기재된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5.11. 유한책임회사 주주는 회사의 모든 정보와 재정관련 및 기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 종속회사 및 자회사, 회사 그룹

- 6.1. 회사 일반 주식의 20~50%를 타 회사(모회사)가 단독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 회사는 종속회사라 한다.
- 6.2. 종속회사는 독립적으로 결산 장부를 가진 법인이다.
- 6.3. 회사 일반 주식의 50% 이상을 타 회사(모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본 회사는 자회사라 한다.
- 6.4. 자회사는 독립적으로 결산 장부를 가지고, 모회사는 자회사와 통합된 결산 장부를 가지게 한다.
- 6.5. 종속회사와 자회사는 모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기타 법령 및 양자가 체결한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회사는 종속회사 및 자회사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6.6. 모회사의 결정 때문에 자회사가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모회사가 부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한다.
- 6.7. 자회사의 손해가 모회사의 결정 때문인 것으로 간주될 경우 자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에 생긴 손해와 관련하여 모회사를 대상으로

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6.8.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가 제 3 회사의 종속회사나 자회사일 경우 해당 모회사의 종속회사나 자회사는 제 3회사에 동일하게 소속된다. 이러한 원칙은 연속되는 관계에 적용된다
- 6.9. 종속회사와 자회사는 지배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6.10. 이 조 제 9항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소유하는 모회사 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며 주주총회의 정족수 계산시에 발행된 주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6.11. 이 조 제 9항 규정에 따라 소유하는 주식을 제 3자한테 양도할 경우 주식 소유권이 모두 양도된다.
- 6.12. 모회사는 영업 활동 협력의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 이외의 경우가 아닌 한, 종속회사와 자회사의 영업에 오직 소유한 주식에 따른 권리로 참여한다.
- 6.13. 정부와 기타 법인이 어떠한 회사에 투자를 한 대가로 주식 소유권을 행사할 때에는 규정상 권리 자로부터 임명된 대표인을 통하여 실행할 것이며 대표인은 관련법 및 회사정관상의 권리자의 지시를 바탕으로 할 것이며 본 지시와 다를 경우 대표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게 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 6.14. 모회사와 이 조 제1항, 제 3항, 제 8항에 규정된 계열사들, 단독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주식 지배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 관리 결정이 가능한 회사들을 통틀어 회사 그룹이라 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6.15. 동일 모회사의 종속회사나 자회사들, 한 법인이 단독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주식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회사들을 병행 회사라 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6.16. 회사 그룹에 속하는 회사는 모회사, 종속회사, 자회사, 병행 회사 상관없이 모두를 그룹 참여 회사라 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제7조 회사의 지사 및 대표부

- 7.1. 지사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본사의 기본 방향의 일부나 전체의 대표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7.2. 대표부는 본사가 위치한 지역 외의 다른 장소에 위치하고 본사의 법적이익 보호, 본사를 대신한 계약 체결 등의 활동을 한다.
- 7.3. 회사는 몽골 및 해외에 지사 및 대표부를 개설할 수 있다.
- 7.4.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사 및 대표부의 개설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 7.5. 외국 법인의 몽골 내의 지사 및 대표부는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7.6.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외 지사 및 대표부의 개설에 관련된 문제는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 7.7. 지사 및 대표부는 법인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본사에서 승인한 규정에 따라 활동 해야 한다.
- 7.8. 지사 및 대표부의 자산은 본사 장부에 등록해야 한다.
- 7.9. 지사 및 대표부는 본사를 대표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 7.10. 본사는 지사 및 대표부의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7.1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사 및 대표부의 책임자를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에서 임명해야 한다. 책임자는 본사의 위임 사항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제8조 회사 활동 및 기간

- 8.1. 회사는 법률에서 금지되지 않은 모든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영업 활동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 8.2. 회사는 영업 범위를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
- 8.3. 이 조 제 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회사가 영업범위를 제한한 것은 회사의 영업 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 회사가 가지는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 8.4. 특별 면허가 요구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법률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서면으로 발급한 특별 면허에 따라 영업할 수 있다.
- 8.5.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 영업 기간은 무기한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회사 및 주주의 책임

- 9.1. 회사의 자산은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구성되며 회사는 이러한 총 자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9.2. 회사는 주주가 가지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9.3. 주주는 회사가 가지는 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단지 소유한 주식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
- 9.4. 단독 또는 목적이 동일한 자와 공동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또는 기타 다른 형태로 회사의 영업에 대하여 지시할 수 있는 권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 사유자의 본인 부담으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 9.5.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유무형의 자산을 자신의 유무형의 자산과 분명한 구별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 주주는 자신의 모든 유무형의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하여 이중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0조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 10.1. 회사는 고유의 상호를 가져야 하고 상호 뒤에 주식회사(XK) 또는 유한책임회사(XXK)라는 회사의 형태를 약어로서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
- 10.2. 회사의 상호는 다른 회사 및 사업체와 중복될 수 없으며 상호를 부여하는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해당 상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 10.3. 회사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상징 및 상표를 가질 수 있다.
- 10.4. 회사의 소재지, 우편번호는 본사가 위치한 주소로 표기해야 한다.
- 10.5. 소재지 변경은 법인등록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제3장 회사의 설립

제11조 회사의 설립

- 11.1. 회사는 신규 설립, 법인 변경(통합, 합병, 분리, 독립,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재 설립할 수 있다.
- 11.2. 회사의 민영화에 따라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 발기인의 의무는 국가가 지니며 주식 주문, 매입, 양도 등은 국가 및 지방재산법으로 조정한다.

제12조 회사의 설립 발기인

- 12.1. 회사의 설립발기인은 몽골국민, 법인이 될 수 있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면 외국인, 외국법인, 무국적자도 회사의 설립발기인이 될 수 있다.
- 12.2. 개인, 법인, 외국인, 외국 법인, 무국적자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12.3. 회사는 설립 발기인이 1인인 경우에도 무방하다.
- 12.4. 회사의 설립 발기인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12.5. 국가 및 국가기관은 아래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 발기인 및 주주가 될 수 있다.
 - 12.5.1.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신규 설립한 회사
 - 12.5.2. 국영기업을 회사 형태로 변경하여 설립한 국영회사
 - 12.5.3. 법률에 따라 파산되는 회사가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받은 회사. 이 경우에 국가는 이의 주식을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 12.5.4. 외국 법인과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
 - 12.5.5.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경우
- 12.6. 회사의 설립 및 등록비용은 회사의 설립 발기인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
- 12.7. 설립총회 또는 이사회(발기인이 1인인 경우에 발기인)의 결정으로 본 조의 제6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수 있다.
- 12.8. 이 조 제6항 제7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사의 설립비용을 지불한 자는 다른 발기인이 소유했거나 소유하기로 주문한 주식 비율에 따라 상기 비용을 청구하거나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 12.9. 회사 설립 발기인 및 주주는 다른 회사의 발기인 및 주주가 되어도 무방하다.

제13조 신규 설립

- 13.1. 회사 설립발기인의 총회 결정으로 회사를 설립한다.
- 13.2. 회사를 1인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회사 설립 결정을 내린다.
- 13.3. 2인 이상의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서에는 발기인의 합작업무규정, 발기인의 권리 및 의무, 발기인이 매입할 주식 및 유가증권의 등급, 종류, 수량, 가격, 매입기간 등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3.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계약은 회사 설립 준비 서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 13.5. 소량 주식 주문 방법(이하 “폐쇄형 주문”이라 한다)을 통해 폐쇄형 회사를 신규 설립할 때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13.5.1. 폐쇄형 주문은 주문서에 의거하여 받아야 하며 주문서에는 주문자의 부(모)의 성명 및 본인 성명, 주문한 주식 종류, 등급, 수량, 가격, 주문일 등을 기재해야 하고 주문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서명 함으로서 주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 13.5.2. 주문한 주식량의 대금은 주문 종료일 후, 영업일30일 이내에 지불되어야 한다.
- 13.6. 만약 어떤 사유로 회사가 설립되지 못한 경우 주문자가 선납한 대금은 설립 총회 개최일 후, 영업일 14일 이내에 발기인이 보상해야 한다.

제14조 회사의 설립총회

- 14.1. 회사의 설립총회는 발기인이 공고 및 소집해야 한다.
- 14.2. 발기인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기인 개인은 설립총회에서 각자 동등한 투표권을 갖는다.
- 14.3. 설립총회에서 아래의 문제를 의결해야 한다.
- 14.3.1. 회사 설립에 관련한 결정
- 14.3.2. 회사 정관
- 14.3.3. 주식 수, 발행할 주식 및 발기인이 매입할 가격

- 14.3.4. 이사회 설치 경우에는 이사 선출, 이사의 급여 및 상여금의 규모
- 14.3.5. 회사 설립 비용의 보상 규정
- 14.3.6. 주문한 주식 미납금의 완납 기간
- 14.4. 발기인 간에 체결한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모든 발기인이 참석함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자의 2/3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14.5. 회의의 의장은 발기인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 14.6. 발기인이 현금이 아닌 형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 제시하는 현물 가격에 대해,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기관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평가를 받아 설립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 14.7. 현금이 아닌 형태로 투자되는 자산 가치에 대해서는 설립총회 참석자의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한다.

제15조 회사 국가 등록

- 15.1. 회사 설립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회사의 국가 등록을 위해 관련 서류를 등록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 15.2. 회사 등록과 관련된 관계는 법으로 조정한다.

제16조 회사정관

- 16.1. 회사정관은 회사 설립에 대한 기본 서류이다.
- 16.2. 회사정관은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16.2.1. 회사의 정식상호 및 약식 명칭, 회사의 형태를 상징하는 약칭
 - 16.2.2. 회사가 공고한 일반 주식 수량, 종류, 액면가, 투자자산규모
 - 16.2.3. 정관으로 우선주를 공고한 경우에 우선주 수량, 우선주 소유자의 권리
 - 16.2.4. 이사회 설치 경우에는 이사회 인원수
 - 16.2.5. 주주총회, 이사회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그 밖의 권리
 - 16.2.6. 회사의 기본 영업 방향
 - 16.2.7. 이 법 규정으로 반드시 정관에 명시해야 될 그 밖의 사항
- 16.3. 회사정관은 민법 및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16.4. 회사는 주주의 요구로 회사정관, 정관개정사항을 주주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7조 회사정관 개정사항 및 새로운 정관의 승인 및 등록

- 17.1. 회사정관의 개정은 주주총회에서 해당 문제에 투표권이 있는 주주 2/3의 찬성으로 승인 해야 한다.
- 17.2. 회사정관의 개정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또는 제한된 경우에 반대 의사의 표시로 투표했거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는 이 법 제54조, 제55조 규정에 따라 소유한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17.3. 개정된 회사정관 또는 새로운 정관의 등록은 아래의 서류에 따라야 한다.
 - 17.3.1. 개정된 회사정관 등록 신청서, 신청서에는 회사 책임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17.3.2. 회사정관의 개정 및 새로운 정관의 승인을 위한 주주의 승인 결정 및 개정정관 또는 새로운 정관의 전문
 - 17.3.3. 회사정관의 복사본
 - 17.3.4. 등록비 지불 확인 서류
- 17.4. 회사정관의 개정 결정이 있는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 17.5. 등록기관은 이 조 제3항 규정의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회사정관 개정 및 새로운 정관의 등록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17.6. 회사정관 개정 및 새로운 정관의 등록 신청이 이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기관은 이의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 17.7. 등록기관은 이 조 제6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경우 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영업일 3일 이내에 거부 사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 17.8. 이 조 제6항에 명시된 등록기관의 이러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회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17.9. 회사정관의 개정 사항은 국가등록기관에 등록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제4장 회사의 재 설립, 폐업, 채무의 주식으로 교환

제18조 회사의 재 설립

- 18.1. 주주총회 의결로 이 법 규정에 따라 통합, 합병, 분리, 독립, 변경 등의 방법으로 회사를 재 설립할 수 있다.
- 18.2. 법령에 규정 되었다면 법원에서 회사의 분리 및 독립 명령에 관련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 18.3. 합병을 제외한 기타 방법으로 재 설립하는 경우에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국가에 등록 함으로 회사가 재 설립된 것으로 한다.
- 18.4. 합병으로 재 설립되는 경우에 합병되는 회사를 국가등록에서 말소해야 하고 만일 합병하는 회사의 정관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국가에 등록함으로써 회사가 재 설립된 것으로 한다.
- 18.5. 재 설립 결정이 있는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재 설립된 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거래자에게 재설립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18.5.1. 재 설립 방법, 형태
 - 18.5.2. 재 설립 및 구조 조정으로 정리한 회사의 소재지 및 상호
 - 18.5.3. 재 설립 결정 날짜
 - 18.5.4. 분리 및 독립의 형태로 재 설립된 경우에는 분리되는 장부
- 18.6. 주식회사는 재 설립 및 폐업 결정이 있는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재정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통지해야 한다.
- 18.7. 재정관리위원회는 주식 회사의 재 설립 및 폐업 결정에 대해 증권시장법 관련 조항에 의거 승인한 경우 국가등록기관에 등록시켜야 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제19조 회사의 통합

- 19.1.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자신의 모든 권리, 의무, 책임을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회사 통합이라고 한다.
- 19.2. 통합하는 회사는 각각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에서 회사의 통합에 따른 재 설립에 대한 결의안, 조건, 규칙 등을 규정한 계약서, 새로운 회사의 정관, 각 회사의 유가증권을 새로운 회사의 유가증권 또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규칙 등을 주주 총회에 각각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 19.3. 회사 통합에 관련한 결의안 및 계약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한 유효 투표권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19.4. 계약서에는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일정을 명시해야 한다.
- 19.5. 주주총회에서 회사정관을 승인해야 하고 만약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해야 한다.
- 19.6.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의 투표권은 이 조 제 2항 계약으로 정해진 전환된 투표권과 동일하다.

제20조 회사의 합병

- 20.1. 회사 영업을 중단하고 회사의 권리, 의무, 책임을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회사 합병이라고 한다.
- 20.2. 합병되는 회사와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에서는 회사 합병 안 및 합병 계약서를 주주총회에 각각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 20.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합병 계약서에는 합병조건 및 규정과 합병되는 회사의 유가증권, 합병하는 회사의 유가증권, 기타 자산을 전환하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20.4. 회사가 합병으로 재 설립하는 것에 관련한 결의안은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주주총회에 참석한 유효 투표권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20.5. 합병되는 회사의 보통 주 75%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과 관련한 회사정관의 수정이 필요 없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합병하는 회사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 총회)에서 합병 결의안 및 합병 규정을 승인해야 한다.

제21조 회사의 분리

- 21.1. 회사의 영업을 중단하여 회사의 권리, 의무, 책임을 새로이 설립되는 2개 이상의 회사에 완전 양도하는 것을 회사의 분리라 한다.
- 21.2. 회사 분리 의결 안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분리되는 회사의 보통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 자산이 분리되는 비율에 따라 새롭게 설립된 회사의 보통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 21.3. 이사회는(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경영진)이 견적 대차대조표를 각 새로운 회사 및 분리된 회사 의 주주 총회내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분리 회사의 유가증권이나 자산을 새 회사의 유가증권이나 자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발의하며, 해당 결의안 및 절차는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21.4.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회사정관을 승인해야 하고 만약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도 선출해야 한다.
- 21.5.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분리를 통한 재 설립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 21.6. 회사 분리 시로부터 이의 권리 및 의무는 견적 대차대조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로 이전된다.
- 21.7. 회사 분리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분리로 인해 새롭게 설립되는 다른 회사가 분리되는 회사의 현재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2조 회사의 독립

- 22.1. 회사 영업의 중단 없이 회사 일부의 권리, 의무, 책임을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에 양도하는 것을 회사의 독립이라 한다.
- 22.2. 회사의 독립에 따라 재 설립되는 회사는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가 된다.
- 22.3. 새로이 조직되는 회사의 이사회는(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경영진) 회사 독립에 수반하는 조건, 절차, 분리 회사 및 새 회사의 견적 대차대조표 및 새로운 회사 설립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한다.
- 22.4.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는 새로운 회사의 정관을 승인해야 하고 만약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사회도 선출해야 한다.
- 22.5. 회사의 독립으로 변경되는 회사는 자신의 모든 채무를 부담한다.

- 22.6. 변경되는 회사를 대신하여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새롭게 독립적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견적 대차대조표에 이에 관련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22.7. 이 조 제6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변경되는 회사는 새롭게 설립된 회사에 양도된 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22.8. 회사를 독립시키는 방법으로 새롭게 설립된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전체 또는 일부는 이 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바를 근거로 재조직된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형태로 양도된다.

제23조 회사의 변경

- 23.1. 주식회사는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 23.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변경 안은 회사의 이사 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경영진)가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고 이 문제에 대해 투표권이 있는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23.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회사의 변경 안에는 변경 목적, 조건, 규칙, 주식 전환 방법, 정산, 변경 기간, 주주총회 일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 23.4.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형태로 설립된 회사의 주주총회를 법령 규정에 따라 공고 및 소집하여 회사정관을 승인하고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회사 변경 안에 명시해야 한다.
- 23.5. 회사의 변경에 따라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에 양도해야 한다.
- 23.6. 회사의 변경에 따라 상호 및 회사정관 관련된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제24조 회사 변경에 관련된 주주의 권리

- 24.1. 통합, 합병 등으로 재 설립되는 회사의 투표권이 있는 주주가 재 설립에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이 법 제54조, 제55조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24.2. 회사에 매도하기로 합의된 주주의 주식은 회사의 재조직 결의안

- 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다.
- 24.3. 이 조 제2항 규정의 경우에 주주는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요구할 권리만 가지고 다른 주식 소유와 관련된 권리는 상실한다.
- 24.4. 소유 지분에 대하여 회사 매입을 요구하지 않은 주주의 주식은 회사를 변경하여 재 설립하는 결의안에 따라 전환된다.

제25조 회사 채무의 주식 교환

- 25.1. 회사 주식을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 및 채무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채무의 주식 교환이라 말한다.
- 25.2. 채권자 및 기타 거래인과 체결한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의 채무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 주식을 받을 해당 채권자 및 거래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5.3.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경영진)는 회사 채무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안건을 주주 총회에 상정해야 하며 이 문제로 투표권이 있는 주주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25.4. 채무의 주식 교환하는 안건에는 교환되는 채무, 발행할 주식 규모, 가격, 목적, 실행 조건, 규칙, 회사정관 변경 등을 명시해야 한다.
- 25.5. 주식, 주식매입권 및 주식 전환이 가능한 유가증권을 전환 조건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 회사 채무를 주식으로 교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25.6. 회사 채무의 주식 교환 문제에 대해 반대하거나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는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6조 폐업

- 26.1. 민법,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정 및 법원의 명령으로 회사를 폐업할 수 있다.
- 26.2. 법원은 아래의 경우 폐업을 허가해야 한다.
 - 26.2.1. 파산된 경우
 - 26.2.2. 투자자가 1인도 남지 않은 경우
 - 26.2.3.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근거가 있는 경우
- 26.3. 주주총회의 의결에 따라 폐업되는 회사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경영진)는 폐업위원회를 구성하고 폐업기간, 규정, 채권

자의 채권을 변제한 후, 회사의 잔여 자산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규정 등을 명시한 폐업 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26.4. 폐업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당 회사의 경영진의 모든 권리는 종료되어 폐업위원회에야 양도되며 폐업위원회는 폐업되는 회사를 대표하여 법원의 재판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 26.5. 폐업위원회는 업무 진행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관련 회사 및 채권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 되었다면 법령 규정에 따라 이의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 26.6. 재정관리위원회는 이 조 제2항 규정을 근거로 주식회사 폐업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회사의 폐업에 따른 채무의 변제

- 27.1. 폐업에 따른 채무 변제는 민법, 이 법 및 기타 법령 규정에 따른다.
- 27.2. 폐업위원회는 폐업, 채무 청구 규정 및 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채무 청구 기간은 폐업을 공고한 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해야 한다.
- 27.3. 폐업위원회는 폐업, 채무 청구 규정 및 기간을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27.4. 만약 폐업 결정 시에 회사에 아무런 채무가 없다면 폐업 공고를 하지 않고 폐업할 수 있다.
- 27.5. 이 조 제4항의 경우 회사의 자산은 이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된다.
- 27.6. 채무 청구 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위원회는 폐업되는 회사의 자산 상태 및 채권자가 요구한 채무 청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회사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승인해야 한다.
- 27.7. 폐업위원회는 청구된 채무의 변제 방법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폐업 결산서가 승인되기 이전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27.8. 만약 폐업되는 회사의 현금 자산이 채무 변제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 폐업위원회는 회사의 기타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
- 27.9. 이 조 제8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업되는 회사의 자산매각을 이 법 제12장 규정에 따라 이해가 상충하는 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 이행 규칙에 따라 경매해야 한다.

- 27.10. 폐업위원회는 폐업되는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할 채무를 폐업 결산서를 승인한 날부터 폐업 결산서에 의거하여 민법 및 이 법 규정의 순서에 따라 변제해야 한다.
- 27.11. 폐업위원회는 채무 변제 통지서를 폐업결정자에게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종료 결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 27.12. 이 조 제11항에 명시된 종료 결산서가 발행된 후, 법원이 특별히 별도로 결정한 것이 없다면 임의적인 청구 사항은 어떤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28조 폐업되는 회사의 잔여 자산의 분배

- 28.1. 폐업위원회는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한 후에 잔여 재산을 매각하고 그 수입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 28.1.1. 우선주로 할당되지 않은 배당 및 우선주의 폐업가격 또한 이 법 제53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회사가 매입하는 우선주의 대금
 - 28.1.2. 이 법 제53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회사가 매입하는 보통주의 대금
- 28.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잔여 재산은 매각한 후의 수익은 회사의 보통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 수량과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29조 폐업의 종료

- 29.1. 회사의 모든 자산을 분배한 다음에 폐업위원회는 회사가 폐업 절차에 따라 폐업 되었음을 국가등록기관에 통보하고 폐업 결산서 1부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29.2. 등록기관이 회사를 등록대장에서 말소함으로써 폐업되었다고 간주한다. 등록기관은 이에 대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5장 회사 자본금, 주식, 기타 유가증권

제30조 회사의 자본금

- 30.1. 회사에서 주주들에게 발행한 총 우선주 및 보통주의 액면가 총액을 회사의 자본금이라고 하며, 회사 자본금에는 회사 수권주와 재 매입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 30.2. 회사 결산서에 반영된 유무형의 총액에서 채무를 뺀 잔여 부분을 회사의 자본금이라 한다.
- 30.3. 회사에 투자된 자산 규모는 회사의 자본금 규모 이상일 수는 없다.
- 30.4.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 설립 투자 자본금의 최저액을 제한 하는 규정은 없다.
- 30.5. 회사 투자 자본금 규모는 회사정관에서 정해야 한다.

제31조 최저 자본금 규모 수정

- 31.1. 회사 자본금 규모의 변경 때 마다 회사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 31.2. 회사 자본금 규모는 주주총회 결의안에 의거 아래 형태로 수정할 수 있다.
 - 31.2.1. 주식 단가를 인상하거나 감소시키다
 - 31.2.2. 추가 주식 발행하여 인상
 - 31.2.3. 발행 주식을 재매입하여 무효화하는 방법으로 감소시키다
- 31.3.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에 반영된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투자 자본금 규모보다 감소된 경우 결산서 작성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투자 자본금 규모를 변경, 회사 자본금 확대 또는 폐업 문제를 의결해야 한다.
- 31.4. 경영진은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상황이 발생한 것과 문제 해결 정보를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채권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진다.
- 31.5. 이 조 3항에 명시된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하지 않은 경우 회사 소유자와 채권자, 주식회사의 경우 재정관리위원회에서 회사 폐업판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32조 회사의 주식

- 32.1. 유가증권법 규정에 따라 주식은 회사의 자산 투자 사실, 이에 따른 투표권의 행사, 이익의 배당, 회사 폐업 후에 잔여 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 배당 등의 권리를 각각 증명한다.
- 32.2.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뉜다.
- 32.3. 회사는 보통주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우선주의 발행은 회사의 선택에 따른다.
- 32.4. 주식은 회사정관에 따라 액면가를 산정해야 하고, 회사의 동일한 종류의 주식 액면가는 같아야 한다.
- 32.5. 액면가가 있는 주식을 그 가격 이하로의 발행을 금지한다.
- 32.6.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식 별로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 32.7. 주식의 투표권은 나눌 수 없으며 소유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33조 회사의 수권주 및 발행주

- 33.1. 회사가 발행할 보통주 및 우선주의 수량은 회사정관으로 정하며 이를 수권주라 한다.
- 33.2. 수권주식 중에서 주주가 매입하여 소유한 부분을 유통주라 한다.
- 33.3. 만약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수권주식 종류별로 발행할 주식의 수량, 기간, 조건은 이사회(이사 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정해야 한다.
- 33.4. 발행한 주식의 수량을 회사 결산서에 종류별로 반영해야 한다.
- 33.5. 어떤 종류의 수권주의 수량은 해당 종류의 주식 발행 수량 및 해당 주식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의 전환에 요구되는 주식 수량의 합계보다 많아야 한다.
- 33.6.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회사가 다시 매입하거나 기타 종류의 유가증권 및 자산으로 전환될 때까지 유통된다.
- 33.7. 회사가 자사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경우에 이의 주식은 공개 되었으나 발행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한다.
- 33.8.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 조 제7항에 명시된 주식을 다시 발행 할 수 있다.

제34조 회사 일반주의 소유 주주의 권리

- 34.1. 회사 일반주의 소유 주주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34.1.1.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논의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소유 주식에 비례한 투표 행사 권리
 - 34.1.2.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끝난 후, 회사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 회)에서 지정한 규모로 이익을 배당 받을 권리
 - 34.1.3. 회사 폐업 시에 이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잔여 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에서 배당 받을 권리
- 34.2. 주식회사의 보통주 소유 주주는 이 법 제38조 및 회사정관에 따라 회사가 추가적으로 발행할 주식 및 이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 34.3.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한책임회사의 보통주 소유 주주는 주식에 해당되는 기타 유가증권을 이 조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를 가진다.
- 34.4. 회사정관으로 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의 수량을 제한할 수 없다.
- 34.5. 보통주는 회사의 우선주 및 기타 유가증권으로 전환할 수 없다.
- 34.6. 주주총회에서 논의되는 일부 문제에 대해서 보통주 소유 주주의 투표권을 이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 회사의 우선주 소유 주주의 권리

- 35.1. 모든 종류의 우선주 소유 주주는 아래의 권리를 가진다.
- 35.1.1. 권한 기관에서 지정한 우선주 이익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 35.1.2. 이 법 및 회사정관 그리고 해당 종류의 우선주 발행에 대한 결정서에 명시된 문제로 주주총회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한다.
 - 35.1.3. 회사 폐업 후에 잔여 자산의 매각에 따른 수입에서 누적된 이익배당금 및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폐업 가격을 받는다.
- 35.2. 회사정관 또는 해당 종류의 우선주 발행에 대한 결정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35.2.1. 폐업 시에 지급되는 대금, 규정, 순서
 - 35.2.2. 주주총회에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규정, 우선주 1주당 할당되는 투표권

- 35.2.3.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조건
- 35.2.4. 우선주 소유 주주가 회사에 소유중인 우선주를 매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35.3. 회사는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완전히 끝낸 이후에야 매입할 의무가 있는 우선주를 매입 한 후에 보통주를 매입하거나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35.4. 이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조건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우선주에 대한 이익 배당을 정관에 명시된 금액 및 기간 내에 정산해 배당해야 한다.
- 35.5. 회사 폐업 시에 보통주 주주에게 배당되는 자산을 배당하기 전에 절차에 따라 우선주 주주에게 해당 주식의 폐업가격 및 지급되지 않은 이익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
- 35.6. 우선주 주주는 아래의 경우에 주주총회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 35.6.1. 회사정관의 개정 및 개정된 정관의 승인에 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35.6.2. 회사를 변경하여 재 설립하는 과정에서 우선주를 보통주, 기타 종류의 유가증권 또는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경우
- 35.7. 이 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우선주 주주가 투표권을 가지고 참석하는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사항을 회사정관에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로지 우선주 주주의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 35.8.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선출하기 위한 회의에 우선주 주주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투표 권을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회사정관에 명시할 수 있다.
 - 35.8.1.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주주가 이사회에 자신의 대표자를 포함하기로 회사정관 에 명시된 경우
 - 35.8.2. 우선주의 이익배당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경우

제36조 황금주

- 36.1. 정부소유 기업 또는 국가자산(state-owned)의 투자가 더 많은 회사를 민영화 함에 있어서, 국가(state)가 모든 이익을 판매하기로 한 경우,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황금주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거나 다른 권리 이외에 이 조 제2항 규정의 문제에 대하여 주주 총회,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의 결정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6.2. 황금주식이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실무 경영진의 아래의 결정사항이 국가 안보 및 사회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거부권이 행사된다.
- 36.2.1. 민영화 전의 활동 업종 변경
 - 36.2.2. 회사의 변경에 따른 재 설립 및 폐업
 - 36.2.3. 거액의 계약 체결
 - 36.2.4. 제품, 업무, 서비스 가격의 결정 및 변경
- 36.3. 이 조 제2항 규정에 따르는 거부권 행사는 정부가 시행하며 이 결정에는 거부권 행사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 36.4. 이 조 제2항 규정의 문제로 회사가 의결한 결정은 정부의 확인에 따라 유효로 된다.
- 36.5. 황금주는 제3 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
- 36.5.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황금주는 효력을 상실하고 기간 연장 할 수 없다.

제37조 주식에 포함되는 유가 증권

- 37.1. 보통주를 매입하는 권리 및 주식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의 매입권은 주식관련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며, 이들의 발행 및 매도 절차는 회사정관으로 정한다.

제38조 주식의 우선 매입 권리

- 38.1. 회사의 보통주 소유 주주는 추가 발행되는 보통주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에 대한 일정 조건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가 있다.
- 38.2. 이 법 제62조 제1항, 제3항 규정에 따른 주식의 추가 발행의 결정에는 보통주 소유 모든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수량, 가격, 주주

- 들이 매입 가능한 주식수량, 대금지급기간, 규정 등을 명시한 통지서를 주주총회 통보서에 준하는 규정대로 발송해야 한다.
- 38.3. 주주는 주식의 추가 발생 결정이 난 후, 영업일 30 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38.4.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가격은 해당 주식 시장가의 90% 이하로 할 수 없다.
 - 38.5. 이 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주주는 지정한 기간 내에 성명, 주소, 매입할 주식 수량, 가격을 지급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 38.6. 주주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리의 전체 및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 38.7.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를 제3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38.8.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참가하여 해당 문제로 투표권이 있는 주주 2/3 이상의 찬성으로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의 제한을 의결할 수 있다.

제39조 주식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

- 39.1. 회사는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여된 우선주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39.2.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 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부여된 우선주나 채권 발행 시에 주식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을 함께 발행해야 한다.
- 39.3. 주식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의 조건에는 전환되는 유가증권의 종류,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량, 전환가격,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39.4.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의 가격은 해당 보통주의 시장가격 이하로 할 수 없다.
- 39.5. 주식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 발행 시에 보통주 소유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보통주의 수량 비율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을 이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40조 매매선택권

- 40.1. 회사정관으로 승인한 경우 회사는 일정 수량의 보통주 및 우선주를 지정한 가격 및 기간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증한 매매 선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40.2. 매매 선택권에는 매매선택권 소유자가 매각 및 매입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 종류, 가격, 만기를 명시해야 한다.
- 40.3.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를 매입할 매매선택권의 가격은 해당 주식의 시장가격 이하로 할 수 없다.
- 40.4. 보통주를 매각 및 매입할 매매선택권 발행 시에 보통주 소유 주주는 자신이 소유한 보통주의 비율에 따라 이의 유가증권을 이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41조 회사의 채권

- 41.1. 회사는 자본금을 담보하여 일정기간 후에 지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환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41.2.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채권의 발행 결정은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야 한다.
- 41.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결정 안에는 채권의 규모, 종류, 기간, 발행 가격, 이자의 규모, 이자 지급 기간, 환수 가격, 그 밖의 정보를 정보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41.4. 회사는 한번에 완전히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41.5. 회사의 채권은 타 회사가 특별히 발행한 보증서와 함께 할 수 있다.
- 41.6.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지급 기간 이전에 환수할 수 있다.
- 41.7. 이 조 제6항에 명시된 결정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야 한다.

제42조 유가증권 발행 결정

- 42.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수권주식을 유통 시키는 결정 및 정관에 명시된 기타 종류의 유가증권, 채권의 발행 결정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에서 해야 한다. 결정안에는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발행기간,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 42.2. 회사는 수권주식 보통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발행할 의무가 있다.
- 42.3. 우선주는 공개한 규모 또는 일부분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발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42.4. 대중에게 매각을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및 주식회사가 추가 발행하는 주식은 유가증권 법에 따라 재정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43조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의 가격 결정

- 43.1.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가격을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 43.1.1. 주식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 및 매매선택권의 발행 시에 가격을 정한 경우
 - 43.1.2. 주식 매입권리증서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 43.1.3. 회사 설립 서류에 주식가격을 정한 경우
 - 43.1.4.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 다른 경우를 명시한 경우

제44조 유가증권의 대금

- 44.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발행한 유가증권의 대금은 현금, 유가증권, 자산 및 재산권의 형태로 정산할 수 있다.
- 44.2. 회사 설립을 위해 발행한 주식 대금은 회사 등록 전에 정산을 종료해야 한다.
- 44.3. 추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대금은 이를 매입하는 때에 완전히 정산을 종료해야 한다.
- 44.4.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유가증권의 대금을 아래의 경우에 현금이 아닌 형태로 할 수 있다.

- 44.4.1. 회사 설립 시에 주식대금을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불이 가능한 것으로 본 법 제13조 제3항에 명시된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 44.4.2. 추가 발행 중인 유가증권의 대금을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불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기관의 의결 안에 명시한 경우
- 44.5. 회사 설립 시에 주식대금을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불한다면 이의 가치 평가는 설립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한다.
- 44.6. 유가증권의 추가 발행 시에 이의 대금을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불하기로 한 경우의 가치평가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최종 결정해야 한다.
- 44.7.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사회가 가치 평가는 전문 감정 평가기관의 평가서를 근거로 해야 한다.

제45조 유가증권 소유자 등록

- 45.1. 회사는 유가증권 소유자의 등록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증명서 발행시에는, 이의 보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45.2. 회사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유가증권 보관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5.3. 회사의 유가증권 소유자의 등록 명부에는 해당 유가증권 소유자의 부모 및 본인 성명, 거주 주소, 소유 중인 유가증권의 종류, 규모 및 유가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된 유가증권 수량, 부(모) 및 양수인의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 45.4. 회사의 유가증권 소유자는 자신의 성명과 거주 주소 및 소유 중인 유가증권의 수량을 등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등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45.5.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등록이 완료되면 유가증권 소유권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 45.6. 주주는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과 주소변경 내용을 즉시 유가증권 소유자 등록 명부 작성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들에게 이 법, 회사정관 및 재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정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 45.7. 회사 유가증권 소유자의 등록 명부 작성자는 등록된 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 명부를 복사하여 제공하는 형식으로 유가증권 소유를 증명해야 한다. 복사본은 유가증권과는 무관하다.

- 45.8. 회사는 유가증권을 무형으로 발행할 경우에 이의 유가증권 소유자에게 권리를 증명한 서류(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제6장 이익배당 및 회사 자산의 양도

제46조 이익배당

- 46.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익배당의 결정은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익의 배당에 각 주식에 해당되는 이익의 규모, 이익 배당 수령권이 있는 주주의 명단을 작성하여 등록일 및 이익 배당 지급을 정한다.
- 46.2. 이사회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대하여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 46.3. 이익배당 수령권이 있는 주주를 확정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이익배당 결정이 있는 날짜로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 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 결정이 있는 후, 특별히 일자를 지정하여 등록 일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주주에게 신속하게 공시 및 통지해야 한다.
- 46.4. 동일 주식에는 동일한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
- 46.5. 이사회는 연말결산 후에 50일 이내로 이익배당 여부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 46.6. 이사회는 이익배당 거부를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정기 주주총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 46.7. 이익배당은 현금 형태로 배당해야 하며,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익배당금은 현금이나 자산 또는 회사 및 제3자의 유가증권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 46.8. 이익배당은 세금납부 후의 순이익에서 배당한다.
- 46.9. 우선주에 해당하는 이익배당은 특별히 구성된 기금에서 배당할 수 있다.
- 46.10. 회사가 이익배당을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안의 명시된 기간에 이익배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6.11. 회사가 이익배당을 이 조 제10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주주의 청구로 연체료를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된 손실은 회사 경영진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46.12. 이 조 제10항에 규정된 기간에 이익배당을 지불 받지 못한 것이 해당 주주의 이익배당 권리를 부인하거나 해당 회사 이익배당을

지불 안 할 근거가 안 된다.

- 46.13. 이익배당을 지불 받지 않은 주주의 이익배당을 주주에게 지불할 채권으로 전환하여 결산서에 주주의 성명으로 특별히 등록해야 하며, 회사는 주주의 최초 요구에 따라 이익배당을 지불할 의무를 가진다.
- 46.14. 주식회사는 이익배당이 끝난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이익배당 보고서를 제시하고, 재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에 재정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 제출한다.
- 46.15. 이사회는 정기주주총회에 이익배당 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46.16. 주주는 이익배당 권리가 있는 주주명단 작성일부터 이익배당 지불일까지 기간내에 자신이 소유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익배당 권리는 관계자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식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간다.

제47조 이익배당의 조건

- 47.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보통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
 - 47.1.1. 이익배당이 끝난 후, 회사의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 47.1.2. 이익배당이 끝난 후,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이 법 제30조 제 5항 규정의 최저치, 우선주에 대한 지급되지 않은 이익배당, 우선주의 폐업가격 등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
 - 47.1.3. 회사가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을 모두 매입한 경우
- 47.2. 회사는 매입한 자신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배당 하지 않을 수 있다.
- 47.3.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해야 한다.
 - 47.3.1. 이익배당이 끝난 후, 회사의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 47.3.2. 회사가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선주를 모두 매입한 경우
- 47.4. 이익배당이 끝난 후, 회사 자본금이 25% 이상 감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익배당이 모두 끝난 날 이후의 영업일 1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자본금 규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8조 회사의 자산 처분에 대한 감사

- 48.1. 채권자의 법적인 권리의 보호를 위해 회사의 자본금이 당시 회사정관에 명시된 투자자본금 액수보다 작거나 또는 회사가 지불 능력이 없게 된 경우에 회사가 자기 자산 및 재산권을 시장 가격 이하로 매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 48.2. 이 조 제1항을 위반한 협정은 무효이다.

제7장 회사의 자사 유가증권 매입, 환수

제49조 유가 증권의 매입

- 49.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정으로 자신이 발행한 유가 증권을 소유자의 합의에 따라 매입할 수 있다.
- 49.2. 회사는 보통주를 제외한 기타 유가증권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매입할 수 있으나 보통주의 경우는 당해 년에 유통 중인 총 주식의 평균치의 25%를 초과 할 수 없다.
- 49.3. 매입한 주식을 프리미엄주이라 부른다.
- 49.4. 이사회는 자신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결정 안에 매입할 주식 개수, 가격, 대금의 지급 기간, 이용 규정 등을 명시해야 한다.
- 49.5.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주식 매도인과 합의하여 이의 대금을 현금 또는 유가증권 및 기타 자산으로 정할 수 있다.
- 49.6. 회사는 자신의 유가증권을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 중에는 이를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 49.7. 이 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정결정자는 매입한 유가증권을 회사 소유로 양도한다.
- 49.8. 이 조 제 6항 규정을 위반한 결정은 공동결정인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
- 49.9.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및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간에 체결한 계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보통주를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책정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
- 49.10.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보통주 5% 이상을 매입하는 결정은 아래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투표권이 있는 주주의 과반수로 결정할 수 있다.

- 49.10.1. 회사가 보통주를 매입하는 경우에 주주가 소유한 보통주의 수량 비율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경우
- 49.10.2. 이 법 및 회사정관에 명시된 주주의 우선권 행사의 경우
- 49.10.3.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따른 다른 조건의 경우
- 49.11. 자신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하여 주주가 소유한 보통주의 수량 비율에 따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입할 주식 수량, 매입가격, 대금지불 규정, 기간, 매각 의사를 접수 받는 최종일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모든 주주에게 30일 이내에 발송해야 한다.
- 49.12. 회사에 매각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보통주의 총수량이 회사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주식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 회사는 매각하기로 의사를 표시한 수량에 따라 주식을 더 많이 매입할 수 있으나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49.13. 매입할 주식 수량은 이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주식 매도의사를 표시한 주식의 수량 비율에 따라 매수해야 한다.
- 49.14. 자사 주식을 환수함으로써 회사의 자본금이 해당 결산서에 반영된 총 발행 주식의 액면가, 투자자금보다 작은 경우 회사는 자사 보통주를 환수할 수 없다.

제50조 자사의 우선주 환수(매입)

- 50.1. 지불능력이 충분한 경우에 회사는 환수할 의무가 있는 우선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정한 기간의 도래 이전에 매입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주주총회 공시 통보 규정에 따라 이의 유가증권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50.2. 환수할 의무가 있는 유가증권의 최초 발행 시에 환수가격을 책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
- 50.3. 환수할 의무가 있는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가 충분한 자산이 형성된 후, 유가증권을 환수하기로 이의 주주와 합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 50.4. 이 조 제3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제 57조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매입을 권유해야 한다.
- 50.5.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자사 주식을 환수함으로써 자본금이 주주 투자 자금보다 작은 경우에 회사는 자사 보통주를 환수할 수 없다.

제51조 회사의 주식 병합 및 분할

- 51.1. 회사는 2개 이상의 주식을 해당 종류의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자사 주식을 병합할 수 있다.
- 51.2. 회사는 총 발행한 보통주의 1% 이상과 동등한 정수의 주식을 병합할 수 없다.
- 51.3. 회사는 1개의 주식을 해당 종류의 새로운 2개 이상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자사 발행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 51.4. 주식의 분할 및 병합으로 발생한 주식의 잔여 부분을 회사는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정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
- 51.5. 회사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문제의 결정은 주주총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해야 한다.
- 51.6. 회사 주식의 병합 및 분할은 회사 해당 종류의 수권주식 수량의 변경사항을 회사정관에 반영하여 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 51.7. 회사 주식의 병합 및 분할은 회사가 이를 매입할 권리증서 및 이에 따라 전환되는 유가 증권을 변경할 의무를 지닌다.

제52조 자사 유가증권의 환수 조건

- 52.1. 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자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 또는 환수할 수 있다.
 - 52.1.2. 회사가 유가증권을 매입 및 환수해도 직접적인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
 - 52.1.2. 회사 마지막 결산서에 반영된 회사 자본금의 규모가 회사정관에 명시된 주주들의 투자 자금과 우선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은 이익배당, 폐업가격 등의 총액보다 많은 경우
- 52.2. 이 법 제53조 규정의 환수 의무가 있는 보통주를 환수한 다음에 회사는 기타 보통주 및 이에 따라 전환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52.3. 주식의 매입 및 환수 결과 회사 자본금이 25%이상 감소한 경우에 회사는 대금 지급일 이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자본금 규모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주주의 요구에 의한 회사의 주식 매입

- 53.1. 아래의 문제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반대 했거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주주는 소유 중인 주식을 회사가 환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3.1.1. 회사의 통합, 병합, 분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의 변경 및 재 설립
- 53.1.2. 회사가 이 법 제11장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거래의 계약을 한 경우
- 53.1.3. 주주의 권리를 제한한 회사정관의 개정이 이루어졌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회사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여 승인한 경우
- 53.1.4. 회사정관에 명시된 기타의 경우
- 53.2. 임의의 주주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들과 연대하여 회사의 보통주를 75% 이상 소유 한 경우 또한 국가자산 소유에 있었던 회사 감시를 위한 종합 주식을 민영화하여 받은 경우에 기타 보통주의 소유 주주는 회사에 주식을 환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53.3. 회사는 감시용 종합 주식을 소유한 자에게 이 조 제5항 규정의 가격으로 매입을 승인할 수 있다.
- 53.4. 이 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소유 주식을 회사가 환수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는 주주의 명단은 주식 환수 요구권이 발생한 날에 회사의 유가증권 소유자 명단에 있는 정보를 근거로 작성해야 한다.
- 53.5. 회사는 주주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발생한 당시 시장 가격으로 환수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제54조 주식 환수 요구의 시행

- 54.1. 이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주주의 주식 환수 요구를 발생시킨 결정이 있을 때마다 회사는 이에 관련한 권리 및 시행 규칙에 대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 54.2. 소유 중인 주식을 회사가 환수하는 요구를 시행할 주주는 환수에 관한 요구를 성명, 거주 주소 및 환수 요구를 하는 주식의 수량, 종류를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54.3. 주주는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주식 환수 요구를 발생시킨 결정이 있는 후 또는 이에 관련한 권리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주식

- 환수 요구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 55.3. 한 주주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들과 연대하여 회사의 보통주를 75% 이상 매입 한 경우 또한 민영화 결과로 감시용 종합 주식을 받은 경우에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실무 경영진)는 이에 관련한 주식 매입이 이루어진 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주주에게 기타 보통주 소유 주주가 회사에 주식의 환수를 요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 55.4. 주주는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통지서를 받은 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에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55.5. 회사는 이 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주식환수에 대한 주주의 요구서를 접수 받은 후, 영업일 30일 이내에 환수에 관한 정보를 통지한 통지서에 명시된 시장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또는 이의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 거절 사유를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 55.6. 회사는 이 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주식 환수의 거절 또는 회사의 환수 가격이 현실적인 시장 가격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면 주주는 상기 결정이 있는 후,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자산 및 재산권의 시장 가격 결정

- 55.1. 회사의 자산, 재산권(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 포함)의 시장 가격이라 함은 자산 및 재산권의 가격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매도할 의무가 없는 매도자, 매수할 의무가 없는 매수자가 서로 합의한 가격을 말한다.
- 55.2. 이 법 및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자산 및 재산권의 시장 가격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정한다.
- 55.3.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임의의 이사가 자산 및 재산권의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는 계약을 회사와 체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시장 가격은 해당 계약 체결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없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정해야 한다.
- 55.4. 해당 계약의 당사자 나 중재자 측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 조 제3항에서 정하는 상황하의 계약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이익이 없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정은 이 이해관계가 없다고 간주된다.
- 55.5.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결정을 주주총회에서 하는 경우에는 이러

- 한 문제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주주는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
- 55.6.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는 이 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자산 및 재산권의 시장 가격을 정할 때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 평가서를 이용할 수 있다.
- 55.7.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 이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주식을 환수하는 경우에 주식 가격을 독립적인 감정평가기관 및 공인회계사의 평가서를 기초로 책정해야 한다.
- 55.8. 공공연히 거래되는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의 시장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소의 공식 기록으로 명시된 최근 6개월 간의 평균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 55.9. 회사의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투자한 금액, 회사의 자본금, 이익 등에 관련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 매입자가 제시하는 가격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

제8장 감시용 종합주식의 매입

제56조 감시용 종합주식 및 매입

- 56.1.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1/3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회사의 감시용 종합주식이라고 한다.
- 56.2. 주식회사의 보통주로 감시용 종합주식을 단독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연대하여 매입할 의사가 있는 자는 이 법 및 유가증권 법 규정에 따라 이를 대중에게 공시하여 매입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 56.3. 감시용 종합주식의 매입 의사를 표시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이 문제로 투표권이 있는 주주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감시용 종합주식을 매입할 의사를 표시한 자에게 주주총회가 주식 매입에 대하여 어떠한 이익도 제기할 수 없다.

제57조 주주에 대한 회사 주식 매입의 의사 표시

- 57.1. 회사의 감시용 종합주식을 단독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연대하여 매입한 자의 소유 주식은 본 감시용 종합 주식보다 많은 경우 본 감시용 종합 주식을 매입한 날 이후, 영업일 60일 이내

에 기타 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해당 주식의 최근 6개월간의 시장 거래 평균 가격 이상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57.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자가 소유하는 주식은 본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 법 제 62조 제1항 9)~16) 까지에 명시된 문제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57.3.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기타 주주들의 주식 매입 의사를 주주총회 공지 규정에 의거 주주에게 통보한다.

57.4.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의사표시 규정은 재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57.5.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의사표현에는 감시용 종합주식을 매입한 자 및 동일 목적을 가지고 연대한 자의 성명, 주소, 소유 중인 주식의 수량, 매입할 가격, 매입 의사 만기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57.6. 회사의 감시용 종합주식을 매입한 자는 이 법 제57조 제1항 규정의 의사 표현에 대하여 매입 의사 만기일을 주주에게 통보한 후 30일 이상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57.7. 만약 민영화 결과로써 감시용 종합 주식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규정의 해당 사항 없이 회사가 주식을 환수하는 문제는 이 법 제53조, 제54조 규정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57.8. 재정관리위원회는 회사 감시용 종합 주식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통지서를 근거로 해당 감시용 종합 주식 소유자로부터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사 표현을 요구할 의무를 가진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제58조 감시용 종합주식 매입의 통보

58.1. 주식회사 보통주의 1/3 이상을 단독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연대하여 매입 및 소유한 자는 이러한 분량의 주식을 매입한 날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자신 및 동일 목적을 가지고 연대한 자의 성명, 주소, 각자 소유 중인 주식의 수량 등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해당 회사 및 재정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각각 제출해야 한다.

58.2.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서면은 해당 회사 및 재정관리위원회가

수령하여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제9장 회사의 경영진

제59조 주주총회

- 59.1.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이다.
- 59.2. 주주가 1인인 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권리는 주주 자신이 가진다.
- 59.3.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비정기 총회가 있다.
- 59.4. 정기주주총회는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가 회사의 회계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공고하여 소집해야 한다.
- 59.5.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기간에 정기주주총회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의 정기주주총회 소집 이외의 이 법 및 회사정관에 명시된 권한이 종료된다.
- 59.6.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의 권한이 종료된 이후에 체결된 계약과 계약은 무효이다.
- 59.7. 주식회사의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가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재정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회사의 이사회 총회 소집 이외에 모든 권한이 종료된다.
- 59.8. 이 법 제60조 제1항에 명시된 권한자가 요청한 주주총회 준비에 회사 경영진 및 권한자가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의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 59.9. 정기주주총회 소집과 관련된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
- 59.10. 주주총회는 해당 총회에서 선출된 의장이 주재해야 한다.
- 59.11.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 법 제62조 제1항 9)에 규정된 문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제60조 주주총회의 소집 요구

- 60.1.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 또는 이 법 제61조 제7항에 규정된 자가 요청하여야 한다.
- 60.2. 총회 소집 결정에는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60.2.1. 회의 장소, 일시
 - 60.2.2. 회의 의제
 - 60.2.3.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참석권이 있는 주주의 명단 작성 및 등록일
 - 60.2.4. 회의 소집에 관련하여 주주에게 통보할 일시, 규정
 - 60.2.5. 회의 준비 과정에 주주에게 통지해야 할 서류 및 문서 목록
 - 60.2.6. 투표용지로 투표를 실시 할 경우에 투표용지의 내용
 - 60.2.7. 투표용지를 접수 받는 최종일
 - 60.2.8. 회의 의장
 - 60.2.9. 계수위원회 회장, 임원
- 60.3.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이 있은 후 40일 이내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60.4. 회사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결정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주주총회 공고를 대중 매체를 통해 주주에게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 60.5. 이 조 제2항 8) 에 명시된 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에 통지해야 하며, 이사회는 회의 소집이전에 회의 의장을 재임명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제61조 비정기 주주총회

- 61.1.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는 비정기총회를 공고 및 소집 할 수 있다.
 - 61.1.1. 이사회 총 인원의 50% 이상이 참석 못하거나 안 한 경우
 - 61.1.2. 이사회 2인 이상의 독립적 이사, 투표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의 소유 주주가 비 정기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 61.1.3. 회사 손실액이 해당 결산 기간 말에 자사 자본의 30%를 초과한 경우
 - 61.1.4. 회사 채무가 2년째 자사 자본을 초과하여 손실을 의미하는 경우
 - 61.1.5.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 61.1.6. 공인회계위원회에서 비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경우
 - 61.1.7. 회사정관에 명시된 그 밖의 경우
- 61.2. 이 조 제1항 2) 에 명시된 자는 비정기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에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61.3.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요구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요청한 주주의 성명, 비정기회의의 소집 이유, 논의할 의제, 결의문, 소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 61.4.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는 비정기총회 소집 요구서를 접수한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회의 소집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 61.5.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는 아래의 경우에 따라 비정기총회의 소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사항과 거부 사유를 이 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요구서 제출 주주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61.5.1. 비정기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주주의 투표권 주식의 10% 미만인 경우
 - 61.5.2. 비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의제가 주주총회 권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61.6. 이 조 제2항 규정에 명시된 결정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61.7. 이 조 제4항 규정의 기간 내에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가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에 이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요구서 제출자는 단독으로 비정기총회의 소집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61.8. 이 조 제7항 규정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의결로 회의 공고 및 소집에 관련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61.9.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가 이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회의소집 결정을 내린 경우에 요구서를 접수 받은 후, 영업일 4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61.10. 이 조 제9항 규정의 경우 회의 소집과 관련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제62조 주주총회의 권한

- 62.1. 아래의 의제는 오로지 주주총회에서 논의 및 의결해야 한다.
- 62.1.1. 회사정관의 변경, 새로운 정관의 작성
 - 62.1.2. 통합, 합병, 분리의 형태에 따른 회사의 재 설립
 - 62.1.3. 회사 채무의 주식 교환, 추가 주식 발행, 수량 측정
 - 62.1.4. 회사 형태의 변경
 - 62.1.5. 폐업 및 폐업위원회 구성
 - 62.1.6. 주식의 통합 및 분할
 - 62.1.7. 이사회 이사 선출, 이의 임기만료 전 권리의 종료
 - 62.1.8. 이 법 제38조 규정에 따른 주주의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권 리의 부여 여부
 - 62.1.9. 회사의 회계 년도 업무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의 의견 논의 및 의결
 - 62.1.10. 이사회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제11장에 규정한 거액 계약의 승인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 62.1.11. 이사회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 이 법 제12장에 규정한 이해가 상충하는 계약의 승인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 62.1.12. 이 법에 규정에 따른 회사의 자사 주식의 매입 승인
 - 62.1.13. 만약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이사회 이사의 급여, 상여금의 책정
 - 62.1.14. 이 법 제96조 제4항에 규정된 보고서
 - 62.1.15. 이사회 결정에 따라 주주총회에 상정한 그 밖의 사항
 - 62.1.16. 이 법 및 회사정관으로 규정한 그 밖의 사항
- 62.2. 이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총회는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및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 및 의결해야 한다.
- 62.2.1. 회사의 유가증권 발행
 - 62.2.2. 실무 경영진의 권한 설정

- 62.2.3. 회사의 최고경영자 및 간부진의 선출, 이의 권한 설정, 임기만료 이전의 권한 종료
- 62.2.4. 실무 경영진의 급여, 상여금
- 62.2.5. 회사의 회계 년도 업무 보고서, 재무제표에 대한 실무 경영진의 의견의 논의 및 의결
- 62.2.6. 회사의 공인회계사 선임, 계약 체결
- 62.2.7. 이익배당금 규모 책정, 지급 규정의 승인
- 62.2.8. 실무 경영진의 조직 체계 승인
- 62.2.9. 지사 및 대표부 설립
- 62.2.10.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회사의 자산 및 재산권의 시장 가격 책정
- 62.2.11. 이 법 및 회사정관에 규정한 기타 의제
- 62.2.12. 실무 경영진 및 주주의 의견으로 상정된 기타 의제

제63조 주주총회 결정의 효력 발생

- 63.1. 주주총회에서 논의되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하는 경우에 보통주 소유 주주는 이 법 제 34조 규정, 우선주 소유 주주는 이 법 제 35조 규정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 63.2.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1주당 투표권은 하나로 한다.
- 63.3. 투표권이 있는 주주는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 별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63.4. 계수위원회는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별로 회의 출석률과 투표권 주식 수량과 종류를 정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 63.5. 이 법 및 회사정관에 이 조 규정보다 더 엄격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의 이사 선출을 제외한 기타 의제는 투표권을 가지고 회의에 참석 한 주주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해야 한다.
- 63.6.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의 이사 선출에는 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로 선출해야 한다.
- 63.7. 이 법 제62조 제1항 1)~6) 규정의 의제는 투표권을 가지고 총회에 참석한 주주 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63.8. 회사정관에 이 법 제62조 제1항 1)~6) 규정의 의제를 결정하는 의결 정족수는 이 법 제63조 제7항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명시

할 수 있다.

- 63.9. 논의될 의제에 따라 일부 의제의 논의 규정을 회사정관에 특별히 규정할 수 있다.
- 63.10. 주주총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의제는 논의할 수 없다.
- 63.11. 필요시 이 법 제66조 규정 이외의 경우에 논의될 의제의 추가 상정 규정은 회사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주주총회의 참석 권한

- 64.1. 회사 유가증권 소유자의 등록을 담당한 자는 주주총회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의 명단을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가 지정한 준비 기간 최종일에 발행하여 회의를 소집한 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64.2. 합자회사의 경우에 이사회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된 날에 등록일은 선택해야 하는데 이 날은 회의 소집 결정 일보다 이전일 수 없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64.3.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개최일이 등록일이 된다.
- 64.4. 등록일은 주주총회 소집 결정서 및 주주 공고문에 명시한다.
- 64.5.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의 명단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 중인 주식 종류, 수량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 64.6. 회사 보통주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요구한 경우에 회사는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명단을 이를 제출해야 한다.
- 64.7. 이사회는 주주 등록을 담당한 자가 서면으로 보내온 허가를 근거로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의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

제65조 회의에 대한 정보 전달

- 65.1. 이 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회의 공고자는 회의에 관한 정보를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주주에게 통보할 의무를 지닌다.
- 65.2. 유한책임회사의 회의에 관한 정보 전달 규정, 기간은 회사정관으로 정한다.
- 65.3. 합자회사의 회의에 관한 정보 전달 규정은 재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65.4. 회의에 대한 정보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회의 일시, 장소, 등록일, 의제 및 의결안,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받기 위한 규정 등이

법 및 회사정관에 정한 기타 정보를 반영 해야 한다.

- 65.5. 투표용지를 통하여 미리 투표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의 접수 장소, 최종 기간 등을 특별히 기재해야 한다.
- 65.6. 주주에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65.6.1. 회사의 회계 연도 재무제표
 - 65.6.2. 회계 연도 재무제표 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평가서
 - 65.6.3. 회계 년의 시작 전에 이루어진 이해가 상충하는 계약, 이러한 계약이 이 법 제12장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평가서
 - 65.6.4.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의 이사 후보자에 대한 소개서
 - 65.6.5. 회사 관계인 명단 및 그들이 소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량
 - 65.6.6. 회사의 이사회, 실무 경영진의 경비, 급여, 상여금
 - 65.6.7. 주식회사의 경우에 영업 보고서
 - 65.6.8.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의제들과 관련하여 주주가 필히 알아야 할 기타 정보
- 65.7. 회사는 회의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진 후, 주주에게 이 조 제6항 규정의 서류를 준비 해야 한다.
- 65.8. 회사는 주주가 주주총회 장소 도착을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제66조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 표시

- 66.1. 투표권이 있는 보통주 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정기주주총회의 개최 전, 이전 회계 년도가 지난 후 60일 이내에 이사회 및 경영진 측에 회의 권한 및 이사회, 계수위원회 후보자(회사정관에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에 대한 의견을 회의에서 논의될 안건에 대하여 추가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사회, 실무 경영진에 제출할 수 있다.
- 66.2. 경영진은 이 조 1항 규정에 따라 접수한 의견을 이사회 영업일 3일 이내로 전달한다.
- 66.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에는 안건,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소유 중인 주식의 종류, 수량을 명시해야 한다.
- 66.4.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는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회사 주주의 경우에는 소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추천한 주주의 성명, 소유 주식의 종류, 수

량을 명시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서면에는 후보 등록의 사유를 명시할 수 있다.

- 66.5.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는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추가 의견을 아래의 경우 이외에 경우 의견을 접수 받은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회의 안건 목록에 삽입해야 한다.
 - 66.5.1. 의견 제출자가 이 조 제1항 규정의 조건에 위배된 경우
 - 66.5.2. 이 조 제3항, 제4항 규정의 정보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66.6.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가 이 조 제3항, 제4항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추가 의견을 정기총회 안건 목록의 삽입 및 후보자 등록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 결정을 내린 후, 영업일 3일 이내에 그 근거를 명시한 설명서를 의견 제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66.7. 이 조 제6항 규정에 명시된 이사회(이사회가 없으면 경영진) 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66.8. 이사회는 의견 제출자의 동의 없이 의견을 수정할 권한이 없다.
- 66.9. 주주총회 일정이 정해진 후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 66.10. 이사회 이사에 후보를 등록할 때 독립 이사, 일반 이사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독립 이사에 후보를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 후보는 이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제67조 회의 계수위원회

- 67.1. 합자회사의 경우에 이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한 자가 계수위원회를 임명해야 하며, 계수위원회의 임무를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 67.2. 논의될 의제와 직접 관련된 회사의 관리자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의 계수위원회 임명을 금지한다.
- 67.3. 계수위원회는 아래의 의무를 지닌다.
 - 67.3.1. 출석률 파악하여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67.3.2. 해당 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별로 참석자의 투표권 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 67.3.3. 주주총회 참석, 투표권 행사와 관련되어 발생할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67.3.4. 투표 규정을 설명해야 한다.
 - 67.3.5. 투표 규정 및 주주의 투표권을 보호해야 한다.
 - 67.3.6. 투표용지를 통해 투표하는 경우에 투표용지를 계수하고

접수해야 한다.

67.3.7. 투표결과를 검수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67.3.8. 투표결과를 종합하여 결과에 대한 결정에 따라
계수위원회위원장의 서명 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67.3.9. 투표용지를 회사 보관실에 보관하도록 양도해야 한다.

67.4. 주주총회 계수위원장은 계수결과 및 사실을 책임진다.

67.5. 이사회는 계수위원회에 회의와 관련된 기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68조 회의 참석 규칙

68.1. 주주는 회의에 직접 참석 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위임장을 근거
로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68.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대리인은 이러한 사항을 회의 시작 전에
이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대리인에 관한 위임은 해당 회의에만 유
효하다.

68.3. 회의가 연기 되었으나 해당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의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위임은 연기된 회
의에도 유효하다.

68.4. 투표용지에 의사 표시를 하여 제출한 주주는 회의에 참석한 것
으로 간주한다.

68.5. 주식회사의 경우 등록일 이후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는
새로운 주주에게 회의 참석을 위임하거나 새로운 주주의 의사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68.6. 회사의 주식을 다수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의
참석 및 투표권을 공동 소유자의 어느 누구를 통하거나 공동대
표를 통해 행사해야 한다.

68.7. 이 조 제6항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표하여 참석 하는 권리
문제는 민법 규정에 따른다.

제69조 정족수 및 성원

- 69.1. 투표권이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참석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 69.2. 회사정관에 정족수 규정을 이 조 제1항 규정보다 더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
- 69.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비율에 정족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단, 논의될 의제는 연기된 회의에서 변경할 수 없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 69.4. 회사정관에 더 엄격한 규정이 없다면 투표권을 가지는 주식 20% 이상의 소유 주주가 회의에 참석함으로써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회의 연기의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 69.5. 회사정관에 더 엄격한 규정이 없다면 이 법 제62조 제1항 62.1.1. ~ 62.1.6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의제를 논의할 연기된 회의는 투표권을 가진 주식 1/3 이상의 주주가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다.
- 69.6.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연기된 회의는 영업일 2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또한 개회 전, 최소 7일(영업일) 이전에 연기된 회의 장소, 일시 등을 통지해야 한다.
- 69.7. 주식회사의 경우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연기된 회의의 등록 일을 변경할 수 없다.
- 69.8.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전 회의에 제출된 의사는 연기된 회의의 참석인원, 투표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
- 69.9. 연기된 회의가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기간에 소집되지 못하면 새로 회의를 공고해야 하며 이 때의 정족수는 이 조 제1항 규정에 따른다.

제70조 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 70.1. 회의, 회의결과에 대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다음을 근거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0.1.1. 이 법 이에 해당되는 권한 기관에서 규정한 규정, 회사정관에 명시된 바에 따라 회의를 공고하지 않은 경우
 - 70.1.2. 회의 소집 결정이 있은 후 회의 일시 및 장소를 변경한 경우
 - 70.1.3. 회의 의제가 아닌 문제를 논의한 경우
- 70.2. 주식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주주는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근거로 재정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1조 투표용지

- 71.1.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의 투표는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71.2. 주주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의사 표시를 투표용지에 표시된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계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71.3.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투표용지의 내용 및 견본은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한 자가 승인해야 한다.
- 71.4. 투표용지에는 아래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71.4.1. 회사의 상호
 - 71.4.2. 회의 장소, 일시
 - 71.4.3. 주주의 성명, 소유 중인 주식 종류, 수량
 - 71.4.4. 투표로 결정해야 할 의제, 이사회 출마자 성명
 - 71.4.5.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의 선출에 사용할 투표 방법(일반, 누계)
- 71.5. 안전별로 일반 규정에 따른 투표에는 “찬성”, “반대”, “기권”이라는 것이 기록된 용지, 누계선거방법을 사용에는 해당 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기재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수를 각각 기록한 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제72조 무기명 투표의 효력

- 72.1. 무기명 투표는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72.1.1. 일반적 투표에 있어서는, 오직 한 가지 선택사항에만 표시가 된 경우
 - 72.1.2. 일반적 투표에 의한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 선출의 경우에는, 출마자를 지지한 표의 수가 선출될 사람 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72.1.3. 출마자를 지지한 표를 누계방법으로 투표한 경우에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에 출마한 후보자 별로 지지한 표의 합계가 해당 주주의 투표권 총수보다 적으며 총 투표 권수가 해당 주주가 소유한 투표권이 있는 보통주의 수에 피선될 사람의 수를 곱한 것에 일치한 경우
- 72.2.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 선출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투표 선택권 중 오직 한 가지만 선택 하도록 한다.

제73조 꺾쇠 투표에 의한 주주의 의결

- 73.1.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권한에 속한 안건에 관하여 회의 소집 없이 주주에게 의사표현을 받는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꺾쇠 투표 시에 투표용지를 사용해야 한다.
- 73.2. 정기주주총회는 꺾쇠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 73.3. 꺾쇠 투표의 여부는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꺾쇠 투표 결정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시 해야 한다.
- 73.3.1. 꺾쇠 투표로 의결할 안건
 - 73.3.2. 투표권 있는 주주를 확정할 등록일
 - 73.3.3. 주주에게 투표용지의 전달 기간
 - 73.3.4. 투표한 용지를 회수하는 최종일
 - 73.3.5. 투표용지의 내용 및 견본
 - 73.3.6. 꺾쇠 투표 시행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제공하는 안내서, 서류 목록의 확인 기회, 장소
- 73.4. 꺾쇠 투표 참가권이 있는 주주는 이 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 73.5. 투표용지에는 이 법 제71조 제4항 1), 3), 4), 5) 규정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투 표한 용지를 접수할 최종 일을 기재해야 한다.
- 73.6. 주식회사의 경우 꺾쇠 투표의 투표용지는 회사가 다시 회수하는

- 최종 일의 최소한 30 일 이전에 주주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 73.7. 전체 투표권의 50% 이상의 표가 제출되면 궐석 투표는 효력이 발생된다. 제출된 표의 과반수이상으로 해당 의제를 의결한다.
- 73.8. 궐석 투표의 개표, 결과 발표 등은 이 법 제67조에서 정한 계수위원회가 수행한다.
- 73.9. 계수위원회는 투표지를 수령한 최종일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궐석 투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위원 모두가 서명한 후, 이사회에 인계해야 한다.
- 73.10. 궐석 투표 결과 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 73.10.1. 투표용지를 주주에게 전달한 일시
 - 73.10.2. 궐석 투표로 해결할 안건
 - 73.10.3. 투표에 참가한 주주의 명단, 소유주식의 수량
 - 73.10.4. 의제별로 투표권 있는 주주가 지지한 표의 총계
 - 73.10.5. 궐석 투표 결과
 - 73.10.6. 궐석 투표로 의결된 의결사항
- 73.11. 계수위원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의결한 결정사항은 보고서를 받은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이사회가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4조 주주총회 회의록

- 74.1. 주주총회 종료 후, 영업일 15일 이내에 의장의 서명에 따라 회의록을 발행해야 하고 회의록의 사실 여부는 의장이 책임진다.
- 74.2. 회의록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74.2.1. 회의 일시
 - 74.2.2. 회의 의장 성명
 - 74.2.3. 논의된 의제
 - 74.2.4. 주주의 투표수, 참석 인원
 - 74.2.5.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에 투표용지의 건본
 - 74.2.6. 회의에서 의결한 의제별로 찬성, 반대, 기권자 수, 가결한 결정 사항
- 74.3. 회의록의 오류는 해당 회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시킬 근거로 할 수 없다.
- 74.4.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의 투표결과, 가결된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회의에서 공표해야 한다.
- 74.5.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총회 및 궐석 투표 결과 가결된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해당 회의에서 공표 또는 회의 종료 후에 전달해야

한다.

- 74.6. 회사와 주주는 필요 시에 회의록 내용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특정 장비를 통해 녹화할 수 있다.
- 74.7. 이 조 제6항 규정에 의해 주주가 녹화를 한 경우 회사는 그 사본을 요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75조 이사회

- 75.1.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함께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 75.2.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해야 하며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75.3. 이사의 구성원 수는 회사정관으로 정해야 한다.
- 75.4. 주식회사 및 국영기업의 이사회는 구성원은 9인 이상으로 해야 하며 구성원의 3/1 이상은 독립 구성원이어야 한다.
- 75.5.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유한책임회사의 이사회에 독립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
- 75.6.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구성원수의 독립구성원을 이사회에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회사의 이사회는 권한을 상실한다.
- 75.7.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경우에 회사 이사회가 주주총회 회의 후 영업일 5일 이내로 다음 주주총회 일정일 결정하고 이사회 구성원 선출 문제를 재 논의한다.
- 75.8. 이사회 구성원과 비서실장은 기업행정 분야 교육에 참가하고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76조 이사회 권한

- 76.1. 이사회는 이 법 및 회사정관에 따라 주주총회 권한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 76.1.1. 기본 영업 종목 설정
 - 76.1.2. 정기 주주총회 및 비정기 주주총회 공고, 소집
 - 76.1.3.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안건, 투표권이 있는 주주의 확정 등록일, 주주총회소집에 관련된 기타 문제의 결정
 - 76.1.4. 수권주식의 종류 및 이에 따른 주식의 발행
 - 76.1.5. 회사정관에 규정된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의 발행
 - 76.1.6.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른 자산 및 재산권의 시장가격 책정
 - 76.1.7. 발행한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및 환수
 - 76.1.8. 실무 경영진의 선임, 변경, 권리 설정
 - 76.1.9. 실무 경영진과 체결할 계약조건, 급여, 상여금, 책임 소재 책정
 - 76.1.10. 공인회계사 선임 및 계약 조건 조정
 - 76.1.11.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평가서 발행,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승인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76.1.12.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익배당금 규모 및 지급 규정의 승인
 - 76.1.13.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의 업무 규정 승인
 - 76.1.14. 지사 및 대표부 설립
 - 76.1.15. 회사의 변경 및 재 설립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안 초안 작성, 가결된 결정 사항의 이행
 - 76.1.16. 이 법 제11장 규정에 따른 거액 계약 체결의 승인
 - 76.1.17. 이 법 제12장에 규정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의 승인
 - 76.1.18. 이 법 및 회사정관에 규정된 기타 문제
- 76.2.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 조 제1항 6), 10), 17) 규정의 문제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독립 구성원이 의결에 참가하여 투표해야 한다.

제77조 이사회 선출, 이사 임기의 조기 단축

- 77.1. 이 법이나 회사정관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이사를 선출해야 한다.
- 77.2.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다음 해 주주총회 개최일로 종료된다. 이사회 이사는 연임이 가능하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 77.3. 비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조기 단축할 수 있으며, 만약 이사회를 집중투표제로 선출하였다면 이사회 임기 조기 단축은 오직 전체 이사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사회 이사는 개인으로 한다.
- 77.4.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사회 이사를 집중투표제로 선출해야 하며, 이사회 일반 이사와 독립 이사 선출 의견을 각각 반영한다. 투표 누적방법 사용 규정은 재정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77.5.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장기간 임무 수행 능력이 없거나 사망한 이사를 대신할 자를 이사회 보궐 선거까지 임시로 지명할 수 있다.
- 77.6. 이 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명된 자는 독립 이사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권리 가진다.

제78조 이사회 의장

- 78.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회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과반수이상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
- 78.2.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회의장은 이사회 업무를 조직, 구성, 이사회 소집 및 주재, 회의록을 작성 지시, 감사 의무를 지닌다.
- 78.3. 이사회장 부재시에는 이사회회의장이 임명하였거나 이사회에서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리해야 한다.

제79조 이사회 독립 이사

- 79.1. 이 법 제81조 제2항에 규정된 후보위원회는 이사회 독립 이사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후보로 추천한다.
- 79.1.1. 본인 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회사 보통주의 5%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자
- 79.1.2. 본인 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는 회사 및 회사 참여자가 되는 회사 통합의 기타 참여자가 종사하지 않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종사하지 않는 자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79.1.3. 공공 서비스 이외에 공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79.1.4. 회사와 영업적으로 관계가 없는 자
- 79.1.5. 이 법 및 회사정관으로 규정한 기타 조건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추가됨]
- 79.2. 국영기업 및 국영기업이 자본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회사의 경우, 독립 이사에 해당 회사를 경영할 전문 능력을 가진 자를 기업 올바른 행정 지원 목적을 가진 비정부기관에서 추천서를 해당 회사 이사회 추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79.3. 이사회 독립 이사는 기타 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아래의 추가적 의무를 지닌다.
- 79.3.1. 이사회, 경영진 업무, 정책, 결정은 해당 회사의 권한을 위배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영업활동은 법령, 규정, 규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감시, 위법 행위 방지, 위법 행위 발생 시 관련 조치를 관계자에게 요청, 요청사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 주주총회 소집 요구를 제출한다.
- 79.3.2. 회사 영업의 투명성, 공개성을 만족하기 경영진에 의무를 요구하고 실행을 감시, 관계자에게 요구한다
- 79.3.3.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이사회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통보하고,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 79.4. 국영기업 및 공영기업이 50% 이상의 국영 혹은 공영 소유 회사 이사회의 독립 이사는 이 법 제 76조 제1항, 제79조 제3항에 규정 외에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79.4.1. 국영 및 공영 소유 자본으로 제품, 용역 및 서비스 매입 법에 따르는매입에 대해 의견을 작성

79.4.2. 경영진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제품, 용역 및 서비스 매입 업무가 관련 법률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사

제80조 이사회

- 80.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는 한 달에 1회 소집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 80.2. 이사의회의 결정은 명령서로 간주되며, 명령서에는 이사의회의장이 서명해야 한다.
- 80.3. 이사회는 이사의회의장, 이사, 회사 실무 경영진 및 회사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요구로 소집해야 한다.
- 80.4. 이사회는 업무 규칙을 승인해야 한다. 이사회는 궐석으로 의결할 수 있다.
- 80.5. 이사회는 이사가 2/3 이상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한다.
- 80.6.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회사정관에 더 엄격한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80.7. 이 법 및 회사정관 규정에 따라 만약 의결할 안건에 대해 일부 이사의 투표권이 없으면 투표권이 있는 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80.8. 이사 수가 정원의 1/2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회사는 3개월 이내에 이사 선출을 위해 비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80.9. 이사회 의결에는 이사 별로 하나의 투표권을 지닌다.
- 80.10. 이사회에서 거부동수일 경우에 이사회장 의 의사로 의결하도록 정관 및 이사회 업무 규칙에 규정할 수 있다.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폐지됨]
- 80.11. 이사회 회의록에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80.11.1. 회의 장소 및 일시
 - 80.11.2. 회의 참석 이사
 - 80.11.3.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
 - 80.11.4. 투표로 결정된 문제 및 투표 결과
 - 80.11.5. 의결된 결정사항
- 80.12. 이사회 회의록에는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서명하고 회의록 사실 여부는 회의 의장이 책임진다.
- 80.13. 이사의회의 임의의 이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

해 서면으로 설명한다.

[2014년 6월 5일잔 법안으로 변경됨]

80.14. 이사회 회의록의 오류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무효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81조 이사회 산하 위원회

81.1. 이사회는 필요시에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상임 및 임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81.2.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감사, 급여, 상여금,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구성원의 3/2 이상은 이사회 독립 이사로 구성된다.

81.3. 이사회 산하 위원회는 특정 목표에 따라 관련 문제를 평가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법에 규정된 일부 사항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81.4.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 독립이사이여 하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결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81.4.1. 회사 회계정책, 회계 국제 표준 도입, 내부 감사 및 위험관리, 결산서, 재무경제 및 기타 정보의 사실 여부를 감시

81.4.2. 내부감사실 간부, 직원을 임명하고, 급여, 상여금 규모에 대한 의견작성

81.4.3. 공인회계 기관을 선정하고 계약금 규모에 대한 의견작성

81.4.4. 거래의 계약 및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을 감시 및 평가

81.4.5. 회사정관에 규정된 혹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한 그 밖의 문제

81.5.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후보자 추천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81.5.1. 회사 이사회 이사 및 경영진 후보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고, 능력, 지식, 학력, 경력 등의 평가 기준을 설정

81.5.2. 이사회 이사 및 경영진 후보의 능력, 지식, 학력, 경력 사항은 독립이사의 경우 이 법 제79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감시 및 평가

81.5.3. 이사회 이사 후보를 등록하고 선출하여 주주총회에 직접 추천

81.5.4. 이사회 및 경영진 이사 업무를 감시 및 평가

- 81.5.5. 경영진과 체결할 계약서의 조건을 작성
- 81.5.6. 이사회 이사 외에 기타 회사 간부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 81.5.7. 이 법 제59조 5항에 규정된 근거로 이사회 권한은 만료일 후에 3년 이내에 해당 이사회 이사를 그 어떠한 주식회사의 이사회 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금지한다.
- 81.6.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급여, 상여금 위원회는 다음의 문제에 대해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81.6.1. 회사 이사회 이사, 경영진 및 기타 간부의 급여, 상여금에 대한 정책 승인, 및 해당 업무 수행여부 감독
 - 81.6.2. 이사회 및 경영진, 기타 간부의 급여, 상여금의 최고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른 급여 및 상여금의 지급 의견을 작성
 - 81.6.3. 회사에서 준수하는 업무성과와 관련된 회사 상여금 체제의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평가

제82조 이사회 비서실장

- 82.1. 이사회 비서실장을 이사회 의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 82.2. 이사회 비서실장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82.2.1. 주주총회 및 이사회 사무를 담당하고, 주주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 82.2.2.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를 지원하고, 회의 공고, 논의될 의제와 관련 정보 및 의결안, 기타 서류를 관련 규정에 따라 준비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한다.
 - 82.2.3.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이의 실행을 감시한다.
 - 82.2.4.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사장 및 기타 관계자간 업무조정을 지원하고 수행한다.
 - 82.2.5. 이사회 내부 활동을 담당하여 조정한다.
- 82.3. 이사회 비서실장 부재시 의장이 대리인을 임명한다.

제83조 실무 경영진

- 83.1. 실무 경영진은 회사정관 및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와 체결한 계약 규정의 권리 범위 내에서 일상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83.2. 회사정관에 실무 경영진을 구성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개인이 담당한다.
- 83.3. 개인이 실무 경영진의 임무를 시행하는 경우에 그는 실무 사장이 된다.
- 83.4. 회사의 실무 경영진은 이사회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장은 겸직할 수 없다.
- 83.5. 법령 및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승인 하에 실무 사장, 실무 경영진 간부는 다른 회사, 사업체의 경영진 겸직이 가능하다.
- 83.6. 실무 경영진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와 체결한 고용계약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 83.7. 이 조 제6항에 규정된 계약서에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이사회 의장(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이 서명해야 한다. 계약에는 실무 경영진의 권리와 의무, 책임의 크기와 한계, 면책사유, 급여, 상여금 등을 명시해야 한다.
- 83.8. 실무 경영진은 이사회가 부여한 권리 범위 내에서 계약, 계약 체결, 회사를 대표하는 등 회사를 대표하여 위임 없이 업무를 진행한다.
- 83.9. 실무 경영진이 별도의 집행부를 구성한 경우에 회사정관 및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와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근무 내부규정을 이사회와 협의하여 승인하고 따라야 한다.
- 83.10. 이 조 제9항의 규정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83.10.1. 집행부 및 구성원이 담당할 업무 분장, 업무의 연계 및 조정
 - 83.10.2. 부서장 임명 규정
 - 83.10.3. 부서장 권리, 의무, 책임
- 83.11. 이 조 제9항에 규정된 집행부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회사 업무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부담한다.
- 83.12. 경영진의 집행부는 이 조 제8항에서 정하는 계약, 계약 체결 및 대표 업무의 수행에는 부서장이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해야 한다.

- 83.13. 이 조 제12항에 규정된 부서장은 이사회와 협의하여 집행부 구성원이 선출 해야 한다. 부서장은 회사의 실행 사장 역할을 대행 한다.
- 83.14. 실무 경영진의 회의 및 결정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반드시 기록 해야 한다. 이 회의록의 진실성은 부서장이 책임진다.
- 83.15.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실무 경영진의 권한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10장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

제84조 의사 결정권자

- 84.1. 이사회 의 이사, 실무 경영진의 구성원, 실행 사장, 회계책임자, 회계부장, 총담당자, 이사회 비서실장 등 관리자를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라 한다.
- 84.2. 회사 특징에 따라 의사 결정권자 명단을 회사정관에 명시해야 한다.
- 84.3.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회사 의사 결정권자에 임명하는 것을 금지한다:
- 84.3.1. 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공공기관 및 기타자치단체, 군, 경찰, 법정, 검찰 기관 간부직을 겸임하는 자
 - 84.3.2. 구속된 자
- 84.4.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84.4.1. 법령 및 회사정관, 규정에 명시된 권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한다
 - 84.4.2. 업무 활동에 있어 회사 이익과 관련한 원칙을 따르며 이 법 및 회사정관으로 정한 의무를 엄격히 수행한다
 - 84.4.3. 회사 이해관계에 따르는 결정을 내린다
 - 84.4.4. 결정을 내릴 때 이해 관계의 충돌을 피하고 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한다
 - 84.4.5.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때 제3자로부터 선물, 상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 84.4.5. 회사 기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84.5.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가 회사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의 없으면 사퇴 후 3년 이내에 이 조 제4항 6)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 84.6.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는 이 조 제4항, 제5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본인 부담으로 배상해야 한다.
- 84.7. 이사회 이사, 실무 경영진이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붙이 행한 경우 회사 주주는 해당자에게 회사에 생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84.8. 이사회 결정으로 인해 회사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해당 결정에 반대하였거나 해당 회의에 참석 하지 않은 이사는 면책된다.
- 84.9. 이 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한 결정을 내린 당사자는 연대책임을 지고 손해에 비례하여 배상한다.
- 84.10. 유한책임회사 보통주 20% 이상을 단독 또는 그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주는 이 법 제84조에 규정된 의사 결정권자의 의무 및 책임을 지닌다.

제85조 의사 결정권자의 책임

- 85.1. 의사 결정권자가 직책에 임명된 후로 10일 이내에 본인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사회 비서실장에게 전달해야 하며, 명단 수정마다 10일 이내로 회사에 통보한다.
- 85.2.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가 고의로 아래의 불법 행위로서 회사 및 주주, 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신의 자산으로 보상해야 한다.
 - 85.2.1.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회사 상호를 도용하여 사업 활동을 한 경우
 - 85.2.2. 회사주주, 채권자 및 기타 거래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 85.2.3. 정보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85.2.4. 이 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회사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85.2.5. 이 법 제98조에 명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지연한 경우
- 85.3.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가 이 조 제2항 5) 에 규정된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정보지연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생긴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
- 85.4. 이 조에서 정하는 책임은 이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다른 책임과 함께 물을 수 있다.

제86조 주주들의 제소권

- 86.1. 회사 보통주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의사 결정권자가 회사에 야기한 손해를 보상 하도록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 86.2. 회사 및 보통주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회사에 야기한 손해를 이 법 제84조 제10항 규정의 자가 보상하도록 이 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11장 거액 계약

제87조 거액 계약

- 87.1. 거액계약이라 함은 아래의 계약을 말한다.
- 87.1.1. 자산 및 재산권의 매입, 매각, 재산의 담보 및 재산권의 양도와 직접 연관 있는 계약(회사의 일상적인 기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의 경우, 그 시장가격이 회사의 계약 체결 이전의 최근 결산서의 유동 자산 총액 25% 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약 또는 서로 직접 관련된 다수의 계약
- 87.1.2. 회사가 이전에 발행한 보통주의 25% 를 초과하는 경우의, 보통주, 보통주를 매입할 권리증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의 발행, 서로 직접 관련된 다수의 발행
- 87.2. 거액계약의 자산 및 재산권의 시장가격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 87.3. 거액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공인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재산 결산서의 금액을 인플레이션 율에 맞추어 다시 조정할 수 있다.
- 87.4. 소유주가 1인인 회사는 이 조 규정에 무관하다.

제88조 거액 계약의 체결

- 88.1. 거액계약 체결의 결정은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해야 한다.
- 88.2. 이사회가 거액계약에 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지 못할 경우에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 88.3. 거액계약 체결문제를 반대한 주주는 이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관하여 회사에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

- 88.4. 회사는 회계 연도에 체결한 거액계약 및 계약 가격을 분기, 연 말 보고서 설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중에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12장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제89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

- 89.1. 회사 보통주 20% 이상을 단독 또는 이와 동일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주, 회사 의사 결정권자, 이와 동일 목적을 가진 자는 본인이 종사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와 아래 관계를 형성할 경우 회사 또는 종속사, 자회사와 이해가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라 한다:
- 89.1.1. 계약의 일방 당사자, 계약에 대표자 및 중개자의 참여
 - 89.1.2.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참여, 해당 계약에 대표자 및 중개자로 참여하는 법인의 보통주(이익배당) 20% 이상을 단독 또는 그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와의 공동 소유하는 관리자
 - 89.1.3.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참여, 해당 계약에 대표자 및 중개자로 참여하는 법인의 모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 또는 본 회사의 보통주(이익배당) 20% 이상을 단독 소유,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와의 공동 소유하는 자
 - 89.1.4. 본 계약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자산 및 재산권, 현금으로 표현되는 기타 권리의 매각 및 매입
- 89.2. 아래에 명시된 자를 회사 의사 결정권자 및 감시용 종합 주식 주주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라 한다:
- 89.2.1. 그의 배우자, 동거 가족
 - 89.2.2. 그의 부모, 자녀, 손주 및 남매
 - 89.2.2. 본인이 근무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생긴 이익을 배당 받는 경우 해당 계약 당사자
- 89.3. 본 장의 규정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89.3.1. 회사의 모든 보통주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 89.3.2. 주주가 이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주식 매입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 89.3.3. 주주가 매각에 관련한 의사를 표시한 총 주식 종류 및 수량

- 비율에 따라 회사가 매입한 경우
- 89.3.4. 다른 회사의 보통주 75% 이상을 소유한 회사가 이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합병의 형태로 회사를 재 설립한 경우
- 89.4.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가 10명 이하이면 회사정관에 이 법 제89조 제3항 규정 이외에 다른 상황을 규정할 수 있다.
- 89.5. 회사는 회계 연도에 체결한 거액계약 및 계약 가격을 분기별, 연간 보고서 설명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중에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90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와 체결한 계약에 기인한 손해 배상

- 90.1.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회사와 종속회사 및 자회사에 야기한 손해는 귀책사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 90.2. 회사 보통주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및 회사의 대표성을 띠는 관리자는 이 조 제1항 규정의 책임 부담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을 결정시의 요건

- 91.1. 계약 체결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 및 공인회계사에게 아래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 91.1.1. 단독 또는 그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보통주 20% 이상을 소유한 법인 및 종속회사, 자회사에 대한 정보
- 91.1.2. 본인 또는 그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가 의사 결정권자로 근무하는 법인 및 이해관계 상충자가 관리자로 있는 회사 그룹의 다른 파트너에 대한 정보
- 91.1.3. 해당인이 회사가 체결하려고 제안한 계약에 이해관계자라는 정보
- 91.1.4. 이 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정보
- 91.2.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체결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결정 참여를 금지한다.
- 91.3. 회사는 관리자 및 이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며, 누구라도 이를 요청하는 자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진다.

제92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체결의 규칙

- 92.1. 이 법 제89조 1항에 규정된 자가, 본인이 근무하며 감시용 종합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이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체결 승인 결정 또는 요구 결정 안은 해당 계약 체결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92.2.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을 통해 매각, 매입, 처분할 자산 및 이의 현금으로 평가되는 기타 권리의 시장 가격, 용역비 등은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해야 한다.
- 92.3. 주식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서로 간연계가 있는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결의안, 종속회사 및 자회사에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승인 또는 요구하는 결의안은 주주총회에 참가한 이해관계가 상충이 없는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해야 한다.
- 92.3.1. 이 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계약 가격 또는 자산, 이의 현금으로 평가되는 재산권, 용역비는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이 있는 당시 등록 가격 25% 이상인 경우
- 92.3.2. 회사가 발행하는 보통주, 보통주 매입 권리증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유가증권의 규모가 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이전에 발행한 주식가격 25% 이상인 경우
- 92.3.3. 이사회 이사 전원(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독립적인 이사)이 계약 체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 92.4.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문제는 이사회에서 계약 체결에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의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독립적인 이사의 과반수로 정해야 한다.
- 92.5. 계약 체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의 부모, 부인, 남편, 남매 및 그와 동일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부터 차용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은 이 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승인할 필요가 없다.
- 92.6. 이 법 제 89조에 규정에 따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로 인정하기 전에 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일상의 업무과정에 체결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은 다음 정기주주총회 개최 전까지 이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92.7. 주주총회 개최시에, 회사 또는 종속회사의 일상의 업무과정에서 행해진 계약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는 체결할 계약의 종류, 계약 체결자 및 계약 가격의 상한을 반영하여 제3자와 공동으로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가 시행할 업무를 승인해야 하며 이 경우에 이 조 제3항 규정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 92.8.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체결에 관하여 본 장의 규정은 일정한 종류의 계약 체결 시에 준수해야 할 이 법 및 회사정관에 정한 규정과 함께 동시에 준수되어야 한다.

제93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 체결의 위반

- 93.1. 이 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 제91조, 제92조 규정의 위반에 따라 회사 또는 그 종속회사, 자회사에 손해를 야기했다면 손해 규모 또는 계약결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93.2. 이 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체결한 계약을 법원에서 무효로 인정할 수 있다.
- 93.3.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을 체결한 의사 결정권자는 이 법 제85조, 제90조 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 93.4. 이 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가 이 법 제91조, 제92조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모든 주식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본 계약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93.5. 회사의 보통주를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및 회사는 이 법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자 또는 단독으로 주식을 소유고 있는 법인을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93.6. 이 조 제3항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이 법 제9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 위반에 대해 본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인지할 기회가 없었다면 본 계약은 무효로 간주할 수 없다.

제13장 회사의 회계, 경제 업무에 대한 감사

제94조 회사의 회계, 경제 업무에 대한 공인회계 감사

- 94.1.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회사는 재무제표의 감사, 확정 그리고 회계, 경제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감사를 위해 계약을 근거로 공인회계사를 선임할 수 있다.
- 94.2. 주식회사 정관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의 선임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 94.3. 이사회(이사회가 없는 경우에 주주총회)는 공인회계사를 선임하고, 체결할 계약을 승인해야 한다.
- 94.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계약에 회사 및 공인회계사의 권리와 의무, 책임, 공인회계사의 대행료 등을 명시해야 한다.
- 94.5. 회계 및 경제 업무에 대해 공인회계사는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
- 94.6. 회사의 연간 재무제표를 인증 받기 위하여 정기 감사를 받는다.
- 94.7. 비정기 감사는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 또는 보통주 10% 이상 주주의 요구로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 94.8.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정기 감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정기 감사에 대한 비용은 계약을 체결하여 공인회계를 요청한 주주가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94.9. 감사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가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야기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사비용은 귀책사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 94.10.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는 공인회계사의 요구에 따라 회사의 회계-재정업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94.11. 이 조 제10항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의사 결정권자의 귀책사유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중단된 기간에 대한 비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귀책사유자가 그를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 94.12. 공인회계사는 설명할 의무로써 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다.
- 94.13.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회사의 공인회계사로 선임하는 것을 금지한다.
 - 94.13.1. 회사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소유자,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 이와 동일 목적을 가진 자가 회사 또는 동일 목적을 가진 회사의 계약직 직원, 의사결정자인 경우
 - 94.13.2. 회사 또는 그와 동일 목적 소유자가 발행한 유가증권 소유자,

회사 및 그와 동일 목적 소유자와 관련된 자산 및 재산권 소유자인 경우

- 94.13.3. 회사와 공인회계 이외의 문제로 계약을 체결한 자인 경우
- 94.14. 이 조 제13항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경우 공인회계사 평가결과를 무효로 인정한다.
- 94.15. 공인회계사가 제시한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지급할 비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 94.16. 회사의 회계 및 경제 업무에 대한 감사(서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회사의 공인회계사는 아래의 정보를 결과물에 명시해야 한다.
 - 94.16.1. 회사 재무제표의 정확한 작성 여부
 - 94.16.2. 회계장부기록, 재무제표가 적절한 규정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위반사항이 있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항목별 설명
 - 94.16.3. 감사기간에 체결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목록, 본 계약이 이 법 규정에 따른 체결 여부
 - 94.16.4. 주식회사의 경우에 재정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가 정한 기타 정보
 - 94.16.5. 회사정관 및 공인회계계약에 규정한 기타 정보
- 94.17. 공인회계사는 자신이 수행한 감사결과로 인해 생긴 손해는 개인 부담으로 책임진다.

제95조 회사의 회계 및 보고서

- 95.1. 회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회계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를 발행하여 주주 및 관련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95.2. 주식회사의 경우에 재정관리위원회 및 증권거래소에서 정한 추가 사항,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기간 내에 제출하여 대중에게 공시해야 한다.
- 95.3. 회사의 회계 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 95.4. 회사는 회계장부를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이의 투명성을 회사의 실무 경영진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96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 96.1.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96.1.1. 결산서
 - 96.1.2. 수입 보고서
 - 96.1.3. 현금 유통 보고서
 - 96.1.4. 누적 이익 보고서
 - 96.1.5. 해당 회계 연도에 체결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계약의 목록, 종류, 가격, 경영진 급여, 상여금
 - 96.1.6. 추가 설명서
 - 96.1.7. 법령 및 권한 기관이 규정한 기타정보
- 96.2. 유한책임회사 정관에 재무제표에 기재할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 96.3. 조세업무와 관련하여 수령해야 할 추가 설명서는 재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이 승인하고,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내용 및 추가 설명에 대한 견본, 규정은 재정관리위원회가 승인한다.
- 96.4. 회사 이사회는 연중 업무, 구조, 조직, 자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96.4.1. 회계 연도 기간에 회사가 시행한 기본 업무에 대한 소개, 변동 사항 및 이의 업무의 성과, 구조, 조직, 변경 사항
 - 96.4.2. 회계 연도 기간에 회사의 의사 결정권자에게 지급한 상여금, 운영 경비
 - 96.4.3. 회사정관에 규정한 기타 정보
 - 96.4.4. 합자회사의 경우, 연간 보고서에 명시해야 하는 추가 정보는 재정관리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다.
- 96.5. 이사회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논의해야 한다.
- 96.6.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견서가 작성되기 전에 재무제표를 공인회계사에게 검토 인증 받아야 한다.

제97조 회사의 서류 보관

- 97.1. 회사는 아래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 97.1.1. 회사정관, 정관변경, 회사 설립에 관한 발기인의 결정 안, 회사의 등록 증명서
 - 97.1.2. 주주총회, 이사회, 실무 경영진, 감사위원회가 승인한 회사 내부 문서
 - 97.1.3. 지사 및 대표부의 정관
 - 97.1.4. 주주총회 회의록, 결의문
 - 97.1.5. 주주총회에 준비하여 주주에게 배포된 서류 및 주주에게 받은 논의 안건요건
 - 97.1.6. 재무제표 및 업무 보고서
 - 97.1.7. 주식 및 유가증권 발행 규정
 - 97.1.8. 초기 장부 및 회계 장부
 - 97.1.9. 회사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의 명단 및 이들이 소유한 주식의 수량 및 종류
 - 97.1.10. 이사회 및 실무 경영진 회의록, 명령서, 결정서
 - 97.1.11.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평가서
 - 97.1.12. 회사 의사 결정권자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의 명단
 - 97.1.13.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단독 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의 명단, 이들의 소유 주식의 수량 및 종류
 - 97.1.14. 이 법 및 회사정관에 규정한 기타 내부 문서
- 97.2. 회사는 아래의 문서를 보관하고, 법령 및 회사정관, 규정으로 정한 권한 있는 자의 요구로 열람할 의무를 가진다.
- 97.2.1. 회계장부에 반영된 자산 및 재산권 증명 문서
 - 97.2.2. 이사회 및 경영진의 회의록, 결정서
 - 97.2.3. 초기 장부 및 회계 장부
 - 97.2.4. 정부 감시조정기관에 제출한 정보 및 보고서.
- 97.3. 회사는 정관 및 정관의 변경 사항을 보관해야 한다.
- 97.4. 이 조 제1항 규정의 회사정관외 기타 문서는 회사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이러한 서류는 문서보관소로 이관해야 한다.
- 97.5. 이 조 제1항 규정의 문서를 관련 규칙에 따라 관련자로부터 인수받은 보관, 의사 결정권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보관소의 이전 등의 업무는 이사회의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없는 경우에 실무

경영진의 관련 관리자)가 시행해야 한다.

- 97.6. 회사는 이 조 제1항 규정의 문서를 자신의 업무 진행 장소 또는 주주가 알고 있고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98조 회사에 대한 정보 입수

- 98.1. 주식회사는 연중 재무제표 및 업무보고서, 회사의 동일 목적 소유자의 명단, 이들이 소유한 주식의 종류, 수량 및 재정관리위원회, 증권거래소의 규정, 규칙에 정한 기타 정보를 자사 유가증권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있다.
- 98.2. 회사 이사회 비서실장이 초기장부 및 회계장부, 회사 실무 경영진의 회의록, 명령서, 결정서 및 법령으로 대중에게 공개가 금지된 것 이외의 기타 문서 열람 유료 복사 기회를 주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 98.3. 주식회사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 유한책임회사의 임의의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 소유 주주의 성명, 주소, 소유 주식 수량 등을 명시한 장부를 요구하여 받아 볼 권리가 있다.
- 98.4. 회사의 실무 경영진 또는 주주의 명부를 작성하는 담당 기관은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요구서를 접수 받은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요구서를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명부를 제출 할 의무를 지닌다.
- 98.5. 이 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의사 결정권자에게 이 법 제85조 제4항에 규정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9조 회사의 동일 목적 소유자 및 그에 대한 정보

- 99.1. 아래의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회사의 동일 목적 소유자라고 간주한다.
- 99.1.1. 일정 계약을 근거로 합작회사의 결정사항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
- 99.1.2. 이 법 제6조 제14항에 규정된 회사 그룹에 포함된 회사의 경우 통합회사의 참여 회사 및 이들의 관리자
[2014년 6월 5일자 법안으로 변경됨]
- 99.1.3. 구체적 협의를 통하여 회사 경영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개인 및 회사(그룹 또는 단독)

- 99.1.4. 개인(개개인 그룹)이 결정 사항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 99.1.5. 회사 및 그 관리자
- 99.1.6. 가족구성원, 부인, 남편 기타 친족
- 99.1.7.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
- 99.1.8. 단독 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는 감시용 종합 주식을 소유하거나 의사 결정권자가 근무하는 회사, 해당 회사 참여 회사 통합의 기타 참여 회사 및 이들의 감시용 종합 주식을 소유하는 의사 결정권자
- 99.1.9. 상기 자가 고용자일 경우 이의 고용직원
- 99.2. 회사 주식을 단독 또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자는 자신이 소유한 유가증권에 대한 정보를 동일 목적 소유자가 된 이후 또는 회사 주식의 종합 및 감시용 종합 주식을 5 블럭 또는 그 이상으로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영업 3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99.3. 동일 목적 소유자가 이 조 제2항 규정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간을 초과하여 제공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 목적 소유자가 그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제14장 기타

제100조 법령 위반자에 대한 책임

100.1. 회사 법을 위반한 사실이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판사 혹은 재정관리위원회 국가 감독원은 위반자에게 아래의 행정처벌을 가할 수 있다.

100.1.1. 주식회사가 본법에 규정된 결산서, 정보를 대중 및 권한이 있는 기관, 주주에게 공개, 보고, 통보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사에게 한 달치 최저임금의 30-40배에 해당하는 벌금, 관련 의사 결정권자에게 한 달치 최저임금의 10-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100.1.2. 이 법 제6조 제4항, 제32조 제5항, 제39조 제4항, 제40조 제3항,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49조 제6항, 제49조 제14항, 제51조 제2항, 제63조 제10항, 제66조 제9항, 제67조 제2항, 제69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94조 제2항, 제94조 제15항, 제97조 제1항, 제97조 제5항, 제97조 제6항, 제98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주식회사에게 한 달치 최저임금의 20-30배에 해당하는 벌금, 관련 의사 결정권자에게 한 달치 최저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100.1.3. 이 법 제4조 제2항, 제42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관련 규칙에 의해 등록을 안 한 법인에게 한 달치 최저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 관련 의사 결정권자에게 한 달치 최저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100.1.4. 이 법 제57조 제1항, 제99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한 달치 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100.2. 이 법에 규정된 행정처벌로 위반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 뎀배렐

몽골국회의장

“

본 번역본을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영문 번역본을
www.mongolembassy.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세 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1.1. 이 법은 몽골에서의 세금의 발생, 규정, 부과, 신고, 납부, 감면, 징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규정하고 납세자 및 조세당국의 권리와 의무, 책임을 확인하여 이들간의 상호 관계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 법령

- 2.1. 조세법령은 헌법과 이 법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 된다.
- 2.2. 다만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이 법령과 다른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제3조 세금의 발생, 변경, 면제, 취소

- 3.1. 세금은 오직 국회에서 법률규정을 통하여서만 발생, 변경, 감면, 면제, 취소할 수 있다.
- 3.2. 세금의 발생, 변경, 면제, 감면, 부과, 납부와 관련된 관계는 세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에서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 3.2.1. 자유지역에서 시행될 특별 세금 체계의 규정
 - 3.2.2. 투자 법, 원유 법에 규정된 고정증서에 의한 세율 및 규모, 정부의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및 이 법 제3.1.7항에 명시된 세금 환경 고정
[2013년 10월 03일 개정]
[2014년 07월 01일 추가]

제4조 법률 용어의 정의

- 4.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4.1.1. “양도 소득”이라 함은 계약 및 협정에 따라서 개인이나 법인이 제공한 업무 또는 용역의 대가로 그의 요청에 따라서 당사자나, 제3자에게 현금이 아닌 형태로 양도한 지분을 의미한다.
- 4.1.2. “특정 종류의 세법이 무효화됨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종료”라 함은 국가가 논의 된 종류의 세법을 무효화시켜 세금 징수를 종료시킨 것을 의미한다.
- 4.1.3. “세금 전자 서류”라 함은 조세법령에 따라 전자형태로 작성, 보관, 발송, 수신된 서류 일체로 전자 보호 서명으로 인증된 서류 일체를 의미한다.
[2011년 12월 15일 개정]
- 4.1.4. “전자 서명”이라 함은 전자 서명법 제4.1.2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한다.
[2011년 12월 15일 개정]
- 4.1.5. “세금의 등록 및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라 함은 통합된 분류, 코드, 표준, 방법론, 통일시킨 서류 요건에 따라 발생, 수집, 수신, 작성, 보관된 자료, 정보, 프로그램 일체를 의미한다.
- 4.1.6. “세금 공제자”라 함은 납세자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법으로 과세, 공제하여 국고에 귀속시킬 의무를 지닌 자를 의미한다.
- 4.1.7. “세금 신고서”라 함은 서면이나 전자형태로 제출한 법인의 세금 신고서 및 개인 소득 신고서를 의미한다.
- 4.1.8. “정당한 사유”라 함은
- 4.1.8. 가. 병중
 - 4.1.8. 나. 치료 중
 - 4.1.8. 다. 간병인으로 일함
 - 4.1.8. 라. 국내외 출장
 - 4.1.8. 마. 연수 중
 - 4.1.8. 바. 공적인 동원
 - 4.1.8. 사. 전국적인 위험의 전염병으로 인해 봉쇄된 지역에 갇힘
 - 4.1.8. 화재 및 홍수, 가뭄, 폭설, 위험한 폭풍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 불가항력 사유를 의미한다.

- 4.1.9. “저항”이라 함은 세무 공무원의 공무 수행에 대하여
- 4.1.9. 가. 손으로 가격
- 4.1.9. 나. 발로 차기
- 4.1.9. 다. 밀치기
- 4.1.9. 라. 물건 던지기
- 4.1.9. 마. 물리적 저항
- 4.1.9. 바. 협박
- 4.1.9. 사. 욕설
- 4.1.9. 아. 위협
- 4.1.9. 자. 공포감 조성
- 4.1.9. 차. 그밖에 고의로 위력을 행사한 행위를 의미한다.

제2장 몽골의 세금

제5조 세금 체계

- 5.1. 몽골의 세금은 세금, 공과금, 요금(이하 “세금”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 5.2. 법령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따라 규정된 부과되어 이에 대한 대가없이 국가 및 지방 정부 예산에 납부하는 현금을 “세금”이라 한다.
- 5.3.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 5.4. 직접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 이익의 크기 및 재산액과 직접 비례하여 규정한다.
- 5.5. 간접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활동과는 무관한 일정한 물품, 서비스 종류에 대하여 규정한다.
- 5.6. 유관 기관이 개인이나 법인에 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그 때마다 받아서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 예산에 귀속시키는 현금을 ‘공과금’이라 한다.
- 5.7. 국가 소유 토지 및 지하, 지하자원, 산림, 식물, 약수, 수자원의 이용 대가로, 또는 공기, 수자원, 토지, 오염 및 사냥 대가로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터 받아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특별 기금에 귀속시키는 재산을 ‘요금’라고 한다.
- 5.8. 몽골의 세금은 몽골의 화폐단위인 투그릭으로 부과하고 납부한다.
[2009년 3월 12일 추가]

제6조 과세 대상

- 6.1. 과세 대상에는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 권한, 토지, 토지 지하층, 천연자원, 광물자원, 및 공기, 토양, 수자원의 오염 등을 포함한다.

제7조 세금의 종류와 구분

- 7.1. 세금은 세금 종류로 구분하며, 일정한 종류의 세금 관계는 이 법 및 관련 세법으로 규정한다.
- 7.2. 일정한 종류의 세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에 포함한다.
- 7.3. 국회와 행정정부에서 세율을 정해 몽골 내에서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국세로 정한다.
- 7.3.1. 사업체의 소득세
 - 7.3.2. 관세
 - 7.3.3. 부가가치세
 - 7.3.4. 특별세
 - 7.3.5. 휘발유, 디젤세
 - 7.3.6. 광물자원 용세
 - 7.3.7. [2009년 10월 30일 폐지]
 - 7.3.8. 광물자원 탐사 권 및 채광 권 면허세
 - 7.3.9. [2011년 6월 09일 폐지]
 - 7.3.10. [2011년 6월 09일 폐지]
 - 7.3.11. [2011년 6월 09일 폐지]
 - 7.3.12. [2011년 6월 09일 폐지]
 - 7.3.13. 공기 오염세
[2010년 6월 24일 추가]
 - 7.3.14. 국가수수료법 제11.2항에 규정된 국가수수료
[2011년 6월 09일 추가]
 - 7.3.15. 수자원 오염세
[2012년 5월 17일 추가]
 - 7.3.16. 원유 자원 이용세
[2014년 7월 01일 추가]
 - 7.3.17. 원유, 비전통 원유 탐사 및 이용 특별허가세
[2014년 7월 01일 추가]
- 7.4. 국회, 행정부, 아이막, 수도, 슝, 두렉의 의회에서 세율을 정하여

지방정부 예산에 귀속시키거나 지방에서 집행하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지방세로 정한다.

- 7.4.1. 개인 소득세
- 7.4.2. 소득을 일정하게 규정할 수 없는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의 개인 소득세
- 7.4.3. 부동산세
- 7.4.4. 이 법 제7.3.14항에 규정된 다른 국가수수료
[2012년 7월 6일 추가, 2011년 6월 9일 개정]
- 7.4.5. ~~수자원, 약수 사용세~~
[2012년 5월 17일 취소]
- 7.4.6. 자동차 및 원동기세
- 7.4.7. 광물자원 이외 기타 자연자원 사용을 위한 사용권 수수료
- 7.4.8. ~~자연식물 사용세~~
[2012년 5월 17일 취소]
- 7.4.9. 광범위로 분포된 광물자원 사용세
- 7.4.10. ~~수렵, 사냥료, 사냥 허가 수수료~~
[2012년 5월 17일 취소]
- 7.4.11. 토지세
- 7.4.12. ~~산림 목재 및 장작 사용료~~
[2012년 5월 17일 취소]
- 7.4.13. 종기세
- 7.4.14. 수도(울란바타르 시)세
- 7.4.15. 애견세
- 7.4.16. 상속세, 증여세
- 7.4.17. 폐기물 수수료
[2012년 5월 17일 추가]
- 7.4.18. 환경 자원 사용료
[2012년 5월 17일 추가]

제8조 세율 결정

- 8.1. 세율은 국회 및 국회가 권한을 부여한 정부, 아이막 및 수도 의회 솜 두렉의 의회에서 법령에 따라 각각 정한다.
[2012년 5월 17일 개정]
- 8.2. 이 법 제8.4항, 제 8.6항 이외의 세율은 국회가 정한다. .
[2009년 7월 16일 추가, 2011년 6월 9일, 2011년 12월 23일 각각 개정]
- 8.3. 정부는 이 법 제 7.4.5항에 규정된 수도 사용세 및 제7.4.10항, 제7.4.12항에 규정된 세율을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2011년 6월 9일 취소]
- 8.4. 정부는 이 법 제 7.3.13항에 규정된 공기 오염세, 공기오염세 및 국가 수수료법 제 6.2항에 규정된 세율을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본 규정 순번은 2009.7.16일자 법안으로 변경, 내용은 2010.6.24일, 2011.6.9일자 법안으로 각각 추가, 2011.12.23일자 법안으로 개정]
- 8.5. 아이막 의회 및 수도 의회는 이 법 제7.4.2-7.4.6, 7.4.8, 7.4.10-7.4.14, 7.4.16항에 규정된 및 국가 수수료법 제6.3항에 규정된 세율을 국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정한다.
- 8.6. 아이막 의회 및 수도 의회는 이 법 제7.4.7항, 7.4.15항에 규정된 세율을 정한다.
[2011년 5월 17일 추가]
- 8.7. 솜 의회 및 두렉 의회는 이 법 제7.4.17항에 규정된 세율을 정한다.
[2012년 5월 17일 추가]

제9조 감세, 면세 형태

- 9.1. 법령에 따라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감세 및 면세 혜택을 준다.
 - 9.1.1. 부과된 세금을 삭감한다.
 - 9.1.2. 세율을 인하한다.
 - 9.1.3. 규정된 하한액에 이르지 못한 소득, 재산, 물품, 업무, 서비스는 면세한다.

- 9.1.4. 납세자에 면세한다.
- 9.1.5. 과세 대상의 일부를 면세한다.
- 9.1.6. 법령이 정한 기타 혜택

제10조 납세 의무의 종료 및 승계

- 10.1. 납세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종료된다.
 - 10.1.1. 해당 세법의 폐지
 - 10.1.2. 해당 세금의 완납
 - 10.1.3. 납세자가 해당 종류의 세금에서 전적으로 면제된 경우
 - 10.1.4. 납세자가 사망 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 10.1.5. 납세자(법인)가 폐업된 경우
- 10.2. 사망자 또는 사망으로 간주된 개인의 납세 의무 및 권리는 상속자에게 승계한다.
- 10.3. 조직이 변경된 법인의 미납액의 납세 의무 및 책임은 조직 변경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법인에게 승계한다. 해당 법인이 독립하거나 분리된 경우 과세 사항에 따른 비율이 맞추어 납세 의무도 승계한다.
- 10.4. 법인의 폐업되었다면 청산위원회, 부도처리 되는 경우에는 채권단이 미납 세금을 당해 법인의 재산에서 법규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고 이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

제11조 세금 분쟁해결기간

- 11.1. 세금의 추가 부과, 벌금, 과태료 부과 시효는 5년이며, 몽골 민법에 규정된 분쟁해결 기간은 세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11.2. 세금, 벌금, 과태료의 납무는 분쟁해결 기간과는 무관하다.
- 11.3. 이 법은 제11.1항에 규정된 분쟁해결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시작된다.
 - 11.3.1. 세법에 따라 연말에 세금이나 신고서를 지불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세금이나 신고서의 경우, 신고서를 연말에 1회 제출하고 세금을 완납해야 하는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 11.3.2. 세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이나 신고서를 지불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경우, 당해12월이나 연말 세무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완납해야 하는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 11.3.3. 매출 발생후 일정 기간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에 규정된 세금 종료와 공제하는 세금의 경우 해당 종료의 세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 11.3.4. 세무 신고서 제출없이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의 경우 해당 세법에 규정된 세금을 완납해야 하는 만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 11.4. 조세당국이 이 법 제54조에 규정된 통지서를 발행한 날부터 분쟁해결 기간은 계산은 중단되고 그 날로부터 새로 계산한다.
- 11.5. 납세자가 활동을 중지하였거나 폐업된 경우 활동이 중지된 날부터 분쟁해결 기간 계산된다.
- 11.6. 세무감사 과정에서 추가 납부하도록 확정된 세금, 벌금, 과태료의 분쟁해결 기간은 세무공무원이 확정된 서류가 효력이 발생된 날부터 시작한다.

제3장 납세자 및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납세자

- 12.1. 조세법령에 따라 과세되는 소득과 재산, 물품, 일정한 권한, 또는 업무나 용역 제공, 토지나 그 지하층, 천연자원, 광물자원의 이용, 공기, 수자원, 토양의 오염으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닌 개인 및 법인은 납세자가 된다.
- 12.2. 해당 종류의 세법으로 납세자가 되는 개인, 법인을 정확히 확정한다.

제13조 납세자 등록

- 13.1. 세법으로 납세 또는 세금 공제의 의무를 지닌 개인과 법인은 조세당국에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13.2.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신설된 법인은 등록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로부터 영업일 14일 이내에 관할 조세당국에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13.3. 소득이 아닌 기타 과세 대상의 소유자, 점유자는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당해 대상물의 소유 또는 점유후 한 달 이내에 관할 조세당국에 납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 13.4. 조세당국은 납세자, 세금 공제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등록대

장을 만들고 다음과 같은 서류와 정보를 보관한다.

- 13.4.1. 납세자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증번호 또는 장부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 13.4.2. 납세자 법인의 상호, 주소, 경영진의 약식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 13.4.3. 법인이 납세자로 등록한 연월일, 영업 종목
- 13.4.4. 부동산 시세, 토지점유상황, 고정재산, 유동재산의 크기, 직원 수 등을 기재하여 확인한 신고서 사본
- 13.4.5. 투자자 및 분점의 수 및 성명, 위치, 주소, 전화번호
- 13.4.6. 납세자의 납부할 세금명, 종류, 은행계좌번호
- 13.4.7. 대차대조표, 서류, 통지서
- 13.4.8. 납세자에 대해 시행한 조세당국의 감사지침, 신고서, 위반사항에 대한 서류, 통지서, 요구서
- 13.5. 납세자는 부동산의 매각,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관할 조세당국에 통지한다.
- 13.6.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납세자는 국가등록증과 등록대장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 후 영업일 20일 이내에 조세당국에 통지하고 등록, 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13.7. 납세자에게 부여한 고유번호는 납세자, 세금 공제자가 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 정보, 세관 신고서, 요금 및 기타 필요 서류에 반드시 기재한다.
- 13.8. 납세자로 미등록하더라도 과세, 납세, 공제 의무 및 이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 13.9. 납세자 등록 규정은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제14조 납세자의 권리 및 법익의 존중

- 14.1.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은 권리 행사시 납세자의 권리와 법익을 존중하고 신뢰를 제공한다.
- 14.2.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이 법에 따른 과세, 납세에 대한 감사, 세액 확인, 납세자에 대한 감사, 세금 징수와 관련되지 아니한 문제로 납세자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금한다.
- 14.3. 조세당국, 세무공무원 및 조세당국의 다른 직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개인기밀법, 기관기밀법에 보장된 납세자의 기밀을 보호해야 하며, 오직 아래에 언급된 국가기관의 공직자에게만 조세당국장의 결정으로 공개할 수 있다.

- 14.3.1. 세법에 따라 공무집행중인 세무 공무원, 조세당국의 다른 직원
- 14.3.2. 세법위반사항의 감사, 조사, 결정할 의무를 지닌 수사관, 검사, 판사에게 해당 위반사항과 관련된 문제
- 14.3.3. 몽골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의무조항에 의거 다른 나라의 조세당국의 관련 공직자
- 14.4. 이 법 제14.3조항의 경우가 아니면 납세자의 서면 승인을 근거로 법으로 금하지 않은 정보, 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 14.5. 세법 위반 사항이 증빙되었거나 조세 포탈한 자, 또는 수배중인 납세자에 대해 조세당국은 이 법 제14.4조항에 규정된 승인없이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

- 15.1.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은 법령으로 확인된 납세 의무 이행시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15.1.1. 조세법령 소개
 - 15.1.2. 조세법령의 준수, 세무 의무의 확인, 신고서, 정보, 제출과 관련된 지침, 방법론, 소책자, 양식을 제공한다.
 - 15.1.3. 조세법령, 지침, 방법론에 대하여 교육을 추진한다.
 - 15.1.4. 세무 의무 이행과 관련된 문제로 납세자에게 단체 또는 개인으로 자문을 하거나, 자문의 기회를 제공한다.
 - 15.1.5. 대중정보매체, 조세당국의 전자용지를 통하여 교육, 홍보, 정보 제공 사항을 조직, 출판한다.

제16조 납세자에게 전문적인 자문 제공

- 16.1. 납세자에게 법령으로 규정된 납세 의무의 이행, 권리 및 법익 보호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보유한 등록된 자문관의 서비스 제공 관계는 법으로 규정한다.

제17조 납세자의 권리

17.1.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7.1.1. 조세법령을 이행하거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 및 과세, 납세, 신고 절차, 양식을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17.1.2. 조세법령에 규정된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7.1.3. 법령에 따라 납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7.1.4. 초과 납세액을 환급 및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을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

17.1.5. 본인이나 대리인, 전문자문관을 통해 권리 및 법익을 보호하고 세무감사시 직접 참가할 수 있다.

17.1.6. 조세당국이 발행한 공문, 결정서, 기타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근거가 없거나 법에 부합되지 않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령후 30일 이내에 진정서를 행정당국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17.1.7. 과세, 납세, 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설명받을 수 있다.

17.1.8.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에게 조세법령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조세당국의 부당행위,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법규정에 따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17.1.9.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의 불법행위, 결정에 대한 진정서를 직속 상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정서 제출이 과세, 벌금, 과태료 납부를 중단하는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17.1.10. 조세법령으로 부과된 의무 이행, 권리 행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 자문관의 도움과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7.1.11. 투자법 규정에 따라 고정증서를 소유할 경우 고정증서의 유효기간의 세율은 고정된 세금의 고정된 세율보다 초과 납부를 금지한다.

[2013년 10월 3일 추가]

17.1.12.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리

[2013년 10월 3일 개정]

제18조 납세자의 의무

18.1. 납세자는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8.1.1. 과세 대상 및 이에 따른 세금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8.1.2. 과세 및 납세 관련 정산, 정보, 신고서를 작성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조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1.3. 초기 장부 및 회계등록 장부를 규정 및 회계등록표준에 따라 작성하고 재무 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8.1.4. 조세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조세당국의 시정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18.1.5. 조세당국의 공문, 결정서를 인정하면 서명을 하며,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감사를 행한 조세당국에 영업일 10일 이내에 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8.1.6. 타인에게 제공한 노동 수당 및 양도소득에 부과될 세금을 정확히 공제하여 규정된 기간 내에 예산에 귀속 시켜야 한다.
- 18.1.7.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은 생산, 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특별 면허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 사실을 조세당국에 신고하여 납세자 등록증에 표시하여야 한다.
- 18.1.8. 몽골 표준안에 맞는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18.1.9.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 및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서류를 조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8.1.10. 성명, 주소, 도장, 국가 등록증, 거래 계좌, 개인 계좌, 서명을 타인에게 유출시켜 탈세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 18.1.11. 관련 기관에서 발급받은 특별 면허를 개인 이나 법인에게 임대 및 매각하는 경우 관할 조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18.1.12. 은행 계좌의 개설 및 폐지에 대한 정보를 즉시 관할 조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18.1.13. 세무감사에 요구되는 회계서류 및 기타 서류와 자료를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이 요청대로 제출하여 세무감사받게 한다.
- 18.1.1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4장 몽골의 조세당국

제19조 조세당국 체계

- 19.1. 조세당국은 국세청, 수도, 각 아이막 및 두렉의 세무국, 세무과, 솜의 세무계, 세무공무원으로 구성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19.2. 국세청은 국가 예산 수입, 감사, 교육, 등록정보, 출판 파트로 구성할 수 있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19.3. 국세청, 수도 및 아이막의 조세당국 산하에 납세자와 조세당국의 분쟁 해결권이 있는 세무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정부가 정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제20조 조세당국의 상징

- 20.1. 조세당국은 고유의 상징기호를 가지고 있으며 이의 견본, 사용 규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제21조 조세당국의 규칙

- 21.1. 조세당국의 규칙은 정부가 정한다.

제22조 조세당국의 기능

- 22.1. 조세당국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이행한다.
- 22.1.1. 조세법령의 이행업무를 조직하고 납세자에게 정보제공 및 자문을 하며 교육, 홍보활동을 한다.
 - 22.1.2. 조세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한다.
 - 22.1.3. 국가예산 및 지방예산을 구성한다.

제23조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의 업무 원칙

23.1.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은 업무 수행시 법을 존중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납세자의 권리와 법익을 존중하며 하급기관은 상급기관에 직접 지배받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이 법을 존중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칙의 이행

- 24.1.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은 전권 수행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과 법률에 따라 제정된 기타 법적인 서류를 근거로 근무해야 한다.
- 24.2. 개인과 법인, 공무원은,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이 법률에 따르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압력행사하는 것을 금하여, 이를 위반한 자는 관련기관에 진정하여 해결케 한다.
- 24.3.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의 전권에 해당되는 문제에 대해 법률에 따르는 권리가 없는 자가 결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 24.4. 법률로 권리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가 과세, 감세, 면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타인을 대신해 의무를 지는 것은 금지된다.
- 24.5. 법인 및 개인은 조세법령을 전국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이의 이행과 관련하여 조세당국의 지휘부에서 법령에 상응하도록 제정한 규정, 지침, 방법론을 준수해야 한다.

제25조 납세자의 권리와 법익을 존중하는 원칙의 이행

25.1. 조세당국 및 세무공무원은 이 법 제 14조항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와 법익을 존중하는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

제26조 조세당국의 예산

26.1. 조세당국의 활동 및 투자 비용은 예산에서 조달한다.

제27조 국가조세기관의 지휘체계 및 권한

- 27.1. 국가조세기관은 통일된 중앙 관리 체계를 가진다.
- 27.2. 국세청은 재정, 예산 문제를 담당한 국무위원의 지휘를 받고, 수도 및 아이막의 세무국, 세무과는 국세청의 지휘를 받으며, 두렉의 세무과, 솜의 세무 공무원은 수도 및 아이막의 세무국, 세무과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27.3. 국세청은 각급 조세당국의 업무가 전문성, 숙련성을 갖추도록 예산을 집행하며,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27.4. 국세청장은 수도 및 아이막 세무국장, 세무과장을, 수도의 세무 국장은 두렉의 세무과장을 해당 행정구역의 기관장과 협의하여 임명, 해임하여야 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27.5. 국세청장 및 아이막, 수도, 두렉의 세무국장, 세무과장은 경제, 회계, 등록분야 전문가이며, 조세당국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 세무공무원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공무원법 제17.1조에 따라서 선발하여 임명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27.6. 국세청장은 세무공무원이며, 이 법 제29조에 규정된 세무공무원의 권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2008년 12월 19일]
- 27.6.1.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직하며,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에 감사를 시행
- 27.6.2. 이 법 및 기타 조세법령으로 부여된 권한 내에서 국민전체가 준수해야 할 규정, 지침, 방법론을 승인하여 준수하게 하며, 안내문을 발행
- 27.6.3. 세무공무원의 권한 박탈 및 효력 정지 및 벌금 부과권한
- 27.6.4. 조세법령에 따르는 권한내에서 명령서를 발행
- 27.6.5. 조세법령의 초안 작성에 참여하며, 이들을 조세당국에서 시행할 방법, 형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여 정부와 국회에 보고
- 27.6.6. 소득 및 재산에 이중 과세 방지, 탈세 예방에 관한 국제 조약 마련에 의견을 개진
- 27.6.7.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 결정서 및 기타 결정사항을

-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사, 변경, 취소.
 27.6.8. 국세청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감사하여 검토, 승인, 변경, 취소
[2008년 12월 19일 개정]
 27.6.9. 국가 조세기관 직원들을 임명, 해고, 전보, 포상.
 27.6.10. 국가 조세기관 예산 및 기금의 처분권한.

제28조 국가 조세기관의 전권

- 28.1. 조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8.1.1. 몽골 영토내에서 조세법령을 준수하는 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 28.1.2. 조세법령을 준수하는 방법, 지침, 정보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고 자문을 하는 등으로 봉사할 수 있다.
 - 28.1.3. 납세자가 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여 기간 내 납부하였는 지 여부를 감독하는 업무를 조직할 수 있다.
 - 28.1.4. 납세자에게 조세법령에 따르는 감세, 및 면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 28.1.5. 납세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망을 구축하고 세무감사, 세금징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 28.1.6. 초기 장부 및 회계등록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소득 및 지출을 입증 할 수 없게 된 납세자에게 법정규정에 따라 과세 할 수 있다.
 - 28.1.7. 규정기간 내에 납세 하지 않은 법인의 은행계좌에 대해 납세종료 시까지 인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 28.1.8. 미납 세금의 납부, 세금 징수 업무를 이 법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 있다.
 - 28.1.9. 초과 납부한 세금은 다음 달, 다음 분기, 다음 해의 세금에서 공제하거나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회계처리 후 10일 이내에 되돌려 줄 수 있다.
 - 28.1.10. 세금, 벌금 및 과태료의 납부를 회피한 납세자, 세금 정보, 신고서 및 세무감사에 필요한 장부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 세무감사로 적발된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법에 규정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28.1.11. 세무공무원 및 하급 조세당국의 결정이 근거없다고 간주되

면 무효 또는 변경할 수 있다.

28.1.12. [2012년 12월 27일 폐지]

28.1.13. 세무감사시에 필요한 정보, 연구자료 및 기타 관계 서류를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28.1.14. 전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8.1.15. 전자 세무감사를 할 수 있다.

28.2. 조세당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제소할 수 있다.

28.2.1. 조세법령을 중대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납세자의 사업활동에 대해 위반 사항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 중지

28.2.2. 납세자가 법령으로 금지된 생산 및 서비스업을 행하여 취득한 소득의 압수 문제

28.2.3. 납세자가 법령으로 금지하지 아니하였지만 허가없이 생산 및 서비스업을 행하여 취득한 소득의 압수 문제

28.2.4. 납세자의 효력없는 계약이나 협정, 또는 불법 행위로 취득한 소득의 압수 문제

28.2.5. 세무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하여 방해 및 항거하였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하였거나, 신체와 건강에 피해를 야기한 문제

28.2.6. 법령에 규정된 그 밖의 문제

제29조 세무공무원의 전권

29.1.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1.1. 과세 및 납세와 관련된 회계장부, 신고서, 결산서, 프로젝트 및 기타 회계서류를 감사하며, 설명서와 소명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위반사항을 지적한 공문서, 결정서,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29.1.2. 세무감사시 필요한 서류 사본 및 은행 거래 증명서를 납세자의 거래 업체, 기관, 개인 및 회계기관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29.1.3. 과세 대상의 은폐사실을 증명할 서류 및 재산을 납세자로부터 임시로 압수, 가압류할 수 있으며, 미납 세금을 납부시킬 목적으로 재산에 담보를 설정 할 수 있다.

29.1.4. 소득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과세 대상, 그것을 증명할 회계 서류 및 기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납세자의 건물, 창고에 대하여 위치에 상관없이 출입하여 검사, 수량 확인,

- 29.1.5. 공제자가 되는 개인 및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노동수당 및 양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 공제하여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 당해인의 재산에서 징수할 수 있다.
- 29.1.6. 조세법령을 위반한 납세자에게 이 법 제74조, 제75조항에 규정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 29.1.7. 납세자가 초기장부 및 경리등록장부를 작성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행위,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여 서류를 구비하는 업무가 법령에 따라 행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전문적인 방법을 자문할 수 있다.
- 29.1.8. 과세, 납세에 대한 감독을 하며 세금 징수시 몽골의 세법 및 기타 법령 준수 여부의 권한을 가진다.
- 29.1.9. 국가공무원법 세무공무원의 윤리를 엄수한다.
- 29.1.10. 세금, 요금, 수수료, 벌금, 과태료를 법정 기간내에 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다.
- 29.1.11. 세무 감사 공문서, 결정서 및 기타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을 감독한다.
- 29.1.12. 납세자의 법익을 존중하고 과세, 납세 업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령테두리에서 자문과 지원을 한다.
- 29.1.13. 법률에서 정한 납세자의 기밀을 유지한다.

제30조 세무공무원의 금지사항

- 30.1.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한 공무원의 업무 금지사항 이외에도 세무공무원은 업무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할 수 없다.
 - 30.1.1. 지휘명령과 임명없이 세무감사를 하는 행위
 - 30.1.2. 세무공무원의 공문서, 결정서 및 기타 서류의 인쇄지, 양식을 임의로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효력없는 용지, 허위용지를 사용하는 행위
 - 30.1.3. 기명날인으로 최종 확정하지 아니한 세무공무원의 공문서, 결정서 및 기타 서류, 그리고 신고서 용지를 납세자에게 사전에 누출하거나 강제로 인정하게 하는 행위
 - 30.1.4. 기명날인하여 최종 확정한 공문서, 결정서 및 기타 서류, 신고서 용지를 수정, 변경하는 행위
 - 30.1.5. 법준수 원칙을 위반하고 다른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행위
 - 30.1.6. 납세자의 권리와 법익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

- 30.1.7. 세무공무원 윤리를 위반한 행위
- 30.1.8. 세무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납세자의 기밀 정보를 이 법 제 14조 규정 외에 제3자에게 누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30.1.9. 세무공무원에게 권한이 없거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연장이 없음에도 세무 신고서의 접수, 과세, 감사하는 행위
- 30.1.10. 공문서, 결정서 및 기타 서류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그 감독을 약화시키는 행위
- 30.1.11. 납세자의 경리등록장부의 작성, 세무신고서, 회계 신고서 작성, 회계 감사하는 행위
- 30.1.12. 납세자에게 탈세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도록 조언, 권유, 강요, 요구하는 행위
- 30.1.13. 납세자가 구두나 서면으로 요청한 의견, 요청서, 이의서, 정보를 조세당국의 종합기밀등록시키지 않았거나, 이 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의견, 요청서, 이의서, 정보를 검토하여 해결하는 행위
- 30.1.14. 조세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또는 세금 은닉, 탈세에 대한 진정서, 이의서, 정보를 수령했다면 본인이 조사하거나 조사하는 일을 지휘하는 행위
- 30.1.15. 고정증서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고정증서 유효기간에 세율은 고정된 세금의 고정된 세율보다 초과 납부 요구
[2013년 10월 3일 추가]

제31조 세무 등록 및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

- 31.1. 국가 조세당국은 세무 등록 및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31.2. 세무 등록 및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은 용도를 가지고 있다.
 - 31.2.1. 과세, 납세, 징수에 대한 감사 및 신속한 지휘 체계 확보
 - 31.2.2. 세무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직
 - 31.2.3. 조세법령의 전국적인 준수
 - 31.2.4. 조세당국 업무의 투명성 확보
 - 31.2.5.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신속한 확보
- 31.3. 조세당국은 이 법 제31.1조항에 규정된 통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있다.

제32조 정보, 문서 수집 및 감사 규정

- 32.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세금산정, 세금징수와 관련된 정보, 문서의 수집, 감사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32.1.1. 세무감사 임명장, 일반 업무 및 특수 업무 안내 지침, 세무공무원 신분등을 보여주고 업무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 32.1.2. 관련 서류, 자료를 임시 수령시 제3자 증인을 참관시켜 표시를 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 32.1.3. 증빙이 될만한 문서는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한다.
 - 32.1.4. 설명서, 문익는 서면을 제공받으며 질문, 면담을 한경우 이를 표기 하고 관련자가 서명하도록 한다.
- 32.2. 필요한 정보, 문서를 복사시 타인의 복사기를 사용했다면 그 비용은 시장가격이나 상호 합의하여 지불한다.
- 32.3. 조세당국의 세무감사 팀장은 세무감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의 업무를 매일 감독하며 전문지식과 방법을 지휘 감독한다.

제33조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이 작성하는 문서

- 33.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과세, 납세감독, 세금 징수와 관련된 전권 수행시 통보, 공문서, 요구사항, 통지서, 결정서, 계약서, 업무 기록(이하"기록"이라 한다)을 작성한다.
- 33.2. 이 법 제33.1조항 규정된 문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며, 납세자는 이들 문서에 기재된 요건을 이행해야만 한다.
 - 33.2.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이 법 제28조, 제29조에 규정된 전권 범위에서 납세자 및 기타 기관을 소환하는 경우 통보서를 작성한다. 통보서에는 조세당국의 기관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성명, 법적 요건 이행기간 및 통보서 발행일 및 송달 연월일을 기록한다.
 - 33.2.2.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조세법령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액, 산정, 재산 가압류, 이 법 제74조에 규정된 책임 부과시 공문서를 작성하며 이 공문서에는 조세당국의 기관장 및 세무공무원의 성명, 서명, 위반사항 관련 문장, 결정사항의 근거, 해당 공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 33.2.3.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조세법령 위반의 사유와 조건을

시정시킬 목적으로 요구서를 작성한다. 이 요구서에는 조세당국의 기관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성명, 서명, 위반사항에 대한 문장, 위반을 유발한 사유 및 조건을 시정하여 답변할 기간, 본 요구서 작성하고 송달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 33.2.4. 납세자가 기간내에 납세하지 않았거나 간접 과세된 세금을 징수할 때는 통지서를 작성한다. 통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된 경우에는 이 법 제54조에 따라 작성하며 납세자의 거래은행에 송달시에는 이 법 제63조에 따라 작성한다.
- 33.2.5. 임금, 기타 소득에서 체납 세금 징수시에는 납세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법인에게 대금청구서를 송달한다. 이 청구서에는 납세자의 이름, 청구할 세金的 종류, 규모,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조세당국, 은행명, 계좌명, 납세자들 대신하여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자의 이름, 주소, 조세당국의 기관장, 또는 세무공무원의 성명, 서명, 납세자의 주소, 징수할 체납 세金的 규모, 대금통지서를 작성하고 전달한 연월일, 회신 통지 기간을 기록한다.
- 33.2.6. 조세당국은 조세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거액의 과세대상소득을 은폐했거나 다른 방법으로 탈세한 자에게 형사 입건하도록 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결정서에는 형사입건 위반에 대한 내용, 관련 서류들, 조세당국 기관장 및 세무공무원의 성명, 서명, 해당 위반자의 설명서, 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자에게 공개한 연월일을 기록한다.
- 33.2.7.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체납세금 징수목적으로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합의하도록 한다.
- 33.2.8. 세무공무원이 전권 범위내에서 납세자의 건물, 창고에 대한 수색, 산정, 촬영, 재산 가압류, 담보설정 행위를 하거나 납세자로부터 설명서 및 해명서 받거나 질문, 대화시에는 기록을 해야 하며 이 기록에는 세무공무원의 성명, 납세자의 주소, 연월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기록시 참관했던 사람들의 서명을 받는다.
- 33.3. 이법제33.1조항에 규정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직접 전달했거나 납세자가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해당 문서를 납세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며, 납세자의 거주지는 관련 등록기관에 최근에 등록한 주소지로 정한다.

제34조 공문서, 결정서 작성의 근거

- 34.1. 세무공무원이 이 법 제47.1조, 제48.1조, 제67조, 제74조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는 규정, 제33.2.3조항 규정을 근거로 결정서를 작성하는데, 이 문서들은 기록부분 및 확정 부분으로 구성된다.
- 34.2. 세무공무원의 공문서와 결정서에(이하 “공문서와 결정서”라 한다.) 세무감사를 행한 세무공무원 및 납세자가 서명을 하고 조세당국의 세무감사를 책임진 과장이나 부서장이 검토 승인하여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34.3. 납세자가 공문서와 결정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경우라도 이 법 제18.1.5조 규정에 따라 설명서의 제출여부와 상관없이 이것을 납세자에게 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게 공문서와 결정서를 전달한 것을 기록해 둔다.
- 34.4. 공문서와 결정서는 각각 등록번호를 부여받는다.
- 34.5. 세무공무원은 공문서와 결정서를 3부 작성하여 1부는 감사 서류에 첨부하고 1부는 납세자에게 주며, 1부는 대장에 보관한다.

제35조 공문서와 결정서의 이행 보장

- 35.1. 조세당국은 세무공무원의 공문서와 결정서가 이행되도록 감독한다.
- 35.2.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이 법 제63조, 제64조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 불가능한 공문서와 결정서의 이행을 촉구하게 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 35.3. 관련기관, 공무원이 이 법 제33.2.6항에 규정된 결정서를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반자는 행정책임을 진다.

제36조 공문서와 결정서의 변경, 취소

- 36.1. 세무공무원의 공문서와 결정서는 해당 조세당국의 기관장 명령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이유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36.1.1. 납세자의 이의
 - 36.1.2. 세무공무원의 직속 상관이 해당 세무공무원의 공문서와 결정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한 경우
 - 36.1.3. 공문서와 결정서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 36.2. 조세당국의 기관장은 이 법 제36.1조에서 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실무팀을 임명, 작업하도록 하는 결정서를 발행 할 수 있다.

제37조 세무공무원의 계급

- 37.1. 세무공무원에게 다음과 같은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 37.1.1. 세무 정식 자문관
 - 37.1.2. 세무신용 자문관
 - 37.1.3. 세무 자문관
- 37.2. 세무공무원에게 계급을 부여하는 규정은 재정, 예산 담당 국무위원이 승인한다.

제38조 세무공무원의 임금

- 38.1. 국가는 세무공무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 38.2. 세무공무원의 임금은 월급, 근무평점 보너스, 근속연한, 계급, 학위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 38.3. 세무공무원에게 매달 지급하는 근무평점 보너스는 월급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 38.4. 정부는 본법 제38.2조항에 규정된 근무평점 보너스 지급 절차를 정한다.

제39조 세무공무원의 권리 보장

- 39.1. 세무공무원은 제복과 배지를 사용하며 이들 비용은 국가예산에서 충당한다.
- 39.2. 제복, 배지 견본 및 사용법, 사용기간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39.3. 기타 기관과 개인이 세무공무원과 유사한 제복과 배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 39.4. 세무공무원은 공무 수행중 노동력을 임시상실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타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와 유가족에게 다음과 같은 보상금과 월급의 차액을 지급한다.
- 39.4.1. 노동력 임시 상실의 경우 치료 수당, 월급의 잔액
 - 39.4.2. 장애인이 된 경우 장해 수당, 월급의 잔액
 - 39.4.3. 사망시 유족에게 고인의 3년간 월급에 해당하는 규모의 일시보상금

제40조 세무공무원의 해고

- 40.1. 세무공무원은 다음의 근거로 해고할 수 있다.
 - 40.1.1. 상습적 규율위반
 - 40.1.2. 법령 및 세무공무원 윤리를 중대하게 위반
 - 40.1.3. 범죄사실이 증명됨
 - 40.1.4. 몽골국적 상실

제41조 징수관

- 41.1. 세무공무원 권한이 부여받기 전1년간 수습기간으로 근무하는 세무직원을 징수관이라 한다.
- 41.2. 징수관은 독립적인 세무감사 권한이 없다.

제42조 분쟁조정위원회

- 42.1. 분쟁조정위원회는 세무 공문서 및 결정서와 관련하여 조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오직 납세자의 진정에 의하여 검토, 심의한다.
- 42.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총장, 위원들로 구성된다.
- 42.3. 국세청 산하 분쟁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해 11명 정원으로 하며, 재정 및 예산담당 국무위원이 승인하며, 아이막과 수도의 세무과, 세무국 산하 분쟁위원회는 7-9명 정원으로 국세청장이 각각 승인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42.4.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에는 조세 및 법무를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조세기관, 비정부기관의 대표를 포함한다. 이들의 임명시 해당 기관 간부들과 협의한다.
- 42.5.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원들은 회계, 경제, 재정, 법무 전공자이어야 하며, 60%이상은 세무공무원 경력자로 한다.
- 42.6.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정족수는 재적위원 2/30이상의 출석으로 하며,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결에 따라 의결한다.
- 42.7. 분쟁조정위원회는 세무공무원의 공문서와 결정서의 변경, 취소, 확정 등 어느 한 가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결정이 조정명령이 된다.
- 42.8. 분쟁조정위원회의 명령서는 관련 단계의 조세당국 기관장령으

로 확정한다. 조세당국장이 확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유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로 환송한다.

- 42.9.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법 제42.8조항에 규정된 조세당국 기관장의 설명서를 심의하여 이것이 승인되면 명령서를 변경하지만,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조세당국에 보고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42.10.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사유 및 원인을 시정시킬 목적으로, 또한 조세법령의 위반을 예방할 목적으로 안내서를 발행할 권리가 있다.

제5장 과세, 납세, 신고

제43조 과세, 납세, 신고

- 43.1. 납세자는 관련 서류, 등록을 근거로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과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세금 신고서에 명시하고 현금이나 비현금 형태로 납세한다.
- 43.2. 본법 제43.1조 규정과는 별도의 형태로 과세, 납세할 규정은 투자법과 관계 세법으로 정할 수 있다.
[2013년 10월 03일 개정]
- 43.3. 세금 신고서는 전자 문서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국세청장이 승인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43.4. 납세자가 조세당국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전자 신고서 포함)를 국가공식문서 기록대장규정에 따라 접수, 등록, 의결된다.
- 43.5. 세금 신고서의 제출, 납세 기간은 해당 종류의 세법으로 확정하며 신고 와 납세 기한은 동일하다
- 43.6. 납세, 신고 기간이 주말 휴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 영업일에 납세 및 신고를 하도록 한다.
- 43.7. 법으로 과세, 공제, 납세 의무를 지닌 자에게는 의무 이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는다.
- 43.8. 조세법에 정한 기한내 납세하지 않은 세금 및 추가 부과액, 지체금, 이자는 이 법 및 해당 종류의 세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른다.
- 43.9. 납세자는 간접세를 해당 활동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선납한다.

43.10. 과세 대상물이 청구된 날, 청구서가 작성된 날, 지불된 날 중에서 언제를 과세일로 정할 것인지는 해당 종류의 세법으로 정한다.

제44조 세금과 관련된 문서의 구비, 등록, 보관

- 44.1.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과세 대상물, 납세액을 산정할 서류를 구비하는데, 법인은 회계장부를, 개인은 일반 등록장부를 작성한다.
- 44.2. 이 법 제44.1조항에 규정된 문서를 외국어로 작성했다면 납세자가 몽골어로 번역하여 제출할 의무를 지니며 번역과 관련된 비용은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 44.3. 납세자 및 납세자의 서류의 구비, 등록장부 작성의 의무를 지닌 자는 해당 서류와 등록을 납세 기한의 종료일까지 몽골내에 보관할 의무를 지닌다.

제45조 세금 신고서작성과 제출

- 45.1. 납세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 규격, 양식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조세당국에 제출한다.
- 45.2. 법령에 따라 감세, 면세받는 납세자라도 세금 신고서제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세금 신고서가 해당인의 감세, 면세의 기본 서류가 된다.
- 45.3. 세금 신고서에는 법인의 책임자 및 개인 납세자, 또는 법적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 45.4.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제출에 참여한 자가 해당 신고서에 서명을 한다. 많은 여러 명의 관리인이 신고서 작성에 참여했다면 경리부장이 신고서에 서명을 한다.
- 45.5. 과세 대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는 이것에 대한 문서를 양수자에게 즉시 제공하며, 조세당국이 요청시 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제46조 세금 신고서접수

- 46.1. 조세당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법정 기간내에 제출하고 납세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46.2. 조세당국은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 제출 등록을 감독하여 안정화, 정규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6.3.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세금신고서 접수시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한다.
- 46.3.1. 법인의 경우 회계장부, 개인의 경우 소득 및 세금 등록장부를 근거로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46.3.2. 신고서가 승인된 규격, 양식에 따라 수정한 흔적없이 작성되어 납세자 및 관련자의 서명, 직인이 날인되어 정식문서가 되었는지 여부
 - 46.3.3. 제출 연월일을 신고서에 표시했는지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신고서 제출일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 이를 표시함.
- 46.4.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신고서 접수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다.
- 46.4.1. 회계장부 및 세금 신고서 지표들이 일치하는지 여부
 - 46.4.2. 세금 신고서에 명시된 숫자가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계산 착오 여부
 - 46.4.3. 신고서에 명시된 감세, 면세 사항이 법령에 따라 계산되었는지 여부
 - 46.4.4. 신고서에 명시된 세금을 기한내 납부했는지 여부
 - 46.4.5. 신고서에 명시된 체납세금, 초과액이 조세당국의 등록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 46.4.6. 통합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조세당국의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납세자의 신고서와 관련되는 담보물의 정보가 포함되어있는지 여부
- 46.5. 신고서 수령시 적발된 위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정하도록 한다.
- 46.5.1. 미비 사항을 보충하도록 하여 합법적으로 확정하고 신고서에 명시된 계산 착오를 납세자가 수정하도록 한다.
 - 46.5.2. 신고서에 명시된 과세액,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한다.
 - 46.5.3. 회계장부를 기록하지 않았거나, 과세액 산정 부분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한 세무공무원의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거나, 과세액을 잘못 산정한 것이 적발되면 세무감사에 대한 결정서를 작성하여 책임 경영진에게 전달한다.

제6장 세무 감사

제47조 세무감사

- 47.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몽골의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기간내에 납세하였는지 여부를 감사 한다.
- 47.2. 세무감사는 조세당국이 수행한다.
- 47.3.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 정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을 하며, 위반과 미비점을 시정시킬 목적으로 전권을 이행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감사활동을 한다.
 - 47.3.1. 납세자가 조세법령을 준수하여 과세액을 스스로 정직하게 산정하여 납세할 환경을 조성하며, 회계등록장부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세무 신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납세하는지 여부를 조사
 - 47.3.2. 납세자가 세무 신고서에 작성하여 보고한 과세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조사
 - 47.3.3. 회계등록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세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과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게 한다.
- 47.4.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징세 경비의 절약과 효과적인 징세를 위해, 또한 납세자의 정상업무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시행하거나 갑작스럽게 시행할 수 있으며, 전체나 일부분에 한하여, 또는 단독업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국으로 시행 하는 등 국제 규범에 맞추어 법으로 금하지 않은 모든 형태를 사용하며 납세자의 의무 이행에 적절하다고 간주된 시점에 세무감사 업무를 시행할 수 있다.
- 47.5.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세무감사 이행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최소 영업일 10일 전에 미리 통보한다.
- 47.6. 국고수입의 안정화를 위해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납부하는 소득 규모의 순서에 따라 세무감사의 관할을 확정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 47.7. 조세당국은 세무공무원의 전문 능력, 근무경력, 뇌물을 수수하지 않도록 할 조건, 윤리에 저촉되지 않을 조건들을 고려하여 감사업무를 조직, 임명한다.

47.8. 국제청장은 조세법령의 위반사항의 정보 및 진정서를 접수, 검토,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승인한다.

[2008년 12월 19일 개정]

제48조 과세액의 간접적 산정

48.1. 일정한 업무 추진시 비현실적인 가격을 적용하였고 신고서, 등록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은 하였지만 미비한 경우, 또는 등록장부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경우 조세당국은 해당 납세자의 과세액을 다음과 같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산정한다.

48.1.1. 현실 가격 적용 방법

48.1.2. 기준 가격 적용 방법

48.2. 상호 연관된 자들간에 행해진 생산, 무역, 경제활동에 적용된 가격이 이러한 상호관련성 없는 자들간에 적용된 가격과 상이한 경우에,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과 비교,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액을 산정하는 것을 “현실 가격 적용 방법”이라고 한다.

48.3. 납세자가 몽골 및 외국에 있는 상호 연관된 자들과 행한 매출, 매입, 인력, 파견, 기술적인 서비스 제공, 생산 활동 등의 업무에 적용한 가격, 대금, 수수료 (이하 “가격”이라 한다)가 현실적인 가격보다 크거나 적으면 과세액 산정시 현실 가격 적용 방법을 사용한다.

48.4. “상호 연관된 자들”이라 함은 몽골 및 외국의 임의 법인의 경영진, 감사 및 재산권에 직간접으로 참여권이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

48.5. 납세자와 비슷한 능력과 조건으로 간주할 만한 업무를 해당 지역에서 수행하는 납세자가 있다면 그를 근거로 하고, 해당 납세자가 없다면 해당 지역의 여러 납세자의 업무, 비용 등 기타 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세액을 산정하는 것을 “기준 가격 적용 방법”이라 한다.

48.6. 세액을 간접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은 재정, 예산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이 승인한다.

48.7. 납세자는 간접 방법으로 세액을 산정시 필요한 자료를 조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49조 건물 창고에의 진입

- 49.1. 조세당국은 이 법 제29.1.4조에 따라 납세자가 소득발생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과세대상물 및 세금과 관련된 정보, 분석, 기타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진입이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임의의 생산, 서비스 건물, 사무실 건물, 창고, 재산을 임시적으로 압수, 감사 할 수 있다.
- 49.2. 이 법 제49.1조에 규정된 업무는 이용이 가능한 정확한 건물 및 창고가 명시된, 조세당국장이 승인한 공식 임명 및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 49.3. 세무공무원은 수색, 계수, 감사에 대한 조세당국의 지침서와 파견서, 세무공무원 신분증을 납세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에게 제시하고 건물이나 창고로 진입할 수 있다.
- 49.4. 외국의 외교대표부 및 영사부, 국제기관 건물, 외교관 특권을 지닌 공무원의 거주지에는 이 법 제49.1조에 명시된 업무를 금한다.

제50조 수색에 대한 규정

- 50.1. 세무공무원은 이 법 제29.1.4조에 따르는 수색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
 - 50.1.1. 18세이상이고 법률상 무능력자가 아니며 위반사항이 없는 납세자, 조세당국, 세무공무원과 상하관계가 없는 제3의 증인을 참관시킨다.
 - 50.1.2. 수색에 포함되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의 참관, 참관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대표자를 참관시킨다.
 - 50.1.3. 수색결과에 대한 기록물에 참여, 참관한 사람들의 서명을 받고, 만약 서명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설명도 기록물에 기록하여 첨부한다.
- 50.2. 포함되는 대상물의 소유, 점유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은 수색할 권한이 있다.

제51조 산정에 대한 규정

- 51.1. 세무공무원은 이 법 제 29.1.4조에 따르는 산정시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
- 51.1.1.1. 물품, 재산, 현금 산정시 납세자나 법적 대리인, 경리, 또는 해당 지방 행정기관의 대표자를 참관하게하며 산정 대장 등 기록물을 남긴다.
 - 51.1.2. 산정대장, 기록물에는 산정 작업을 한 세무공무원 및 산정 작업시 참관한 기타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며 만약 서명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설명도 기록물에 기록하여 첨부한다.

제52조 사진 촬영에 대한 규정

- 52.1. 세무공무원은 이 법 제29.1.4조에 따라서 사진 촬영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
- 52.1.1. 납세자가 지불해야 할 세액의 산정, 생산, 서비스업의 규모, 경비를 산정할 목적으로 사진 촬영 할 것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통보 없이 할 수 있으며, 사전 통보시는 본 촬영 업무에 납세자를 참관시키며, 사전 통보가 없을 시는 제3의 증인을 참관시킨다.
 - 52.1.2. 사진촬영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참가시키며, 필요시 측량도구도 사용한다.
 - 52.1.3. 촬영작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기록물을 남기며, 기록물에는 참가한 사람들의 서명을 받으며 만약 서명을 거부하면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설명도 기록물에 기록하여 첨부한다.

제7장 세무 등록, 체납

제53조 세무 등록

- 53.1. 조세당국은 세금, 벌금, 과태료와 관련된 회계등록대장을 법령에 상응하게 작성한다.
- 53.2. 세무등록장에 납세자별로 납세해야 할 세액, 감세액, 면세액, 벌금, 과태료 및 이들의 납부상황, 징수, 체납 상황을 초동 문서를 근거로 명시한다.
- 53.3. 조세당국은 세금, 벌금, 과태료 소득을 등록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의 초과 납부액을 법에 따라 환수할 용도의 거래계좌를 둔다.
- 53.4. 은행은 조세당국의 거래계좌에 해당일에 들어온 소득에서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의 초과 납부액을 환수할 것에 대한 조세당국의 대금거래를 수행하여 남은 부분은 해당일에 국고로 이체한다.
- 53.5. 세무등록과 세금소득을 등록하는 계좌운용 규정은 재정, 예산업무를 담당할 국무의원이 승인하여 따르게 한다.

제54조 통지서 송부

- 54.1. 납세자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및 이 법 제48조에 규정된 규정대로 조세당국에서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
 - 54.1.1. 납세자의 성명
 - 54.1.2. 납세자의 등록번호
 - 54.1.3. 통지서 작성 연월일
 - 54.1.4. 과세대상
 - 54.1.5. 납부해야 할 세액
 - 54.1.6. 통지서 전달 이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납세할 것에 대한 요청
 - 54.1.7. 납세할 장소
 - 54.1.8. 과세액 산정 근거
 - 54.1.9. 기타 조세당국이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간주한 요건들
- 54.2. 과세액 납부하지 않을 것이 명확해지면 조세당국장이 이 법 제 54.1.6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55조 세금 체납액

- 55.1. 법정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세금, 벌금, 과태료를 체납 세금에 포함한다.
- 55.1.1. 납세자가 신고서에 산정한 체납 세액, 벌금
 - 55.1.2. 이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조세당국이 정한 세금, 벌금, 과태료
 - 55.1.3. 세무감사로 확정된 세금, 벌금, 과태료

제56조 세금 체납액의 납부 순서

- 56.1. 법령으로 정한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벌금, 과태료 (이하 “세금 체납액”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납부한다.
- 56.1.1. 해당 세금에 부과된 벌금
 - 56.1.2. 과태료
 - 56.1.3. 세금 체납액
- 56.2. 만약 납세자가 해당 세금을 어느 기간에 어떤 종류에 해당되는지 명시하지 않았다면 세금 체납 순서를 조세당국에서 특별히 정할 수 있다.

제57조 체납액 납부 기간, 연장

- 57.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세금 체납액 납부 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57.1.1. 이 법 규정에 따라 과세된 체납액이나 세금 부족분은 과세한 공문서를 전달한 후 15일
 - 57.1.2. 세무감사를 통해 적발된 추가세금, 이에 부과된 벌금, 과태료는 공문서를 전달한 후 15일
- 57.2. 정당한 사유로 이 법 제 57.1.6항, 제54.2항, 제57.1항 기간내에 세금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납세자가 제출한 서면 요청서를 근거로 해당 조세당국장의 명령으로 기간을 60일까지 1회 연장할 수 있다.
- 57.3. 이 법 제 57.1항, 제57.2항 규정대로 세금 체납액을 납부할 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세금 지체금을 정산하지 아니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58조 세금, 공제, 환급

- 58.1. 이 법 제17.1.4항 규정에 따라 조세당국은 납세자가 초과납부한 세금을 다음과 같은 규정대로 해결한다.
- 58.1.1. 해당 기간에 납부해야 할 다른 세금으로 공제 계산한다.
 - 58.1.2. 납세자가 인정하면 다음 기간에 납부해야 할 세금으로 공제 계산한다.
 - 58.1.3. 환급한다.
- 58.2. 초과 납부한 세금을 공제 계산하였다면 조세당국은 이에 대해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제59조 조세당국, 세무공무원의 과실로 초과 징수한 재산

- 59.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납세자로부터 근거없이 초과 징수한 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59.1.1. 세무공무원이 공문서를 취소시켰거나 변경함으로 인해 일부나, 전부를 환급할 세금, 벌금, 지체금
 - 59.1.2. 이 법 제48조 규정대로 산정한 과세액을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시켰거나 변경함으로써 일부나 전부를 환급할 세금, 벌금, 지체금
 - 59.1.3.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이 그 밖의 결정으로 근거없이 초과 징수한 금액
- 59.2. 납세자로부터 근거없이 초과 징수한 재산을 조세당국은 이
- 59.1.1. 항, 제59.1.3항에 규정된 결정이 나온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급한다.
- 59.3. 이 법 제 59.1항에 규정된 재산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이 법 제58조 규정대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에 상응하는 지체금을 계산하지 아니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제60조 과도한 손실확정 절차와 기간 계산 규정

- 60.1. 법정 기간내 납부하지 않았거나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근거없이 초과 징수된 세금에는 과도한 손실이 부과된다.
- 60.2. 이 법 제 60.1조항에 규정된 과도한 손실의 크기는 정부가 상업은행들이 정하는 대출 이자의 평균으로 매년 정한다.
- 60.3. 과도한 손실 계산 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60.3.1. 이 법 제43.5항, 제43.6항 규정이나 납세자가 스스로 산정하여 납부해야 할 날부터 시작하여 납부일까지 기간으로.
- 60.3.2. 납세자로부터 근거없이 초과 징수한 재산에 대한 과도한 손실을 정하는 기간은 해당 재산을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이 잘못으로 납세자 계좌에서 받은 날부터 환급할 날이나 체납세금에서 공제된 날까지로 한다.
- 60.4. 세금 벌금, 과태료에는 별도의 벌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 60.5. 이 법 제43조, 제59조 규정에 따라 과도한 손실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문제는 세무공무원이 공문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는데, 본 공문서는 이 법 제74.1항, 제74.2항에 규정된 세금의 추가 납부, 벌금 부과 공문서와 함께 작성할 수 있다.

제8장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의 징수

제61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

- 61.1. 이 법 제54.1.6항, 제54.2항, 제57.1항 규정대로 계산하여 연장된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이라고 한다.
- 61.2. 조세당국은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을 징수한다.

제62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징수

- 62.1. 조세당국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 징수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징수한다.
 - 62.1.1. 분쟁없는 방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
 - 62.1.2. 재산, 임금, 기타 소득에서 징수한다.
 - 62.1.3. 법원에 제소하여 징수한다.
- 62.2. 세금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하기 위해 이 법 제62.1항에 규정된 업무를 이중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제63조 분쟁없는 방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

- 63.1.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을 1단계로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분쟁없는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이 현금이 세금 체납액에 부족한 규모이면 이 계좌에서 법원 결정으로 지불될 기타 지출을 부분적, 또는 전부 정지시키고 세금 체납액부터 지급하도록 한다.
- 63.2. 세금 체납액을 이 법 제63.1항에 따라 징수할 것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통지서를 해당 조세당국장이 승인하여 은행에 전달하며, 해당 통지서에는 세금 체납액을 징수할 근거, 규모, 경비 지출을 부분적, 전부 중지할 기간을 명시한다.

제64조 재산,임금, 기타 소득에서 세금 체납액의 징수

- 64.1. 이 법 제57.2항에 규정된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을 납세자의 재산과 임금과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배당이익, 보유 주식지분 등의 기타 재원에서 징수한다.
- 64.2. 조세당국이 이 법 제64.1항에 따라 세금 체납액 징수 결정을 내린다.
- 64.3. 세금 체납액을 납세자의 재산에서 징수할 경우 이 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납세자의 일정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납세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일정한 조건으로 공고하여 매각한 후, 매매 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제65조 세금 체납액을 임금, 기타 소득에서 징수

- 65.1. 이 법 제64조 규정대로 납세자의 임금, 기타 소득에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한다.
 - 65.1.1. 세금 체납액을 납세자의 재산, 임금과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 배당이익, 보유 주식지분 등의 기타 재원에서 징수하려고 납세자 및 납세자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법인, 개인에게 대금 청구 용지를 전달한다.
 - 65.1.2. 법인은 대금 청구 용지를 받는 즉시 매월 납세자의 소득에서 일정한 공제를 행하는데, 공제후 영업일 3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대금 청구 용지에 기록된 계좌로 송금한다.
 - 65.1.3.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금 및 기타 소득에서 공제하는 기타

채무, 대금 이전에 세금 체납액을 공제한다.

- 65.1.4. 납세자가 해고되었거나 사직했다면 법인은 그가 사직한 후 7일 이내에 세금 체납액을 공제한 규모와 송금한 것을 기록한 것을 대금 청구 용지와 함께 조세당국에 반납한다.
- 65.2. 세금 체납액을 주식에서 징수할 경우 회사법 제25조, 이 법 제 66조 규정을 준수한다.

제66조 납세자 재산에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할 규정

- 66.1. 이 법 제64조 규정대로 납세자의 재산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때는 조세당국장의 결정으로 실무팀을 임명한다.
- 66.2. 이 법 제66.1항에 규정된 실무팀은 체납액 징수 업무를 다음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 66.2.1. 세금 체납액에 징수될 재산의 품질, 수요, 노화상태, 납세자의 의견, 해당지역에서의 시세를 고려하여 경매에 붙일 초기 가격을 산정하고 기록을 남기며 재산등록을 기록장에 첨부한다.
- 66.2.2. 세금 체납액에 징수된 재산을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데, 납세자가 원하면 납세자나 그의 법적 대리인을 경매에 참가시킨다.
- 66.2.3. 경매로 매각되지 아니한 재산은 납세자에게 되돌려 준다.
- 66.2.4. 경매로 매각된 재산의 가격이 체납액과 경매비용보다 많으면 초과된 부분을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고 기록에 남긴다.
- 66.3. 경매로 매각된 재산 가격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면 납세자는 남은 체납액을 지불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 66.4. 재산을 경매에 붙일 초기 가격을 정할 때 전문가관 및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67조 재산 가압류

- 67.1. 조세당국장의 결정으로 세무공무원은 세금 체납 납세자의 재산, 현금, 서류, 건물, 창고(이하 "재산"이라 한다.)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기간으로 가압류할 수 있다.
 - 67.1.1. 세무감사, 산정, 사진촬영 작업과 관련하여 이들 업무를 이행하고 평가서, 결정서를 발행할 때까지
 - 67.1.2.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것이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이것을 조사할 때까지
 - 67.1.3. 이 법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에는, 서류, 등록, 및 허위나 효력없는 계약, 협정,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제소할 때까지
- 67.2. 이 법 제67.1.1항, 제67.1.2항에 규정된 기간이 종료되면 조세당국은 재산 가압류를 해제하는 공문서를 작성한다.
- 67.3. 이 법 제67.1항에 규정에 따라 조세당국장이 발행한 결정에 관하여 납세자가 불복하면 법원에 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8조 재산 가압류 규정

- 68.1. 재산 가압류 업무는 산정, 수색, 감사를 하도록 임명된 세무공무원, 또는 법원에 제소하도록 수임된 세무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라 이행한다.
 - 68.1.1. 재산 가압류 업무 진행시 납세자나 그의 법적 대리인, 회계사, 또는 해당지방의 행정기관의 대표자 및 제3의 증인을 참관시킨다.
 - 68.1.2. 재산 가압류에 대한 공문서, 기록물을 남기는데, 기록물에는 재산의 형태, 규모, 품질, 수량, 색상, 특징을 기재하고 공문서에는 재산을 가압류하게 된 근거, 기간을 명시한다.
 - 68.1.3. 가압류한 재산을 날인하여 소유자에게 양도한다.
- 68.2. 이 법 제68.1.1항에 규정된 자들은 재산 가압류 업무의 모든 과정을 증명할 의무를 지니며, 업무 기록물에 서명을 하는데, 서명을 거부한다면 사유를 언급한 설명서를 기록물에 참가한다.
- 68.3. 이 법 제68.1.3항 규정대로 가압류된 재산의 책임이 있는 소유자는 해당 재산의 파손, 매각, 양도를 할 수 없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며 조세당국의 허락 없이 날인이나 자물쇠를 움직이지 않아 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관련 법

령에 따라 지게될 책임소재를 세무공무원이 그에게 설명해 주고 이것을 기록하여 서명을 받는다.

제69조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규정

- 69.1. 이 법 제64.3항 규정대로 세금 체납액을 납세자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징수할 때 다음 규정에 따라 이행한다.
- 69.1.1. 해당 납세자의 소유물을 체납액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다.
- 69.1.2. 재산을 저당시 납세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재산의 품질, 가격, 형태, 색상, 크기, 위치, 소유자, 현재 소재지를 분명하게 명시하는데, 만약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부동산 등기소에 등록한다.
- 69.1.3. 담보설정 계약 기간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 69.2. 납세자가 계약에 정한 기간내에 체납금을 완불했다면 담보 설정된 재산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
- 69.3. 납세자는 담보가 설정된 재산의 사용, 처분, 훼손, 파손의 권리가 없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 발생시에는 책임을 진다.
- 69.4. 납세자의 다음과 같은 재산을 가압류, 담보 설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 69.4.1. 납세자와 그 가족이 매일 사용하는(계절용) 의류, 필수품
- 69.4.2. 장기 보관이 불가능한 쉽게 상하는 식료품
- 69.4.3. 낡아 사용할 수 없게 된 물건
- 69.4.4. 납세자가 상주하는 주택, 게르, 추운 계절에 사용하는 장작, 석탄
- 69.5. 담보 설정된 재산을 매각시 이 법 제66조 규정을 준수한다.

제70조 법원에 제소

- 70.1.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 체납액을 이 법 제63조, 제64조 규정대로 징수할 수 없게 되면 조세당국은 법원에 제소한다.
- 70.2. 재산, 임금 및 기타 소득에서 세금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이 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합의하였지만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였다면 이 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법원에 제소한다.

제9장 기타 기관의 의무

제71조 은행,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의 의무

- 71.1. 조세법령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관은 아래의 의무를 진다.
- 71.2. 상업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 71.2.1. 거래자인 납세자의 세금을 조세당국에서 지명한 은행에 12시간 이내에, 세금을 받은 은행은 이 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해당일에, 만약 근무시간이 끝났다면 다음 영업일에 조세당국의 거래 계좌를 통해 국고에 귀속시킨다.
- 71.2.2. 납세자가 [은행 및 인가 법인의 예금, 대금정산, 대출 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대로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였거나 기존 계좌에 변경, 입출금이 행해졌다면 거래은행은 이 정보를 10일 이내에 조세당국에 제공한다.
- 71.2.3. 거래자의 채무를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행한다.
- 71.2.3. 가. 1단계로 집행하도록 법률에 명시된 채무
- 71.2.3. 나. 계좌에 있는 현금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납세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이의없이 세금을 징수하도록 한 조세당국의 결정서에 명시된 채무
- 71.2.3. 다. 은행 및 금융기관, 기타 채무자, 청구자에게 지불할 채무
- 71.3. 은행이 이 법 제 71.2.1항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시 조세당국은 매일 집행되지 아니한 세금액의 0.3%로 이자를 부과한다.
- 71.4. 이 법 제71.2.3항은 [은행 및 유권 법인의 예금, 대금정산, 대출 업무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제2항과 무관하다.
- 71.5. 증권거래소
- 71.5.1. 주식회사들의 주식 보유자 현황을 조세당국에 분기별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한다.
- 71.6. 경찰기관
- 71.6.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이 법률에 따라 납세자의 건물, 차고 진입 및 감사, 산정, 수색, 재산 가압류, 담보설정 업무를 집행시 무력을 사용하거나 조직적으로 반항할 경우 필요시 지원을 하며 전권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 71.6.2. 몽골 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납세자 등록 및 주소 확인과 관련하여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 비밀에 속하지 않는 정보, 자료를 조세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제공한다.

- 71.6.3. 탈세 및 도주한 납세자를 수배하는데 지원 및 협력을 한다.
- 71.6.4. 수사기관 간부는 조세당국이 조사하도록 의뢰한 조세업무, 위반사항을 법정 기간내에 조사하여 해결하도록 하며, 결과를 조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또한 수사기관에서 적발한 조세법령 위반에 관한 정보를 조세당국에 제공한다.
- 71.7. 세관
- 71.7.1. 납세자의 고유번호를 세관 신고서에 표시하여 수출입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조세당국과 합의한기간에 제공한다.
- 71.8. 시민등록정보 및 외국인, 무국적자 업무 담당 국가행정기관은 몽골국민, 외국인 무국적자의 납세자 등록 및 주소 확인과 관련하여 해당기관에서 보관중인 개인 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와 자료를 조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제공한다.
[2013년 12월 26일 개정]
- 71.9. 국가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그 기관의 간부, 공직자
- 71.9.1. 세금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설명, 소개하고 조세법령을 이행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원한다.
- 71.9.2. 세금 소득으로 재정지원받는 예산의 지출과 소비의 결과를 개인 및 기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홍보하며, 가능한 형태로 보고한다.
- 71.9.3. 세무감사 업무에 지원을 하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당국과 협력한다.
- 71.9.4. 감사업무를 담당한 국가행정기관과 공직자는 공무우수행과 정에서 조세법령의 위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적발하였다면 이것을 조세당국에 정식으로 제공한다.

제 72조 납세자의 진정 해결

- 72.1.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의 결정사항에 대해 납세자는 행정절차로 다음 관할에 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 72.1.1. 세무공무원의 결정과 관련된 진정은 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소속된 조세당국장에게 이 법 제17.1.6항에 명시된 기간에
- 72.1.2. 조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진정은 상급 조세당국자에게
- 72.1.3. 세무공무원의 결정과 관련된 진정은 해당 세무공무원이 직접 소속된 조세당국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 72.1.4.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진정은 상급 조세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에

- 72.2. 이 법 제72.1.2항, 제72.1.4항에 따라 내려진 결정에 불복하면 납세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2.3. 조세당국과 분쟁해결 위원회는 이 법 제72.1항에 따라 제출된 진정서를 검토 해결시 이 법 행정책임법, 행정소송법, [국가기관과 공직자에 국민이 제출한 진정서 및 이의서 해결법], 분쟁조정 위원회 조정 절차를 준수한다.

제73조 세무공무원의 책임

- 73.1. 세무공무원이 이 법 제29조, 제30조에 규정된 직책상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의무이행에 태만한 경우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책임, 행정책임, 재산 책임 및 형사책임을 진다.
- 73.2. 세무공무원이 직책상 권한을 남용하였거나 의무이행에 태만하였거나 이 법으로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은 징계책임을 부과한다.
 - 73.2.1. 경고
 - 73.2.2. 월급의 최고 6개월까지 20%감봉
 - 73.2.3. 직책 또는 계급의 강등
 - 73.2.4.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최고 12개월, 또는 영구적 박탈
 - 73.2.5. 파면
- 73.3. 이 법 제73.2항에 규정된 처벌을 순서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이 법 제73.2.3항, 제73.2.5항에 규정된 처벌을 제73.2.4항 규정된 처벌과 동시에, 제73.2.3항의 처벌을 각각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4조 세무법령 위반자에 대한 책임

- 74.1. 다음과 같은 작위, 부작위로 과세 소득외 기타 사항을 은폐한 납세자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아니하며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며 추가징수 세금의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4.1.1. 물리적으로 은폐
 - 74.1.2. 정당한 근거 없이 제3의 법인, 개인에게 양도
 - 74.1.3. 회계등록장부, 결산 신고서, 세금 신고서에 누락
 - 74.1.4. 수량, 가격을 회계등록장부, 결산 신고서, 세금 신고서에 삭감 기재 하였거나 삭감하기 위해 지출 및 기타 삭감 사항을 과대 신고한 것

- 74.1.5. 회계등록장부, 세금 신고서 및 관련 서류의 파괴, 은폐, 폐기
- 74.1.6. 서류의 허위 작성, 수정
- 74.1.7. 회계등록장부 미작성, 관련 서류의 미비로 세금 신고서 제출을 불가능하게 함
- 74.1.8. 사기, 효력없는 계약, 협정의 체결
- 74.1.9. 허위 채무 발생
- 74.1.10. 법인의 성명, 주소, 직인, 계좌, 국가 등록증, 인허가 및 재산, 서류를 타인에게 양도, 사용하게 한 행위
- 74.2. 세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았으면 초과일마다 미납 세액의 0.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4.3. 이 법 제74.1항, 제74.2항 규정에 따라 추가 징수할 세금 및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벌금 계산시 추가 징수할 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74.4. 이 법 제74조, 제75조에 규정된 벌금은 몽골의 민법 제232조에 규정된 벌금 규정과 무관하다.

제75조 조세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 책임

- 75.1. 조세법령 위반한 납세자에게 조세당국과 세무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행정책임을 부과한다.
 - 75.1.1. 이 법 제13.1항-제13.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5.1.2. 이 법 제13.5에서 제13.7조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5.1.3. 조세법령에 규정된 세금 신고서를 법정기간내 조세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5.1.4. 다음과 같은 작위, 부작위로 세금, 벌금, 과태료의 납부를 회피하였다면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5.1.4. 가.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 주소를 잘못 표기
- 75.1.4. 나. 조세당국에서 소환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적으로 불응
- 75.1.4. 다. 법원이 해당 납세자를 행방불명자로 간주하지 않았는데 거주지를 알수 없는 경우
- 75.1.5. 세무공무원의 가압류, 또는 저당한 재산을 파손하였거나 권한없이 타인에게 양도, 훼손하였거나, 허락없이 매각하였다면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법인에게는 최저임금의 10배에서 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파손, 훼손, 양도, 매각한 재산 규모에 해당되는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 75.1.6. 다음과 같은 작위, 부작위로 세무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2배에서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5.1.6. 가. 요구한 회계등록, 결산서, 세금 정보와 관련된 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함.
 - 75.1.6. 나. 건물, 창고에 진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함
 - 75.1.6. 다. 산정하지 못하도록 함
 - 75.1.6. 라. 사진촬영, 조사, 재산에 담보설정 절차, 가압류 업무를 못하도록 함.
 - 75.1.6. 마. 조세법령 시행에 대하여 발송한 통보, 공문서, 통지서, 대금청구 용지,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함.
- 75.1.7. 이 법 제24.5항, 제65.1.4항, 제71.2항, 제71.5항, 제71.6.2항, 제71.6.4항, 제71.7항 규정을 위반한 관련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75.1.8. 이 법 제44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다면 개인에게는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에게는 최저임금의 3배에서 4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제76조 법의 효력발생

76.1. 이 법은 2008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잔 룬데잔찬

몽골 국회의장

“ ”
본 번역본을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영문 번역본을
www.mongolembassy.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 large, stylized graphic of a plant with several leaves, rendered in a lighter shade of blue than the background, positioned behind the text.

EMBASSY OF MONGOLIA – 주한몽골대사관

Address: 140-885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95

Tel: +82-2-798-3464

Fax: +82-2-794-7605

Email: seoul@mfa.gov.mn

Website: www.mongolembassy.com

INVEST MONGOLIA AGENCY

Address: 15141 Government bldg 11, J. Sambuu Street 11,
Chingeltei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Tel: +976-11-326040, 320706

Fax: +976-11-324076

Email: info@investmongolia.com

Website: www.investmongolia.com

KOTRA – 울란바토르 무역관

Address: #901 Bluemon Center, J. Sambuu Street 32,
8th Khoroo, Baga Toiruu,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14200 Mongolia

Tel: +976-7711-0140, Fax: +976-7711-0142

Email: hslee@kotra.or.kr

Website: www.kotra.or.kr